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330-01
연구보고	2012-34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012.12.



성폭력·가정폭력 실태조사 방법 등 개선에 관한 연구

2012. 12.

연구기관 : 한국통계학회
연구책임자 : 이용희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공동연구자 : 이기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안형진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연구보조원 : 오정준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김혜진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박원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정보통계학과)



본 보고서는 한국통계학회가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차 례

요약	1
제 1 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9
1.1 연구의 목적	9
제 2 장 국내외 관련 조사 및 통계에 대한 연구	11
2.1 국내 관련 조사 및 통계	11
2.2 해외관련 조사 및 통계	13
2.3 세계보건기구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건강에 대한 다국적 조사	27
2.4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연구 방법	39
2.5 세계보건기구 여성 폭력 조사통계에 대한 지침	49
2.6 세계보건기구 성폭력 조사에서의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서	58
제 3 장 전국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표본설계	69
3.1 조사개요	69
3.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72
3.3 층화	75
3.4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79
3.5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84
3.6 표본가구 내 대상자 선정	85
3.7 가중치 산정	86
3.8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94
3.9 조사방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분석	95
3.10 조사계획에 대한 최종 제안	98
제 4 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조사 설문지 개선 방안	103
4.1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개선 방안	103
4.2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견 - 연구진	104
4.3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견-외부 자문 위원 1	105
4.4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견-외부 자문 위원 2	106
제 5 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조사 품질 진단 방안	118
5.1 통계 품질 진단 개요	118
5.2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실태조사의 통계 품질 향상 방안	121
참 고 문 헌	129
부록 1: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131

표 차례

표 1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의 개요	10
표 2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에서의 성폭력 발생을 비교	12
표 3 2010년 NISVS의 성폭력 형태와 정의	18
표 4 2010년 NISVS의 성폭력 형태와 정의 (영문원본)	19
표 5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별 가정폭력·성폭력 조사의 특성	40
표 6 질적연구에서의 표본 추출법	44
표 7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내용	69
표 8 모집단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4
표 9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75
표 10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만 19세-64세)	75
표 11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76
표 12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76
표 13 층화 방법	76
표 14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7
표 15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78
표 16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81
표 17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82
표 18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83
표 19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84
표 20 시도 및 성별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	90
표 21 동·읍면 구분, 성 및 연령별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	91
표 22 시도 및 성별 만 19-64세 인구 현황	92
표 23 동·읍면 구분, 성 및 연령별 만 19-64세 인구 현황	93
표 24 여러 가지 조사 형태의 비교와 제안	99
표 25 성폭력 실태 조사의 설계 (2010년과 개선안 비교)	100
표 26 가정 폭력 실태 조사의 설계 (2010년과 개선안 비교)	101
표 27 성폭력 실태 조사와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적용 가중치 비교	102
표 28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목적	107
표 29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내용	108
표 30 성폭력실태조사 조사목적	111
표 31 성폭력실태조사 조사내용	112
표 32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131
표 33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132
표 34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133
표 35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134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표 1을 참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의 관련 표본 조사 및 통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표본 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선안에 반영하였다. 국내 관련 자료와 통계에 대한 문헌 연구 및 결과를 비교하였고, 국외 관련 자료 및 통계에 대한 문헌을 연구하였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성폭력 및 여성폭력에 대한 통계적 방법, 연구 방법,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서를 요약하였다.

표 1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의 개요

구분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
작성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통계종류	조사통계(표본)	좌동
작성목적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한국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3,800가구, 생일이 가장 빠른 1인)	전국 19세 이상 성인 (2,200가구, 생일이 가장 빠른 1인)
표본설계	추출틀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출방법 : 29개 지역별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200조사구)	좌동
조사사항	·기혼자 : 일반사항, 개인특성(성역할 인식, 갈등경험, 폭력에 대한 견해, 폭력경험, 우울척도, 부모의 폭력, 음주행태), 가족·부부관계, 자녀, 부부생활실태(강압행동, 폭력), 부부생활대응(신체적·정신적상해, 신고, 기관에 요청), 관련법 인식, 서비스욕구 - 노인 : 경제 및 건강상태, 생활실태 ·미혼자 : 일반사항, 개인특성, 가족관계, 가정폭력실태, 가정폭력대응, 관련법 인식, 서비스욕구	·일반사항, 개인특성(자기인식, 우울척도, 성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의식, 폭력경험), 가족관계, 음란물이용경험, 피해경험(메일, 스토킹, 성기노출, 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해경험, 성폭력대응(신체적·정신적 상해, 신고, 기관에 요청), 가구원의 성폭력경험, 관련법 인식, 서비스욕구

문헌 연구를 통해서 서비스 자료(service driven data; 예를 들어서 신고 자료, 여성 보호 단체 자료)에 의한 통계가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서 표본 조사(population-based survey[세계보건기구])에 근거한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중임을 확인했다. 조사 설계측면에서는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대한 표본 조사가 다른 일반 가구 표본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주제의 특성 상 여자만을 모집단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사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조사원의 엄정한 선정(조사원 전원을 여성으로 구성)과 충분한 교육, 정교한 면접 기술,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이 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응답을 잘 하지 않는 민감한 사항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사의 기술이 중요하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간한 관련 보고서, 회의 자료를 번역하여 2013년 조사에 반영하도록 제안한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에서 비 표본오차를 최대한 줄여 조사의 정확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13년 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표본조사 설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였다. 표본조사 설계의 개선 방안에는 2010년 조사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과 통계청의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효과적인 표본 설계, 적정 표본 규모 산출 및 가중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2013년 조사에서는 정확성 향상을 위하여 표본 수를 성폭력 3500가구, 가정폭력 5000가구로 늘리는 것과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특성을 반영하는 설계를 제안하였다. 이 때, 성폭력에서는 여자를 과표집하고 노인은 제외하며, 가정폭력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이용한 횡단면 조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 참조) 모집단, 추출틀, 표본의 수 및 추출 방법,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최종 제안은 표 3과 표 4에 있다.

셋째, 2010년 조사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과 통계청에서 제시된 조사방법에 대한 중요한 사안(issue)을 분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발생빈도가 낮은 행위를 조사하는데 대규모의 유효표본이 필요하므로 가정폭력실태

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사로 실시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두 조사를 통합하면 유효 표본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 폭력에 대하여 동시에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의 설계가 어렵고 설문지가 길어져서 면접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실태조사를 통합하여 두 조사의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다.

폭력의 범위 및 조사항목의 용어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0년에 사용한 정의는 외국에서 사용된 것을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므로 2013년 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한 약간의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2010년에 미국에서 시행된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의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어려운 조사이다. 따라서 면접원에 대한 교육과 면접에 대한 지침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방법, 조사통계에 대한 지침서, 성폭력 조사의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서(본 보고서 2.5-2.7절)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면접원의 교육과 면접 절차에 대한 내용이 2013년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여러 가지 조사 형태의 비교와 제안

조사의 종류	전화조사	방문조사
장점	조사비용이 저렴하다. 따라서 표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무응답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면접원이 민감한 질문을 유도하기 상대적으로 쉽다. 긴 시간 면접이 가능함.
단점	무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유도하기 어려움. 긴 시간을 면접하기 어려움.	조사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표본의 수를 늘리기 힘들다.
조사의 종류	패널조사 (panel study)	횡단면조사 (cross-sectional study)
장점	시간에 따른 현상이나 행위의 변화 파악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원인도 파악 가능	조사의 설계가 비교적 쉽다.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조사의 설계가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에 따른 현상이나 행위의 변화 파악을 할 수 있으나 패널조사보다는 제한적임.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 조사 형태에 대한 제안 의견	<p>한국의 현실 상 전화조사로 민감한 내용을 질문하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 또는 호주 등 서양의 선진국 2-3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최근 여성 폭력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짐.</p> <p>성폭력과 가정폭력처럼 민감한 사항을 반복해서 물어야 하는 패널조사는 패널이 관리가 현실 상 매우 어렵고 더 나아가 응답자의 안전보호에 문제가 있다.</p> <p>3년 마다 시행하는 조사에서 가구 내에서의 폭력, 개인의 성폭력 피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문제보다는 그 당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중요하므로 횡단면 조사가 패널 조사보다 적절하다.</p> <p>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조사 형태는 방문면접을 이용한 횡단면 조사가 적절하다.</p>	

표 3 성폭력 실태 조사의 설계 (2010년과 개선안 비교)

	2010년 조사	개선안	비고
목표모집단	19세 이상 성인 남녀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성폭력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에 대한 조사는 노인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외국 사례 도 일치)
목표모집단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한 를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개선안 목표모집단 에서는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 리스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	
목표 표본수	2,200가구	3,500가구	
표본 조사구 및 가구	2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11가구	350개 조사구/조사구 당 10 가구	
층화	1차 층화 : 8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 2차 층화 : 4개 광역시와 8개 도 지역의 동부 및 읍면부	8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을 32개 1차 층으로 구성 (서울, 7대 광역시는 10층, 도지역은 동부와 읍면부 각각 11개 층)	
표본의 배분	비례층화표본추출	비례층화표본추출	성폭력의 발생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통계조사와 달리 지역별 추정치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
추출단위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조사구 추출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 추출방법	계통추출	계통추출	
가구내 대상자 선정	가구원 중 '최근생일법'으로 1인 선정	4가구 중 3가구는 '최근생일법'으로 여성 1인 선정, 나머지 1가구는 '최근생일법'으로 남성 1인 선정	성폭력에 대한 특성상 여자를 과표집 (over sampling)

표 4 가정 폭력 실태 조사의 설계 (2010년과 개선안 비교)

	2010년 조사	개선안	비고
목표집단	19세 이상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10년과 같이 노인(65세 이상) 포함
목표모집단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외국인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한 를 제외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개선안 목표모집단 에서는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
표본 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 리스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	
목표 표본수	3,800 가구	5,000 가구	
표본 조사구 및 가구	2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19가구	5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10 가구	
층화	1차 층화 : 8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 2차 층화 : 4개 광역시와 8개 도 지역의 동부 및 읍면부	8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을 32개 1차 층으로 구성 (서울, 7대 광역시는 10층, 도지역은 동부와 읍면부 각각 11개 층)	
표본의 배분	비례층화표본추출	제공근 비례층화표본추출	가정 폭력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곳에도 적절한 표본을 배분하기 위하여 제공근 비례 배분 제안
추출단위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조사구 추출 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 추출방법	계통추출	계통추출	
가구내 대상자 선정	가구원 중 '최근생일법'으로 1인 선정	가구원 중 '최근생일법'으로 1인 선정	가정폭력에 대한 특성상 여자를 과포집하지 않음

셋째, 조사항목 및 설문지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조사항목과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실시하고 수집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들은 자체적으로 조사 항목 및 설문지를 검토했고, 외부 자문위원 2명은 독립적으로 조사 항목 및 설문지를 검토했다.

국제적으로 표준이 되는 설문지가 있지만 성폭력과 가정 폭력의 특성상 국가 간의 문화 차이가 큰 이유로 국가마다 자체적으로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설문지에 대한 주요 개선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1) 성폭력, 가정폭력 공통 사항

- 설문지의 길이가 너무 길다. 면접시간이 최대 25분이 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이나 설문을 축소하여 조사자의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문을 면접원이 면담을 통해 기입하는지 또는 응답자가 원하면 스스로 기입할 수 있는지 등 대한 면접 절차에 대한 규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조사의 목적(실태조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의 실태와 행동을 파악하는 조사 항목들에 집중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조사와 성폭력조사는 국민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이나 가정 내의 폭력 행위의 여부, 종류, 피해 사항(육체적, 정신적), 대응 등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예방 및 근절 방안, 서비스, 홍보 방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을 묻는 설문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1-2개의 항목으로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폭력이나 성 자체에 대한 인식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조사 초반에 개인적인 특성 부분에서 사회적 활동, 우울에 대하여 너무 많은 질문을 하여 조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한 개인적인 특성 부분에서 나오는 설문항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조사 항목이 폭력 행위의 원인이나 결과 요인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과감하게 제외하여 조사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 폭력에 대한 대응부분에서 경찰, 여성긴급전화, 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에 이용에 대한 설문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세부 선택항목이 많다. 신고 또는 이용의 유무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찰에 신고 후 상황에 대한 설문 항목이 너무 길다. 신고 유무와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폭력 실태조사

- 성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항목은 조사 가능성과 응답의 신뢰성이 매우 낮으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 응답자 가구원에 성폭력 피해 경험과 대응은 자신에 대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한 고려를 하여 개선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가정 폭력 실태조사

- 기혼자 조사에서 부부관계를 파악할 때 “고맙다” 또는 “사랑한다”는 말의 횟수로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 문화를 고려할 때 의미있는 도구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 절차를 이용한 품질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시사된 비표본 오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토대로 통계작성절차에 비중을 두어 각 절차에서 품질향상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제안하였다. 또한, 조사원의 선정과 교육, 표본의 선정 및 대체, 면접의 종합적인 관리, 에디팅, 각종 지침서 제작과 자료의 문서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1 장 연구목적 및 필요성

1.1 연구의 목적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개입의 필요성이 촉구됨에 따라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회적 범죄로서 가정폭력을 규정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위에서 제정된 두 법령에 의거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표 1 은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의 개요이다.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의 가장 큰 특성은 질문항목들이 상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파악하는데 있다. 성폭력실태조사에서는 성폭력 범죄의 피해상황뿐 아니라 가해행위에 대한 설문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정폭력실태조사 또한 개인이나 가족의 상호폭력이나 학대에 대한 설문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응답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더 나아가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설문지 설계와 자료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방법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또한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다른 일반범죄에 비하여 발생율이 비교적 적은 사건이므로 표본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표본의 설계가 필요하며 사후층화와 무응답에 대한 가중치의 합리적인 계산, 적정 표본수에 대한 계산 등 더욱 과학적이고 정교한 표본 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조사의 정확성과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할 것이다.

-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의 관련 표본 조사 및 통계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표본 조사 설계와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개선안에 반영한다.

- 2013년 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표본조사 설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연구한다. 표본조사 설계의 개선 방안에서는 효과적인 표본 설계, 적정 표본 규모 산출 및 가중치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한다.
- 조사항목 및 설문지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개선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조사 항목과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리뷰를 실시하고 수집 자료의 신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개선안을 제시한다.
- 2013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의 조사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통계품질진단 절차를 이용한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표 3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실태조사의 개요

구분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
작성근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4조의2(가정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조(성폭력 실태조사)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 방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성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통계종류	조사통계(표본)	좌동
작성목적	가정폭력 관련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가정폭력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가정폭력방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한국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성폭력 예방 및 대응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성인 (3,800가구, 생일이 가장 빠른 1인)	전국 19세 이상 성인 (2,200가구, 생일이 가장 빠른 1인)
표본설계	추출틀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추출방법 : 29개 지역별 층화, 확률비례계통추출(200조사구)	좌동
조사사항	·기혼자 : 일반사항, 개인특성(성역할 인식, 갈등경험, 폭력에 대한 견해, 폭력경험, 우울척도, 부모의 폭력, 음주행태), 가족·부부관계, 자녀, 부부생활실태(강압행동, 폭력), 부부생활대응(신체적·정신적상해, 신고, 기관에 요청), 관련법 인식, 서비스욕구 - 노인 : 경제 및 건강상태, 생활실태 ·미혼자 : 일반사항, 개인특성, 가족관계, 가정폭력실태, 가정폭력대응, 관련법 인식, 서비스욕구	·일반사항, 개인특성(자기인식, 우울척도, 성에 대한 인식, 범죄피해의식, 폭력경험), 가족관계, 음란물이용경험, 피해경험(메일, 스토킹, 성기노출, 성희롱, 성추행, 강간), 가해경험, 성폭력대응(신체적·정신적 상해, 신고, 기관에 요청), 가구원의 성폭력경험, 관련법 인식, 서비스욕구

제 2 장 국내외 관련 조사 및 통계에 대한 연구

2.1 국내 관련 조사 및 통계

2.1.1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는 2009년 기존의 범죄피해조사의 조사내용과 방법을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10년 기준 조사이다.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목적은 첫째, 1차 조사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조사결과의 정확성, 유용성,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조사방법론을 모색하고, 둘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 주요 지표범죄(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사기, 협박·괴롭힘, 손괴 등)에 대한 기초적인 피해율, 신고율 및 범죄로 인한 비용 등, 2)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 3) 범죄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태도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통계분석을 통하여 제시하고, 셋째, 관련 자료를 DB화하여 전문연구자 및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목표모집단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가구 및 14세 이상의 가구원으로 구성하였다. 표본의 배분은 전국의 표본규모를 755개 조사구로 결정한 후 25개 층별로 조사 모집단 분포의 가구 수에 비제곱근비례배분을 적용하여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추출된 조사구내에서 계통표집을 통해 10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방법은 면접조사와 자기기입조사를 병행하였다. 총 조사표본수로 총 성공 가구 수는 7,550가구이며 총 성공 개인 수는 16,557명이다.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는 성폭력 범죄를 “(1) 강간 (2)강간하고자 했으나 실패 (3) 강제로 성기를 만짐 (4) 강제로 키스 (5) 강제로 몸을 밀착시키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짐 (6) 기타의 원치 않은 성접촉이나 행동을 강요당함”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성폭력 범죄 발생율은 0.14%로 추정된다.

15 앞에서 이미 말씀해주신 사건은 제외하고, 작년(2010년) 한 해 동안, 아래에 예시한 것과 같이 누군가로부터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원치 않은 성적인 접촉이나 행동을 강요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시

① 강간	② 강간하고자 했으나 실패
③ 강제로 성기를 만짐	④ 강제로 키스를 함
⑤ 강제로 몸을 밀착시키고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짐	⑥ 기타의 원치 않는 성적인 접촉이나 행동을 강요당함

1) 있다 → 어떤 행위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위 예시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5-1** 번으로

2) 피해를 당할 만한 적이 있다 → **15-1** 번으로

3) 없다 → **16** 번으로

15-1 그렇다면, 피해를 당했거나 당할 만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약 _____ 번

그림 1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성폭력 문항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에서는 “(1)가벼운 성추행[고의로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이다.] (2) 심한 성추행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을 강제로 수행하는 행위이다] (3) 강간미수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를 말한다] (4) 강간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는 것이다]” 에 해당하는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이 네 가지 항목이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성폭력의 정의에 거의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성폭력 피해율을 비교해보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두 조사의 설문문항의 차이로 정확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

지난 1년간 가벼운 성추행, 심한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중 1번이라도 피해를 입은 인원 빈도는 78명으로 가중치를 고려한 발생율은 2.9%(78명/2200명)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20배로 나타난다.

표 4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에서의 성폭력 발생율 비교

조사	전체 응답자수	성폭력 피해자 수	발생율(%)	가중치 고려 발생율 (%)
전국범죄피해조사	16,557	23	0.1	0.14
성폭력실태조사	2,200	78	3.5	2.9

2.1.2 2011년 검찰청 범죄분석 통계

2011년 검찰청 범죄분석에 2010년 발생한 성폭력 범죄는 총 19,939건이다 (개관에는

“강간, 강제추행 등”로 분류되어 있으나 범죄 발생표에는 “강간”으로 표시). 피해인원수가 아닌 피해 건수로 자료가 나타났으며 피해인원 수는 19,939보다 작을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일인당 피해건수는 1.43건/명(총 피해건수/총 피해자수)으로 추정된 바 이를 이용하여 피해인원을 추정해보면 약 14,000명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13561=19393/1.43).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에서는 심한 성추행이 392,949명, 강간미수가 74,627명, 강간이 50,952 건으로 추정되었다. 강간미수와 강간을 합치면 125,579명으로 피해자 총수가 추정된다. 강간 피해자의 추정량 50,952명은 위에서 2011년 검찰청 범죄분석으로부터 추정한 19,939 건보다 2.5배 많다.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의 모집단이 46,952,999명이며 성폭력 발생율의 추정치가 0.14%임을 고려하여 전국범죄피해조사의 자료를 이용하면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수를 추정해보면 65,700 명으로 추정된다.

2.2 해외관련 조사 및 통계

2.2.1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NVAW) Survey

(1) 목적

미국 내 성인 여성과 남성에게 대한 성폭력과 배우자 폭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한 조사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NVAW Survey 는 미국 국립사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NIJ)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주관이 되어 실행한 표본 조사이다. NVAW Survey는 1995년 11월부터 1996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었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미국 인구총조사를 추출틀로 하고 미국 주(state)를 층으로 하는 다단계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무작위 전화번호 추출 (random digit dialing; RDD) 방식으로 8,000명의 여자와 8,005명의 남자를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전화로 가구(household)를 접촉하고 면접 적격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생일이 가장 빠른 사람을 선택하여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은 약 25분간 진행되며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CATI) 방식을 이용하였다.

여자는 여자 면접원이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남자를 면접하는 면접원은 받은 남자이고 나머지 받은 여자로 구성하였다. 이렇게 면접원의 성별을 나눈 이유는 면접원의 성별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a split sample approach).

(4) 조사 내용

- 개인의 안전에 대한 우려 정도 (Their level of concern about their personal safety.)
- 결혼 및 동거에 대한 이력 (Their marital and cohabiting relationship history.)
- 인구사회학적 특성 (Their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약물 복용이나 음주에 대한 정보 (Their use of drugs and alcohol.)
- 육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 (Their general state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 현재 배우자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 (Their current partner's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 배우자에 의한 심리적 학대 (Emotional abuse by current and former spouses and cohabiting partners.)
- 어릴 때 육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 (Physical assault by adult caretakers experienced as children.)
- 성인일 때 육체적 폭력에 대한 피해 경험 (Physical assault by other adults experienced as adults.)
- 강간이나 스토킹에 대한 피해 경험 (Forcible rape and stalking by any type of perpetrator experienced at any time in their life.)

(5) 면접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교육

- 조사 수행기관의 철저한 감독
- 면접원에 대한 교육과 비밀누출 방지에 대한 서약서
- 면접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 면접대상자가 궁급한 사항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상담 전화 운영

2.2.2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1) 목적

2010년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는 미국 내의 성폭력(Sexual violence), 스토킹 (stalking) 그리고 배우자 폭력 (intimate partner violence)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표본 조사이다.

NISVS의 보고서에서는 조사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배우자나 동거자에 의한 성폭력, 스토킹에 대한 특성과 현황 파악 (The prevalence and characteristics of sexual violence, stalking,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 폭력에 노출된 정도를 측정 (세계보건기구 is most likely to experience these forms of violence)
- 성폭력 유형과 영향 측정 (The patterns and impact of the violence experienced by specific perpetrators)
- 폭력과 보건과의 관계 측정 (The health consequences of these forms of violence)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2010년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NISVS)는 미국의 질병

통제예방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의 사고예방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부서에서 2010년에 실시한 표본조사이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조사의 방법은 가구(household)를 추출단위로 하며 주(state)를 1차 층으로 하는 다 단계층화추출법을 사용하였다. 집전화와 휴대전화를 포함한 추출틀을 이용한 무작위전화번호추출법(random digit dial; RDD) 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표본의 할당은 조사는 전국 단위의 추정치뿐만 아니라 주 단위의 추정치를 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조사는 2010년 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었다. 무응답을 줄이기 위하여 첫 번째 접촉에서는 10\$을 감사비로 주고 응답을 거부한 무응답 가구들의 부분을 뽑아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때는 40\$의 감사비를 지불하였다.

집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2명의 성인이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2명 중 1명을 임의로 추출하였으며 3명 이상이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생일이 조사일과 가장 가까운 구성원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휴대전화는 통화가 연결된 사람을 선택하여 조사하였다. 전체 면접의 10%를 검증하여 면접 내용과 수집된 자료의 일치성을 검사하였다.

201,881건의 전화번호를 표본으로 추출하였으며 이중에 적합한 표본을 선택하여 (eligible sample) 총 18,094명 (7,421 남자, 9,086 여자) 을 최종적으로 인터뷰하였다. 총 응답율은 27.5%-33.6%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가중치 적용은 다음과 같은 4가지 단계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하였다.

- 설계가중치(Selection weight)
- 전화번호의 중복 조종 (Multiplicity weight)
- 무응답 보정 가중치 (Non-response weight)
- 사후층화 (Post-stratification weight)

(4) 조사 내용

NISVS에서는 성폭력을 다음과 같이 5가지 형태로 분류하여 각 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강간 (rape)
- 타인 강간 (Being made to penetrate someone else)
- 성적 강압 (sexual coercion)
- 원하지 않은 성적 신체 접촉 (unwanted sexual contact)
- 원하지 않은 성적 성희롱 (Non-contact unwanted sexual experience)

표 5 2010년 NISVS의 성폭력 형태와 정의

성폭력 유형	정 의
강간	<p>강간이란 꼼짝 못하게 억압되고 제압된 상태나 폭력을 사용한 상태와 같은 물리적 힘이나 신체적 가해 위협을 통한 완벽하거나 미수에 그친 원치 않은 여성의 질, 구강, 혹은 항문 삽입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피해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했거나 의식을 잃었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을 포함한다. 강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완벽한 강제 삽입, 미수에 그친 강제 삽입과 완벽한 알콜 혹은 약물이 이용한 삽입이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은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질, 구강, 혹은 항문 삽입되는 경우를 말한다.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의 손가락이나 물체를 가지고 피해 여성의 질이나 항문 삽입 하는 경우도 의미한다. - 남성은 다른 남성이 성기로 구강 혹은 항문 삽입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남성이나 여성이 자신의 손가락이나 물체를 사용한 항문 삽입도 포함한다.
강압에 의한 타인과의 성교	<p>강압에 의한 타인과의 성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성적 삽입을 하도록 시도된 경우 혹은 그렇게 당한 경우로 피해자는 물리적 강제로 꼼짝하지 못할 상황이거나 제압된 상황 혹은 폭력에 의해 혹은 신체적 가해 위협 혹은 피해자가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의식을 잃은 상태거나 동의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가 강제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다.</p> <p>여자는 다른 여자의 성기나 항문을 구강으로 삽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p>남자는 자신의 성기를 다른 여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 다른 여자의 성기나 항문을 구강으로 삽입하는 행위, 다른 여자나 남자에게 구강 성교를 당하는 행위를 포함한다.</p>
성적 강압	<p>피해자가 육체적인 강압에 의하지 않은 원하지 않는 성교를 의미한다.</p> <p>지속적인 성적인 요구, 관계에 대한 협박, 심리적인 압박, 거짓인 약속에 의한 행위 등 물리적인 힘이 아닌 강압적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 성교를 말한다.</p> <p>피해자는 거짓말에 의한 억압감을 느끼거나 사실이 아닌 약속을 듣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관계가 단절 될 것이라던지 소문을 퍼뜨릴 것이라던지 얘기를 듣게 된다. 또한 누군가 자신의 영향력이나 권력을 사용하여 성적 억압도 이에 해당된다.</p>
성추행	<p>성교를 하지 않고 원치 않은 신체적 성적 접촉(키스, 애무, 안는 행위 등)을 당하는 경우</p>
성희롱	<p>접촉이나 성교를 수반하지 않는 원치 않는 성적 경험을 의미한다. 타인의 성기 또는 신체의 노출, 자위행위 노출, 성적인 사진이나 영화에 대한 노출, 공공장소에서의 성적 희롱들을 포함한다. 피해자는 안정하지 않음을 느낀다.</p>

표 6 2010년 NISVS의 성폭력 형태와 정의 (영문원본)

성폭력 유형	정의
rape	<p>is defined as any completed or attempted unwanted vaginal (for women), oral, or anal penetration through the use of physical force (such as being pinned or held down, or by the use of violence) or threats to physically harm and includes times when the victim was drunk, high, drugged, or passed out and unable to consent. Rape is separated into three types, completed forced penetration, attempted forced penetration, and completed alcohol or drug facilitated penetr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ng women, rape includes vaginal, oral, or anal penetration by a male using his penis. It also includes vaginal or anal penetration by a male or female using their fingers or an object. - Among men, rape includes oral or anal penetration by a male using his penis. It also includes anal penetration by a male or female using their fingers or an object.
Being made to penetrate someone else	<p>includes times when the victim was made to, or there was an attempt to make them, sexually penetrate someone without the victim's consent because the victim was physically forced (such as being pinned or held down, or by the use of violence) or threatened with physical harm, or when the victim was drunk, high, drugged, or passed out and unable to cons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ong women, this behavior reflects a female being made to orally penetrate another female's vagina or anus. - Among men, being made to penetrate someone else could have occurred in multiple ways: being made to vaginally penetrate a female using one's own penis; orally penetrating a female's vagina or anus; anally penetrating a male or female; or being made to receive oral sex from a male or female. It also includes female perpetrators attempting to force male victims to penetrate them, though it did not happen.
sexual coercion	<p>is defined as unwanted sexual penetration that occurs after a person is pressured in a nonphysical way. In NISVS, sexual coercion refers to unwanted vaginal, oral, or anal sex after being pressured in ways that included being worn down by someone repeatedly asked for sex or showed they were unhappy; feeling pressured by being lied to, being told promises that were untrue, having someone threaten to end a relationship or spread rumors; and sexual pressure due to someone using their influence or authority.</p>
unwanted sexual contact	<p>is defined as unwanted sexual experiences involving touch but not sexual penetration, such as being kissed in a sexual way, or having sexual body parts fondled or grabbed.</p>
Non-contact unwanted sexual experience	<p>are those unwanted experiences that do not involve any touching or penetration, including someone exposing their sexual body parts, flashing, or masturbating in front of the victim, someone making a victim show his or her body parts, someone making a victim look at or participate in sexual photos or movies, or someone harassing the victim in a public place in a way that made the victim feel unsafe</p>

(5) 면접자 보호를 위한 조치 및 교육

면접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시행하였다.

- 조사를 위한 윤리 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Committee; IRB)가 구성되어 조사에 대한 윤리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동의서(approved informed consent)를 면접 전에 면접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구하였다
- 면접요원은 다음과 같은 선발되고 교육을 받았다.
- 면접요원은 주로 여성을 선발하였으며 과거의 유사한 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을 먼저 선발하였다.
- 면접원을 위한 교육 매뉴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였다.
- 교육 매뉴얼에는 조사와 관련된 배경, 조사 절차, 개인정보보호, 안전, 응답자의 부담, 무응답을 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주로 포함된다.
- 선발된 면접요원은 1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며 2시간의 특별 면접 교육도 받았다.
- 교육은 강의, 면접 시연(demonstration), 체험 교육, 연습 면접으로 이루어 졌으며 특별하게 성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2.2.3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the Workplace Survey (2011)

(1) 목적 및 조사내용

호주의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과 직장 내 폭력에 대한 현황과 국민들이 목격한 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들이 폭력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호주 정부가 시행하였으며 조사수행기관은 Micomex research 회사이다. 2011년 2월부터 7월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조사방법은 온라인 조사(on-line survey)로 진행되었으며 (비표본조사) 목표 표본수는 1000명이다.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에 대한 안내 편지가 전달되고 응답자는 조사 전용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응답하는 형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의 안내 편지를 발송할 때 협조한 기관은 the Australian Education Union (Victorian Branch), Australian Services Union (Victorian Authorities and Services Branch), National Tertiary Education Union, the NSW Nurses' Association, the NSW Teachers Federation 이며 위의 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에게 안내 편지가 발송되었다. 최종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조사에 응한 응답자의 수는 3,611명이다.

2.2.4 Sexual Harassment National Telephone Survey

(1) 목적

2008 Sexual Harassment National Telephone Survey(SHNTS)는 호주 내의 직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성평등법률(Sex Discrimination Act 1984)에 따라 호주의 인권위원회 (The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가 주관이 되어 조사를 시행하였으며 2008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조사를 수행하였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18세이상 64세이하인 성인남여가 모집단이며 2005명을 전화 조사한 표본조사이다.

2008년 7월에 1차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총 1005명이 조사되었으며 2008년 10월에 2차 조사를 실시하여 1000명을 더 조사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조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사에서 사용된 문구를 구체적인 행위로 대체 또는 추가하여 부분적으로 변형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2005명 중에서 226명에 대해서는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4) 조사 내용

- 직장 내의 성희롱 발생 현황
- 직장 내의 성희롱 발생 유형
- 성희롱의 특성
- 성희롱에 대한 보고 현황
- 2003년에서 2008년까지의 성희롱 발생 변화

2.2.5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1) 목적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IVAWS)는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이다. 따라서 그 목적은 나라별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수준이 얼마인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주관기관은 UN의 지원하에 유럽 범죄 연구소 (The European Institute for crime Prevention and Control)와 캐나다 통계청(Statistics Canada)이다.

참가 국가는 호주, 홍콩, 코스타리카, 체코슬로바키아, 덴마크, 그리스, 이태리, 폴란드, 필리핀, 스위스 등 이 있으며 2003년부터 조사가 각 국에서 시행되었다. 조사를 시행하는 국가는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주관기관은 조사를 위한 조사설문의 설계,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각 국에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실시하여 조사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08년에 조사에 대한 최초 보고서(Violence Against Wome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가 출간되었다.

(3) 조사 결과

- 싱가포르

싱가폴에서는 2009년에 IVAWS를 실시하여 18세 이상 69세 미만의 여자 2006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여성 면접원으로만 구성된 면접조사이며 모든 추정치는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 홍콩

홍콩에서는 2006년에 IVAWS를 실시하여 여자 1,297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추정치는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 호주

호주에서는 2002년에 IVAWS를 실시하여 18세 이상 69세 미만의 여자 6,677명에 대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방법은 전화 조사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추정치는 전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적용하여 구하였다.

2.2.6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1) 목적 및 조사내용

스페인의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스페인 정부의 지원하에 Instituto de la Mujer가 시행하였으며 1999년에 1차 조사가 시행되고 2002년에 2차 조사가 시행 되었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2002년 조사는 조사방법으로 전화조사를 사용하였으며 18세 이상인 여자 20,000명을

조사하였다. 조사 방법은 다단계 층화비례 추출이며 몇 개의 작은 지역에 대해서는 300명을 고정으로 추출하였다. 전화면접요원은 모두 여성이며 CATI system을 이용한 전화조사로 면접을 실행하였다.

2.2.7 The First Israeli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1) 목적 및 조사내용

이스라엘의 가정 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2001년에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Domestic Violence Research Group of the Minerva Center for Youth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Haifa가 조사를 시행하였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이스라엘 통계청의 총조사 자료를 추출틀로 이용하여 다단계 층화비례 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였다. 2544개의 가구를 접촉하여 2092 가구에서는 여자만을 추출하고 452 가구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모두 추출하였다 (총 여자 2544명, 남자 452명)

면접은 대면면접으로 이루어졌으며 면접원은 교육을 받은 여자 대학생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원과 응답자 둘 만 면접을 하고 배우자는 면접 장소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하였다.

다음과 같은 표본 추출방법이 사용되었다.

(1) 가구를 방문하여 여자가 현재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거나 또는 여자가 지난 5년 동안 배우자와 1년 이상 같이 살았는지 확인한다. 조건이 만족되면 여자를 면접한다.

(2) (1)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대체 가구를 방문하여 (1)의 조건이 만족되면 여

자를 면접한다.

(3) 여자가 면접을 거부하면 다시 대체 가구를 방문하여 (1)의 조건을 조사한다.

(4) 5가구마다 1가구를 선정하여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면접한다.

(5) 남자가 면접을 거부하면 다시 대체 가구를 방문하여 다시 여자와 남자를 면접한다.

2.2.8 VIOLENCE AGAINST WOMEN IN TURKEY: A Nationwide Survey

(1) 목적 및 조사내용

터키의 기혼 또는 이혼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18개월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of Turkey의 Social and Human Sciences Research Group이 조사비를 지원하였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이 조사는 남자 배우자에 의한 여성 배우자에 대한 폭력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결혼을 한 경험이 있거나 결혼 상태인 여성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조사는 다단계 층화비례 추출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총 1520명의 여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터키 북부 지역에서는 280명의 추가 표본을 추출하였다. 면접은 가구를 방문하여 대면면접으로 이루어졌다.

2.2.9 Multi-Site Household Survey

(1) 목적 및 조사내용

인도의 7개 주에서 가족 내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주관기관 및 조사 기간

1997년에서 1999년에 걸쳐 3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USAID와 India 정부가 조사비를 지원하고 International Clinical Epidemiologists Network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이 조사는 인도의 7개 지역(Bhopal, Chennai, Delhi, Lucknow, Nagpur, Thiruvanthapuram, and Vellore)을 선택하여 각 지역을 농촌(rural), 도시내 빈민지역(urban slum), 도시내 보통지역(urban non-slum)으로 3개의 층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였다. 총 9,938가구를 조사하였으며 각 가구에서 여자와 남자 배우자에 대하여 자기기입 면접 방식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2.10 Cambodia Baseline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1) 목적 및 조사내용

캄보디아에서의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의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2) 지원기관 및 조사 기간

2005년에 캄보디아 정부가 주관하고 캐나다와 독일정부, 몇 개의 국제여성단체가 조사를 지원하였다.

(3) 조사방법 및 표본 수

이 조사는 다단계 층화추출(multistage stratified proportional cluster sample)을 이용하여 최종 3,030 명을 추출하여 조사를 하였다 (여자 52%, 남자 48%). 또한 300개의 경찰서 또는 관련 사법 기관에 대하여 가정 폭력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는 대면면접으로 이루어 졌으며 여자에 대한 면접은 여자면접원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실시 후 30%의 표본을 독립적으로 재조사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2.3 세계보건기구의 여성에 대한 폭력과 건강에 대한 다국적 조사

2.3.1 연구의 목적과 의의

세계보건기구(세계보건기구)가 수행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과 건강에 대한 다국적 조사 연구(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이하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 연구)는 여성 폭력(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배우자폭행)과 이것이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적 문헌과 자료에서의 차이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표준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시행되고 있는 표본조사에서 나온 결과들의 비교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가 진행되었다.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 연구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신체적, 성적, 감정적 폭력의 현황과 빈도에 대한 유효한 추정치를 구한다 (특히 남자배우자에 의해 자행된 폭력을 강조).
-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 여성 건강의 범위와 연관된 정도를 평가한다.
- 여성을 배우자에 의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거나 그런 위험에 노출시키는 요인을 밝혀낸다.
- 여성이 경험한 폭력들에 대처하는 서비스와 전략을 비교하고 문서화한다.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 연구는 국가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행동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 연구의 추가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문화간의 폭력의 차이를 측정하는 새로운 도구를 검증하고 개발하는 것
- 국가의 수용력과 연구자와 여성기관의 협력을 증가시키는 것
- 연구자와 정책입안자, 그리고 의료인에서의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것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는 여성관련 기관이 여성폭력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활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권장하는 행동 지향적 연구모델을

채택했다. 이러한 모델은 또한 여성의 안전과 복지보장을 우선으로 한다. 세계보건기구 다국적 조사 연구의 초기 계획은 남성에 관한 조사도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제외하였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전문가(연구 코디네이터 포함)와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 in Washington, DC 로 구성된 중앙 연구팀을 통해 조사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 중앙 연구팀은 조사설계, 실행, 분석의 전체적인 책임을 갖는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국제적으로 유명한 역학자, 변호사,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여성폭력을 연구하는 연구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이 운영위원회는 연구를 기술적,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의 결과와 진행을 검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했다.

각 연구참여국가 내에서, 조사를 위한 공동연구팀이 설립되었다. 이 공동연구팀은 일반적으로 조사연구 총괄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과 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기관, 그리고 정부기관과 국가통계연구소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국가별 연구팀은 연구를 지지하고 결과를 보급하기 위한 고문단도 구성하였다. 고문단의 구성원은 국가별로 달랐지만 일반적으로 중요 의사결정자, 여성기관 대표자, 그리고 연구원을 포함했다. 이 연구는 또한 보건부 소속 관련 부서의 대표자와 이외의 관련 단체의 대표도 포함하도록 했다. 가능하다면, 여성폭력에 대한 기존의 위원회를 고문위원회의 핵심멤버로 구성했다. 국가연구팀의 구성원은 고문위원회와 정기적으로 만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최근의 이슈를 논의했다.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연구에 참여한 국가들의 참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여성폭력에 대해 일하는 국가 기관이나 단체가 존재하는 국가(이 집단은 변호와 정책 개혁을 위해 생성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집단)
- 기존의 인구 기반 여성폭력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
- 세계보건기구에 알려진 강력한 잠재 동반 기관이 존재하는 국가
- 이러한 이슈를 수용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된 국가
- 최근 전쟁과 관련된 갈등이 없는 국가
- 다른 세계보건기구 지역을 대표하는 국가

첫 번째로 선택된 국가들은 방글라데쉬, 브라질, 일본, 나미비아, 페루, 사모아, 태국,

탄자니아 공화국이며 추가로 참가한 국가들은 이디오피아, 뉴질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이다. 그 이외의 국가 칠레,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은 연구 설문지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었다.

첫 번째 보고서는 처음 선택된 국가들(방글라데시, 브라질, 일본, 나미비아, 페루, 사모아, 태국, 탄자니아 공화국)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선택된 국가들 중 이디오피아, 뉴질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로 부터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지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다른 10개 국가들의 15개의 장소에서 육체적, 정신적 폭력 정도의 증거를 결과로 제공한다.

각 국가별 분석결과는 국가보고서에 활용된 후 지역과 국가적 차원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보급된다. 국가연구팀들의 협업과 더불어 기존의 경험과 자원을 토대로 분석 결과가 보급된다. 가능하다면 연구결과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련된 변호와 중재활동(나미비아에서의 여성폭력에 반하는 16일의 시위, 태국에서의 아동과 여성 폭력의 근절을 위한 국가적 계획 개발 활동, 브라질에서의 폭력 예방을 위한 국가정책과 계획 개발의 활동)에 반영될 것이다.

2.3.2 연구 주제와 조작적 정의

여성의 건강과 가정 내 여성폭력에 관한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 연구에서 사용된 폭력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1) 배우자에 의한 육체적 폭력

- 따귀를 맞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물건을 던진 것에 맞은 경우
- 거칠게 떠밀렸을 경우
- 주먹으로 맞은 경우
- 건어 차이거나 질질 끌려가거나 두들겨 맞은 경우
- 목졸림을 당하거나 의도적인 화상을 입은 경우
- 가해자가 총, 칼, 또는 다른 무기로 그녀를 위협한 경우

(2) 배우자에 의한 성적 폭력

- 그녀가 원하지 않음에도 육체적으로 성교를 강요당한 경우

- 그녀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두려워서 성교를 한 경우
- 그녀가 느끼기에 수치스럽거나 굴욕적인 성적인 행동을 하도록 강요당한 경우

(3) 배우자에 의한 정서적 학대

- 그녀 스스로 느끼기에 기분이 나쁘도록 만들거나 모욕당했을 경우
-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하찮게 여기고 굴욕을 준 경우
- 가해자가 고의적으로 그녀를 겁에 질리게 하거나 위협하는 행동을 한 경우 (예: 그녀를 바라보며 고함치거나 어떤 것을 박살내는 행위)
- 가해자가 그녀가 돌보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고 위협하는 경우

(4) 배우자에 의한 행동 통제

-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
- 그녀가 그녀의 가족이나 친지와 연락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
-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가 항상 알기를 원하는 것
- 그녀를 무시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것
- 그녀가 그가 아닌 다른 남자와 얘기할 때 화내는 것
- 그녀가 외도를 한다고 종종 의심하는 것
- 그녀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찾아보기 전에 허락을 구할 것을 기대하는 것

(5) 임신 중 육체적 폭력

- 임신했을 때, 따귀를 맞거나 두들겨 맞은 경우
- 임신했을 때, 복부를 가격 당하거나 걷어차인 경우

(6) 15세 이후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육체적 폭력

- 15세 이후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두들겨 때리거나 혹은 육체적으로 그녀를 학대하는 경우

(7) 15세 이후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성적 폭력

- 15세 이후로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녀에게 성교를 강요하거나 그녀가 원하지 않을 때 성적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

(8) 15세 이전의 아동 성 학대

- 15세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녀를 성적으로 만지거나 혹은 그녀가 원치 않는 성적 어떠한 행동을 하게 시키는 경우

설문지는 행정유형, 가정선택유형, 여성들의 설문지, 그리고 참고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들의 설문지는 개인의 동의서, 응답자와 그녀의 지역사회, 건강, 금융 자치권, 자녀, 배우자, 배우자 혹은 그 이외의 타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 여부, 그리고 폭력이 그녀의 삶에 미친 영향등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의 건강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에 관한 세계보건기구 다국적 조사 연구에서 여성들을 면접할 때 사용되는 설문지에서 다루는 항목들에 대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응답자와 그녀의 지역사회의 특징
- 일반적인 건강
- 성적 건강
- 자녀에 대한 정보
- 현재 혹은 가장 최근 배우자의 특징
- 성역할에 대한 태도
- 배우자 폭력의 경험
- 배우자 폭력으로 인한 부상
- 배우자 폭력의 영향과 여성의 대응방법
- 배우자가 아닌 사람의 폭력
- 금융자치권
-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익명의 보고; 응답자 피드백

2.3.3 조사의 설계 및 수행

(1) 표본설계

국가별로 연구의 양적인 요소들은 하나 혹은 두 개의 장소에서 실행된 인구 기반의 단면적 가정 조사로 구성된다. 방글라데쉬, 브라질, 일본, 나미비아, 페루, 사모아, 태

국, 탄자니아 공화국에서 실행된 조사는 두 곳(하나는 수도 혹은 대도시에서, 다른 하나는 지방 또는 도시와 시골 인구가 함께 있는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이디오피아가 시골환경에, 일본, 나미비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가 대도시에서 사용되었다. 사모아에서는 모든 지역이 표본으로 쓰였다.

만약 전국 조사가 아니고 일부 지역만을 조사한다면 적절한 조사 지역의 선택을 돕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폭력을 당한 적이 있고 지원이 필요한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보이는 지역.
- 지역사회, 인종집단, 종교의 관점에서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지역.
- 인구가 소외되지 않고, 배우자폭력의 정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게 여겨지지 않는 지역.

또한 조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15세-49세의 여성이 연구대상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3가지 조건은 다음과 같이 정해졌다.

- 그녀는 가정의 정상적인 구성원이다.
- 그녀는 한 주에 5일 또는 그 이상으로 가정에서 숙박하는 여성이다.
- 그녀는 그 가정에서 적어도 지난 4주간 숙박했던 여성이다.

일본에서는, 법적인 이유로 18세 이하의 여성을 인터뷰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여 18-49세의 여성이 표본으로 추출되었다.

처음 표본 수 계산에서 한 장소 당 1500명의 여성을 뽑는다면 연구 목적에 맞는 충분한 검정력을 확보한다고 판단했다. 표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서는 처음 계산된 표본 수보다 대략 20-30% 증가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이단계의 집락추출계획(two-stage cluster sampling scheme)이 사용되었다.

도시(혹은 시골)내에서, 어느 행정구역이 먼저 선택된 후 그 안에서 집락이 선택되었다. 적당한 사회경제적 지표에 의해 시행된 층화를 통해 표본은 사회경제적 집단 모두를 대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본추출구조에 의해, 22-200개의 집락(clusters)이

연구에 참여한 각 장소로부터 선택되었다. 각 집락 내에서 표본 가구들이 선택되었다. 집락에서 추출된 표본안의 가구들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도록 가중치 (self-weighting)를 구하는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사용되었다.

- 집락은 크기에 비례하는 확률로 선택되었고, 고정된 수의 가구들은 각 집락 내에서 체계적으로 선택되었다.
- 집락은 크기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선택되었고, 고정된 비율의 가구들은 각 집락 내에서 체계적으로 선택되었다.

각 국가에서 시행된 조사들은 국가의 특성, 조사의 규모 등에 따라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였다. 일본과 이디오피아에서는 연구지역의 여성 전체 목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전체 연구지역(이디오피아 농촌지역) 혹은 각 선택된 집락 (일본 도시 지역)에서 바로 표본으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표본이 여성 개인의 수준에서 가중치가 설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의 안전성과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가구당 단 한 명의 여성만 인터뷰에 응했다. Ethiopia와 Japan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모든 여성의 연령과 이니셜은 가구선정을 위한 목록에 기록되었다. 이 목록에서 여성들의 적격 여부 (eligibility)를 판단하고 면접관은 무작위로 연구에 참여할 한 명의 여성을 선택한다. 선택한 여성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면접관은 인터뷰를 다시 잡는다. 추적 실패로 간주되기 전에 적어도 두 번의 추가적 방문이 있었다. 실제로, 도시 지역에서는 특히 두 번 이상 반복된 방문이 종종 있었다. 완료되지 않은 인터뷰에 대한 대체는 없었다.

(2) 윤리와 안전에 대한 고려

여러 국제 기구의 전문가가 참가하는 과학윤리위원회(Scientific and Ethical Review Group)에서 가정 폭력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윤리지침서를 만들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었다. 이러한 윤리와 안전에 대한 지침서(세계보건기구 ethical and safety guideline)는 각 국에서 시행되었고, 이러한 민감한 이슈에 대한 조사에서 표준으로 활용되었다.

세계보건기구 윤리와 안전에 대한 지침서

- 응답자와 연구팀의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 폭력과 학대를 보고하지 않는 경향(under-report)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응답자의 대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한다.
- 모든 연구팀 구성원들을 신중하게 선발하고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
- 조사과정에서 연구 참가자(조사대상)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이나 불안을 최소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현장요원은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면 지역 서비스나 자원을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도록 교육받는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본 연구는 단기 지원 방법을 만들어낸다.
- 각 나라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원한 자금이 연구의 결과를 널리 알릴 수 있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각 국에서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한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서는 응답자의 안전과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비밀과 사생활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가 연구로 인해 고통 받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 뿐만 아니라 면접관은 응답자의 결정과 선택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 연구를 위한 윤리적 허가는 세계보건기구 자체의 윤리 위원회와 지역기관, 그리고 국가윤리검토위원회에 의해 부여된다.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 인터뷰는 아무도 없는 데서 면접자와 응답자 둘만 진행된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수준이 낮은 지역에서는 연구의 참가 의사와 동의서를 말로 읽어서 알리는 방법도 채택되었다. 연구 참가자(응답자)는 모두 자원자이며 응답에 대한 보수는 없다. 더불어, 인터뷰 중 대답하기 특히 민감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인터뷰를 계속 진행할 지 문항을 건너뛰거나 인터뷰를 종료할 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만약 인터뷰가 중단되면, 면접관은 인터뷰를 종료하거나 아니면 폭력에 관한 질문은 그만하고 덜 민감한 주제로 화제를 전환하도록 훈련받는다.

응답자가 폭력에 대해 밝힌 여부와는 상관없이, 인터뷰가 끝났을 때 응답자에게 건강센터와 폭력관련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정보가 있는 전단을 나눠준다. 만약 응답자가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한다면, 지원센터에 소개해준다. 그러나 실제로 소개요청을 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3) 응답률

다른 연구와 비교해볼 때, 본 연구는 각 부분 별로 높은 응답률을 얻었다. 10개 국가의 서로 다른 15개 장소에서, 장소 별 1172-1873번 있었던 인터뷰 중 24,097명의 여성이 폭력에 대한 경험을 빠짐없이 대답했다.

가구가 추출된 13개의 장소 중 12곳에서 거주가정의 91.3%-99.6%가 첫 번째 면접에 응답하였다.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에서만 응답률이 대략 60%로 낮게 나타났다. 이 지역의 응답률이 다른 장소와 비교해볼 때 낮은 하지만, 보통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일반 연구들에 비하면 나은 편이다.

개인의 응답률은 여성의 설문지를 완성한 수를 가구의 수로 나눔으로써 계산되었다. 과소추정의 실수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개인 응답률은 대체로 매우 높았다. 한 군대를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85% 이상의 응답률을 보였다. 제외된 곳은 일본 도시지역였는데, 이곳은 여성 모두가 표본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인의 응답률이 60%로 나타났다. 일본 도시지역의 응답률이 다른 곳 보다는 낮지만, 이는 일본에서의 다른 인구조사보다는 나은 편이다. 여성 모두가 표본으로 사용된 또 다른 지역인 이디오피아 농촌지역에서는 개인 응답률이 98%였다.

농촌지역과 도시지역 두 장소 모두 조사된 국가에서, 가구와 개인 응답률은 방글라데시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에서가 좀 더 낮았다. 이러한 경향은 도시에서의 높은 사회경제적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가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영한다.

표본추출 계획 때문에, 표본의 연령분포는 전체 여성인구의 분포와는 조금 다르다. 이러한 차이는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으로 보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는 긍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했다. 게다가 모든 국가에서, 면접관들은 여성들이 폭력을 당한 경험을 억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해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즉, 많은 여성들이 그녀의 경험을 누구와도 상의해본 적이 없었다.

여성들이 자신이 경험한 학대로 인해 비난받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과보고(overreporting)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로 편이(bias)의 주된 원인으로 응답자

가 자신의 경험을 폭로하려는 경향이 응답자의 나이와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지는 현상이 있다. 따라서 연구 수단의 표준화, 정교하게 설계된 면접 기법, 면접자에 대한 충분한 교육은 학대와 폭력의 보고를 극대화하고, 장소 간 또는 연령 간의 이질성을 줄인다.

(4)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 연구의 방법 요약

서로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의 비교가능성을 위한 표본 조사 전략

- 중앙 연구팀은 연구설계에 대한 중대 책임을 지고, 설문지와 연구진행에 대한 수정사항을 문서화한다.
- 설문지, 조사방법, 초기분석을 마무리 짓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각 국의 연구팀과의 주기적인 회의를 갖는다.
- 표본추출 계획은 중앙 연구팀의 구성원에게 검토 받는다.
- 중앙연구팀의 구성원들은 시작단계, 면접관 교육, 예비시험 단계, 자료 에디팅 단계 동안 각 국을 방문한다.
- 설문지의 표준화된 문제는 면접관 교육기간 동안 번역이 안내되었다.
- 모든 설문지는 재 번역 되었으며, 각 국의 언어로 표현되었다.
- 협력자, 감독관, 면접관, 자료 처리자를 위한 상세한 교육 매뉴얼은 교육의 표준화와 감독의 질, 연구절차의 실행을 보장한다.
- 표준 품질관리 방법은 모든 국가에서 현장 작업가 진행되는 동안 이행되며, 설문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임무를 보고하고, 면접관을 지원하는 것을 포함한다.
- 표준화된 자료 입력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모든 국가에서 사용되며, 핵심이 되는 구문들(syntaxes)은 자료 분석을 위해 개발된다.

조사 자료의 품질의 향상을 위한 관리 절차

- 상세한 표준화된 교육 과정
- 면접관과 감독관의 고용을 위한 필요조건의 명백한 설명
- 조사기간 동안 각 가구의 가능한 구성원의 적격조건(eligibility)에 대한 편집내용
- 현장조사동안 면접의 시작부분을 감독관이 지켜보는 등의 각 면접관에 대한 자세한 감독
- 응답자가 평가 기준에 맞게 잘 선택되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몇 개의 가구에

대한 감독관의 갑작스런 무작위 검토

- 응답률, 인터뷰를 끝까지 마친 사람의 수, 육체적 폭력에 대해 식별하는 비율과 같은 지표를 이용하여 면접관과 각 팀을 계속적으로 감시
- 모순이 있거나 건너 뛴 문항을 식별하기 위해 이를 검토하는 설문지 편집자를 각 팀마다 배치
- 중앙 사무실에서 “중앙 편집자”가 도착한 설문지를 검토하여 두 번째 단계의 설문지 편집
- 자료입력 시점에서 유효성, 일치성 그리고 범위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면접자 선정 및 훈련

여성이 자신이 당한 폭력을 면접원에게 공개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면접관의 다양한 특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태도, 대인관계 기술)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고 한 국제연구는 말한다. 세계보건기구-다국적조사는 여성 면접관과 감독관을 고용하여 이들을 적절히 교육시킨다.

면접관 선택의 기준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을 감정적이고 비심판적인 태도로 사로잡는 능력과 감정적 성숙, 관계를 쌓는 기술,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능력을 포함한다. 면접관의 연령과 배경에 대한 기준은 각 나라의 환경을 고려하여 결정되었다. 면접관의 최종 선택은 교육 후에 이루어진다.

교육은 각 국에서 세계보건기구 중앙 연구팀의 도움을 받아 그 나라의 연구팀에 의해 시행되었다. 면접관들은 응답자의 자기 대처전략을 강화시키고 응답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다른 여성들을 돕는 데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능력을 갖도록 교육받았다.

현장활동 동안에도 정기적인 회의와 임무보고를 통해 교육은 계속되었다. 자료수집과 조사의 논리적 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회의 외에도 감정적인 임무보고에 대한 모임도 열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접원의 사기충전과 감정적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상담의 기회 또한 제공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 최종평가가 있었다. 많은 면접관들은 교육과 실전경험이 여성의

삶의 현실과, 그들이 직면한 폭력의 종류를 직시하게 해 주었다는 것을 느꼈다. 충실한 면접관 교육과 신중하게 면접관을 선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론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전체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면접관이 상당히 높은 응답률과 폭력에 대한 정보를 얻고, 단시간에 면접을 진행, 그리고 응답자에게 더 큰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원에 대한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 지역사회적 수준뿐만 아니라 개인적 수준에서도 성적인 이슈에 민감한 면접관이 된다.
- 면접관들이 다른 성에 의한 폭력과 이것의 특성, 원인,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향상된다.
- 면접관들이 세계보건기구-다국적 조사연구의 목표를 이해한다.
- 안전과 윤리적 지침을 설명하는 면접 기술을 습득한다.
- 면접관들이 설문지, 표준 절차, 연구과정에 친숙해진다.

자료처리와 분석

자료 처리와 자료입력 과정은 모든 국가들에서 엄격하게 표준화되어있다. 자료 처리와 분석은 중앙 연구팀이 모든 것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선택하였으며 각 국에서 중앙 연구팀의 구성원이 자료처리와 분석을 감독하였다.

몇몇 질문과 답변항목은 국가별로 다르기도 하지만 표준화된 코딩 방법이 적용되었다. 이로써 각 국의 자료가 동일하게 입력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다. 각 나라는 자료의 예비분석, 자료 에디팅, 자료 입력에 책임을 진다. 중앙 연구팀은 필요하다면 도움을 제공한다.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최종 자료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는 하나의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에서 종합된다.

2.4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하는 여성 폭력에 대한 연구 방법

2.4.1 세계보건기구의 여성 폭력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2005년에 여성폭력과 관련하여 연구를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지침서(Researching Violence Against Women A Practical Guide for Researchers and Activists)를 발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서 중에 한국에서 수행되는 성폭력, 가정 폭력 실태조사의 개선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요약 하고자 한다.

2.4.2 여성폭력 또는 가정폭력을 주제로 설정한 각 국의 조사들 (전국조사인 경우만)

다음 표에는 현재까지 각 나라별로 진행된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에 대한 조사들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조사의 모집단(Study population)은 조사마다 매우 다르며 아래 표에 제시된 조사의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집단을 분류할 수 있다.

- 모집단 I = 모두 여자
- 모집단 II = 현재 결혼/동거 상태에 있거나 또는 과거에 결혼/동거한 경험이 있는 여자
- 모집단 III = 과거에 결혼/동거한 경험이 있는 여자
- 모집단 IV = 임신 경험이 있는 여자
- 모집단 V = 결혼 중인 여자중 반은 임신 경험이 있는 여자, 나머지 반은 임신 경험이 없는 여자
- 모집단 VI = 지난 1년간 배우자 또는 동거자가 있는 여자

표 7 현재까지 진행된 국가별 가정폭력·성폭력 조사의 특성

국가	조사 년도	조사 구역	표본 수	모집단 형태	조사자 나이
Kenya	2003	National	3856	III	15-49
South Africa	1998	National	10,190	II	15-49
Zambia	2001-2002	National	3792	III	15-49
Barbados	1990	National	264	I	20-45
Colombia	1995	National	6097	II	15-49
Colombia	2000	National	7602	III	15-49
Dominican	2002	National	6807	III	15-49
Ecuador	1995	National	11,657	II	15-49
El Salvador	2002	National	10,689	III	15-49
Guatemala	2002	National	6595	VI	15-49
Honduras	2001	National	6827	VI	15-49
Haiti	2000	National	2347	III	15-49
Mexico	2003	National	34,184	II	>15
Nicaragua	1998	National	8507	III	15-49
Paraguay	1995-1996	National	5940	III	15-49
Paraguay	2004	National	5070	III	15-44
Peru	2000	National	17,369	III	15-49
Puerto Rico	1995-1996	National	4755	III	15-49
Uruguay	1997	National	545	II	22-55
Canada	1993	National	12,300	I	>18
Canada	1999	National	8356	III	>15
United States	1995-1996	National	8000	I	>18
Australia	1996	National	6300	I	
Australia	2002-2003	National	6438	III	18-69
Bangladesh	1992	National (villages)	1225	II	<50
Cambodia	2000	National	2403	III	15-49
China	1999-2000	National	1665	II	20-64
India	1998-1999	National	90,303	III	15-49
Papua New Guinea	1982	National, rural villages	628	III	
Philippines	1993	National	8,481	IV	15-49
Republic of Korea	1989	National	707	II	>20
Samoa	2000	National	1204	III	15-49
Albania	2002	National	4049	III	15-44
Azerbaijan	2001	National	5533	III	15-44
Finland	1997	National	4955	I	18-74
France	2002	National	5908	II	>18
Georgia	1999	National	5694	III	15-44
Germany	2003	National	10,264	III	16-85
Lithuania	1999	National	1010	II	18-74
Netherlands	1986	National	989	I	20-60
Norway	2003	National	2143	III	20-56
Republic of Moldova	1997	National	4790	III	15-44
Romania	1999	National	5322	III	15-44
Sweden	2000	National	5868	III	18-64
Switzerland	1994-1996	National	1500	II	20-60
Switzerland	2003	National	1882	III	>18
Ukraine	1999	National	5596	III	15-44
United Kingdom	2001	National	12,226	I	16-59
Egypt	1995-1996	National	7123	III	15-49

2.4.3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수행 시 윤리와 안전에 대한 지침

- 응답자와 연구팀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 발생률에 대한 조사는 폭력에 대해 과소 추정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 여성의 안전과 자료의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비밀보장은 필수적이다.
- 모든 연구팀 구성원들은 특별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신중하게 뽑아야 한다.
- 연구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연구설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현장에서 여성이 도움을 요청할 경우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만약 서비스가 마련되어있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 지원 방법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한다.
- 연구자들은 적절하게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는 윤리적 의무를 갖는다.
- 폭력에 관한 문항은 윤리적이고 방법론적인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만 조사에 포함될 수 있다.

2.4.4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수행 시 응답자 신상 보호에 대한 지침

- 한 가정 당 한 명의 여성만 인터뷰한다.
- 조사가 폭력에 관한 질문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는다.
- 같은 가정 내의 남성에게 폭력에 관한 인터뷰를 하지 않는다.
- 인터뷰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된다.
- 인터뷰 도중 다른 사람이 방에 들어온 경우에는 가짜 설문지를 사용한다.
- 인터뷰 동안 아이들의 주의를 돌리기 위해 사탕이나 게임 등을 사용한다.
-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기입식 설문지가 효과적일 수 있다.
- 인터뷰 동안 면접관이 응답자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인터뷰를 긍정적으로 마무리한다.

2.4.5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 계획에 대한 지침

- 제목: 가능한 짧으면서 연구주제를 잘 나타내도록

- 연구자: 연구자들의 직위, 소속을 목록화한다.
- 배경: 이 연구가 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서술한다. 이전의 다른 연구에서 이 문제에 대해 이미 알려진 것은 무엇인가? 이 연구 분야에 대해 당신이 경험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이 생각하는 이론적이고 개념적인 구조는 무엇인가? 참고문헌 검토가 필요하다.
- 연구목적: 연구의 일반적인 목적을 서술하고 자세한 질문들을 구체화한다. 연구 목적은 연구 설계와 연구방법과 일치해야 한다.
- 연구지역: 연구할 대상인 지역을 구체화한다. 이 지역에 대해 사회적, 경제적, 역학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연구 설계: 설계된 연구는 인구기반 조사, 사례 대조 연구, 참가 방식 연구, 심층 면접, 표적집단을 포함하는가?
- 연구대상자: 연령, 성별, 그 이외의 특성, 추적기간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를 구체화한다.
- 표본추출설계와 표본추출과정: 표본 수와 표본 수 계산의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 참여의 요건은 무엇인가? 응답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선택할 것인가? 표본이 무작위로 선택되었는가? 그렇다면 그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라.
- 연구방법: 연구에 사용된 방법을 자세하게 서술한다. 설문지나 면접안내문 등의 연구에 사용된 자료들을 첨부한다.
-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 주요 변수들을 어떻게 정의했고 측정했는지를 자세하게 서술한다.
- 자료관리와 분석계획: 자료는 어떻게 처리하고 분석할 것인가?
- 현장조사의 조직: 현장조사의 모든 단계를 기술해야 한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했는가? 예측되는 장애변수는 무엇인가? 그 장애변수는 어떻게 처리했는가?
- 윤리적 고려: 윤리문제는 윤리검토위원회와 연구자에 의해 평가되고 명시되어야 한다.
- 계획표: 준비, 예비연구, 연구시작, 연구종료, 분석, 보고서작성 등의 단계가 언제 진행 될 것인가?
- 예산: 현실적인 방법으로 예정된 일정에 맞게 예산을 구체화한다.
-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과의 관계: 이 연구에서의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의 의의가 무엇인가? 변화, 중재, 그리고 당신의 연구 결과로 기대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 참고: 다른 연구에서 참조한 내용을 서술한다.

- 부록: 면접 지침서 혹은 설문지와 같은 조사에 사용된 도구들을 첨부한다.

2.4.6 조사 계획의 개발에 대한 지침

채택된 연구설계 방법에 적절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비록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다른 방법으로 표본을 선택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신중하게 표본추출을 계획하는 것은 중요하다. 특히 인구기반 조사에서, 표본이 적절하게 선택되지 않으면 연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질적 연구는 주로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표본을 추출하는 반면에, 양적 연구의 방법은 많은 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선택한다. 이러한 경향은 두 연구에서의 표본추출의 목적에서 비롯된다. 양적 연구에서 표본추출의 목표는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모집단에 일반화하기 위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에서의 질문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정보를 모으는 것이다.

(1) 질적 연구에서의 표본추출

질적 연구에서는 표본 수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없다. 질적 연구에서의 표본추출에서, 응답자 정보의 한계 지점까지 계속 응답자를 선택한다. 즉, 새로운 면접에서 더 이상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표본추출은 중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질적 연구에서, 10-30번의 인터뷰 (4-8개의 표적집단)이 적절하다. 아래 표는 질적 연구의 표본추출에 적합한 방법 몇 개를 정리했다.

표 8 질적연구에서의 표본 추출법

표본추출유형	목적	사례
극단사례추출 (Intensity sampling)	-적은 수의 사례로 부터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사례들은 강하게 현상을 드러낸다.	강압적인 성행위가 그녀의 성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위해 데이트 강간의 생존자를 인터뷰한다.
이상사례분석 (Deviant case sampling)	설문문항의 매우 드문 현상으로부터 배우기 위해	부인을 확대하는 것이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자신의 부인을 때리지 않는 남성들을 인터뷰한다.
목적이 있는 층화추출 (Stratified purposeful sampling)	관심 있는 특정 부차집단의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비교하기 위해	가정폭력 희생자에 대한 태도를 비교하기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서비스 제공자들(경찰, 사회복지사, 의사, 성직자)을 인터뷰한다.
스노우볼 또는 연결 표본추출 (Snowball or chain sampling) (1-2명의 추출된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같은 사람을 호명하게 한다.)	찾기 어려운 사례들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아동 성 학대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인터뷰를 성매매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최대 변동 표본추출 (Maximum variation sampling) (일부러 관심분야에 대한 변동이 큰 범위를 선택한다.)	다양한 변동을 문서화하기 위해;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인 패턴을 규정할 수 있다.	부인을 때리는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도의 변동을 하위집단 내의 표적집단을 통해 조사한다; (젊은 도시 여성, 늙은 도시 여성, 젊은 시골 남성, 늙은 시골 남성, 폭력 당한 적이 있는 여성, 폭력을 당하지 않은 여성.)
편의추출 (Convenience sampling) (선택하기 쉬운 사람을 추출)	시간, 돈,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수집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은 신뢰성을 보인다.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 지역 복지관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을 기반으로 표적집단을 구성한다.
기준 표본추출 (Criterion sampling)	사례의 특정 형태를 심도있게 조사하기 위해 변동의 모든 원인을 규명한다.	특히 폭력 당한 여성 중 배우자를 떠난 사람만 인터뷰한다. (여성이 떠난 이유에 초점을 맞춰 이해하기 위해)

(2) 양적 연구에서의 표본추출

비확률적인 표본추출을 사용하는 질적 연구와는 달리 양적 연구는 정보를 무작위로 추출한다. 확률적 혹은 전형적인 표본은 결과가 전체 인구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출된 개체의 집단을 말한다. 표본이 무작위로 추출되었다는 것은 표본 하나하나가 연구에 포함될 확률이 동일하게끔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무작위로 추출에 실패하면 이는 편이(bias)를 발생시켜 연구의 타당성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표본을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화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표본조사에는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들은 각자의 장단점을 가지기 때문에 방법에 따라 결과에 통계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 무작위 표본추출과 같은 방법은 인구집단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아래는 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추출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다.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표본을 얻는 과정을 간과할 수 있다. 이는 “무작위 선택”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한 혼돈 때문에 흔히 하는 실수이다. 무작위 선택은 응답자가 단순히 특정한 순서 없이 뽑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무작위 표본을 얻기 위한 방법은 꽤 복잡하며 경험이 없는 연구자들은 표본추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잘못 뽑혀진 표본이 설문에 사용된다면 설문지가 아무리 잘 만들어졌더라도 의미 없는 결과를 제공 할 것이다.

무작위 표본은 종종 편의표본(convenience samples) 혹은 할당표본(quota samples)과 혼동된다. 편의표본은 특정한 순서 없이 가능한 사람이 뽑히는 것을 말한다. 할당표본은 특정 유형의 사람이 고정된 숫자만큼 뽑히는 것이다.

- 단순무작위추출(Simple random sampling)

이 표본추출 방법은 인구집단의 목록으로부터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적절히 사용된다면 각각의 사람들이 표본에 포함될 확률은 동일하고 독립적이다.

여기서의 독립성이란 한 명을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것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이라는 단어는 이 방법이 쉽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기회로 응답자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무작위 선택은 복권추첨 방법, 난수표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얻어진다. 편이를 방지하기 위해 추출틀에서 연령, 성별, 거주지와 같은 기준에 의해 인터뷰된 사람들만 포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같은 이유에서, 특정 개인이 최근에 대상 지역으로 이주해서 원본에서 누락되었다면 이러한 누락은 편향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목록을 갱신해야 한다.

- 계통추출 (Systematic sampling)

단순 임의 추출에서, 각 개인 또는 가정은 무작위로 선택되었다. 반면, s계통추출은 추출틀의 임의의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로부터 매 n번째 사람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5000명의 여성의 추출틀로부터 100명의 여성을 뽑으려 한다면, 1과 50 사이의 숫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한 후 그로부터 매 50번째 여성들을 뽑으면 된다. 단순 임의 추출과 계통추출 모두 모집단의 전체 리스트를 필요로 한다. 어떻게 리스트가 만들어진 것인지, 각 개인들이 무작위로 위치한 것인지 아니면 순서를 갖는 것인지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만약 동일한 가정 출신이거나 혹은 어떤 특성으로 그룹지어진다면, 이는 편향된 표본이 된다.

- 층화추출 (Stratified sampling)

층화추출은 단순임의추출 또는 계통추출과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표본이 연령, 성별, 인종, 혹은 사회경제적 상태와 같은 특성이 모집단에 가능한 근접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이 경우, 모집단은 층, 또는 하위그룹으로 나뉘고 각 층에서 개인이 무작위로 선택된다. 층을 나누는 단계가 추가되기 때문에, 층을 나누는 특성이 결과가 연관된 경우에만 이 방법은 의미 있다. 각 층에서 선택한 개인의 수가 인구집단의 실제 분포와 비례하면 분석이 쉬워진다. 예를 들어, 표본들이 농촌/도시 거주에 따라 층화되었다면 표본에서의 시골 여성의 비율은 모집단에서의 시골 여성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

가중 층화추출(Weighted stratified sample)은 인구집단에서 적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연구목적과 관련된 집단이 존재할 때 선호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집단들이 적절하다고 확신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큰 표본수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 다단계 집락 추출(Multistage and cluster sampling)

다단계표본추출은 대규모 지역에서의 대규모 모집단으로 부터 표본을 추출할 때 종종 사용된다. 이는 각 단계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것, 또는 표본에서 표본을 선택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선 모집단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집락 (clusters; 마을 또는 지역) 등으로 나뉜다. 그 다음 이 집락에서 무작위 추출을 한다. 여기까지가 표본추출의 첫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집락에서 표본추출단위(응답자, 가구)를 모두 선택하거나, 집락 내에서 표본추출단위의 그룹을 선택한다. 때때로 두 단계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 시골지역에서 무작위로 한 지역을

선택한 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선택된 지역으로부터 무작위로 마을들을 뽑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개인 응답자들은 집락으로부터 선택될 것이다. 각 단계에서, 단순무작위추출, 계통추출, 층화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단계 추출방법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통계학자와 상의할 것을 권장한다.

다단계 표본추출의 장점은 추출틀 (예로 가구의 목록)이 집락(마을)를 선택할 때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표본이 선택된 집락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실행이 쉬울 것이며, 전체 연구 지역을 모두 포함할 필요가 없다.

다단계 표본추출의 단점은 단순무작위추출의 경우보다 더 크기가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구지역이 예를 들어 대도시지역인 경우, 집락을 정의하는 것도 다단계추출의 어려움이 될 것이다.

(3) 얼마나 많은 표본들이 필요한가?

조사에 필요한 이상적인 표본 수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 대규모의 표본은 일반적으로 결과의 정확성, 신뢰성을 증가시킨다.
- 모집단에서의 변동이 심할수록, 더 큰 표본이 필요하다.
- 연구에서 측정하고 싶은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매우 드물게 일어난다면(예를 들어 유아 사망률, 산모사망률), 대규모의 표본이 필요하다.
- 표본 크기의 계산은 단순히 모집단의 상태의 비율을 측정할 것인지, 두 그룹 간의 예상되는 차이를 측정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 이는 처음부터 자료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비율의 추정에 있어 원하는 정확 수준을 제공하고 서로 다른 변수에서의 차이가 유의한 지 검증하기 위해서는 표본은 충분히 커야 한다.
-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본 수 계산 공식 및 컴퓨터 패키지는 단순임의추출 가정 하에 계산된다. 만약 다단계추출이나 층화추출을 사용 할 계획이라면, 원하는 정확성을 얻기 위해서는 표본 수를 증가해야 할 수도 있다.
- 계획한 분석이 표본의 특정 하위그룹 연구를 필요로 한다면, 표본크기는 그에 맞게 증가되어야 한다.
- 모집단 크기 차이가 표본 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예상빈도의 변

화와 정확성의 변화는 표본 크기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단계 표본추출 방법이 사용되면, 표본 크기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되어야 한다.

(4) 추출틀 구하기

이전에 언급했듯이, 무작위 표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모집단에서의 가구나 개체를 목록화 혹은 지도화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능하다면, 이전에 만들어 놓은 추출틀이 사용되어야 한다. 추출틀의 예는 다음과 같다.

- 공식적인 인구조사 자료
- 유권자 등록 기록
- 보건복지부에서 면역 혹은 말라리아 캠페인을 위해 실시한 인구조사
-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 개발된 추출틀

정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추출틀에 대한 선택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공식 자료의 몇몇에서는, 특정 개인이 제외될 수도 있다. 더욱이 수집된 자료가 최근 자료가 아니라면, 기록을 갱신 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새로운 추출틀을 개발하는 것 보다 시간이 적게 든다. 만약 기존의 것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추출틀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5) 누구를 면접해야 하는가?

안전의 이유로, 가구 당 단 한 명의 여성만을 인터뷰한다. 그렇다면 가구 내에서 어떤 여성이 가능한 응답자인가? 예를 들어, 집안의 하녀가 포함될 수 있는가? 가정에 방문한 친구 혹은 친지 혹은 하숙생은 어떠한가?

연구자들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서로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고, 각각의 해결방안들은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갖는다. 예를 들어, 이전에 그 가정에서 숙박한 여성이 기본 기준으로 사용된다면, 집안의 하녀는 그들의 작업장에서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그 가정에 대해 수집된 경제적 상태에 대한 정보는 반영되지 못한다. 반면에, 가정하녀가 그들의 작업장에서 적당하다고 고려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들의 영구적인 가정에 포함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표본에 편향이 생기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집락 내에서의 가능한 모든 여성들이 정보원으로 뽑힐 기회가 동일하게 주어지는 방법으로 적격(eligibility) 기준이 정의되어야 한다.

2.5 세계보건기구 여성 폭력 조사통계에 대한 지침

세계보건기구는 “Violence against women a statistical overview challenges and gaps in data collection and methodology and approaches 라는 제목으로 통계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다음은 보고서에 나온 표본 조사에 대한 내용의 요약이다.

2.5.1 표본조사 (Population-based surveys)

대표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여성에게 그들이 겪은 폭력에 관해 질문하는 표본조사 (population-based surveys)는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으로 얻어진 자료들과는 달리, 표본조사는 무작위로 선택된 표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따라서 조사 결과는 표본이 추출된 인구집단 전체에 일반화될 수 있다.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실제 발생한 희생을 반영하기 때문에, 응답자에게 희생에 관해 질문하는 표본조사는 실제로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수준을 반영한다. 이는 여성에게 자행되는 폭력의 정도를 측정하고, 시간에 따른 트렌드를 살펴보고, 여성폭력에 대해 지각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특히 유용하다.

몇몇 정부들은 관례적으로 표본을 이용한 피해자 조사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미국은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National Crime Survey)를 1960년대부터 실시했고, 영국은 1982년부터 British Crime Survey를 실시해 오고 있다. 여성 폭력에 관한 표본조사는 배우자의 폭력에 초점을 맞춰 1975년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그 이후로, 수많은 독립적인 표본조사 (특히 더 많은 종류의 여성폭력에 초점을 둔 조사)가 여러 국가(호주, 캄보디아, 캐나다, 콜롬비아, 이집트, 핀란드, 니카라과, 스웨덴, 짐바브웨)에서 시행되었다. 이러한 조사들은 모두 여성에게 자행된 폭력의 정도가 건강 자료 지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특별히 1995년, the Platform for Action by the Beijing World

Conference on Women이 있었던 때; 이하 베이징 회의) 이후, 특히 배우자에 의한 여성폭력의 다양한 형태를 추정하기 위해 시행된 연구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베이징 회의 이후 10년 동안 여성 폭력의 특성과 정도를 문서화하는 막대한 절차들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최근의 기록된 문헌 연구는 배우자 폭력에 관한 80개 이상의 실태 조사를 50개가 넘는 국가로부터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결혼한 여성들의 10-60%가 배우자로부터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육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물론 여성들도 폭력적일 수 있고, 동성의 관계에서는 폭력이 존재하지만, 많은 조사 기록에서 여성들은 압도적으로 배우자 폭력의 희생자임이 나타났다.

성폭행과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폭력 또한 생각보다 훨씬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했다. 여성의 20-40%가 성인이 된 후 다른 남성에 의해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 어린 나이에 성폭행을 처음으로 겪은 경우도 있다는 조사결과도 있었다. 전세계적인 25개의 연구에서 11-32%의 여성이 아동 성 학대를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자료 수집은 다양한 기관(정부 기구 및 기관, 통계청, 대학교 및 연구소, 시민단체)에 의해 수행되었다.

2.5.2 현재까지 이용된 표본조사의 특성

- 폭력의 종류

표본조사는 수많은 여성폭력의 종류(배우자 폭력, 성폭력과 강간, 근친상간, 정서적 폭력, 여성 성기 절제)를 조사한다. 대부분의 연구는 단지 폭력의 한 가지 유형 (예를 들어, 강간, 배우자 폭력, 근친상간)에 초점을 맞추지만, 몇몇 연구들은 폭력의 복합적인 형태를 조사한다. 배우자 폭력 및 성폭력은 여성폭력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연구형태이다. "가정폭력"이라는 용어는 종종 배우자 폭력과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된다. 어떤 경우에는 아동폭력, 노인폭력, 가정 노동자에 대한 폭력, 법적 가족에 대한 폭력 역시 가정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간주된다. 여성폭력의 특정 유형이 정의되었고, 그 정의는 여러 조사에서 사용되었다. 드물게 일어나는 폭력의 형태에 대해서는 관심을 받지 못했다.

- 발생율 (Prevalence)

주요 연구들은 폭력의 발생률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인구학적 집단 내에서의 특정 시간 동안 희생된 18세의 여성들의 퍼센트를 말한다.

- 발생수 (Incidence)
 폭력을 측정하는 또 다른 방법은 특정 기간 동안 특정 인구학적 그룹 내에서 자행된 폭력의 발생 정도 혹은 폭력사건의 수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발생 정도 혹은 발생률로 나타내어질 수 있다. 폭력의 몇몇 유형은 여성이 동시에 여러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경우에는 발생 정도에 따라 분류되기 어렵다.
- 피해의 조사 준거기간 (Reference period of victimization)
 여성에 대한 폭력의 발생 정도와 발생률을 측정하는 보다 일반적인 기간은 어린이 된 이후(15, 16, 또는 18세 이후) 이전 5년, 이전 12개월, 혹은 이전 6개월로 한다.
- 발생빈도와 기간 (Frequency/duration)
 많은 연구들은 발생 빈도를 측정하고 폭력의 기간을 조사한다. 이와 함께 발생 빈도와 기간은 “만성적”이라고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 심각한 정도 (Severity)
 많은 연구들은 실제 부상 혹은 부상의 위험에 대응하는 행동 분류에 따라 심각성을 측정한다. 일부 연구는 심각성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임신기간 동안에 그녀의 삶을 위협하는 폭력이 있었는지, 폭력이 정서적인 측면에 영향을 끼쳤는지 등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
- 가해자 (Perpetrators)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폭력의 유형을 분류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 대부분의 조사는 지금의 남편과 전남편, 동거인, 데이트상태, 및 남자친구에 의해 자행된 폭력 등 다양한 상태로부터의 폭력을 측정한다. 일부 연구는 동성 파트너에 의한 폭력도 포함한다. 특히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IVAWS)와 crime victimization surveys와 같은 조사에서는 낯선 사람, 배우자 이외의 가족, 교사, 경찰, 성직자, 의사 와 지인 등의 다양한 가해자에 의한 폭력을 포함한다.

- 장소 (Setting)
일부 조사는 가정, 학교, 직장 등의 서로 다른 장소에서의 폭력에 특히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 특별조사와 일반조사 (Dedicated versus general surveys)
특별 조사(dedicated surveys)은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반면, 일반 조사(general surveys)은 주로 여성 폭력에 대한 몇 가지 추가 질문이 포함된 조사를 한다. 일반 조사에 추가된 질문의 정도와 수는 상당히 다양하다. 일반조사에 여성 폭력에 대한 별도의 모듈이 추가된 하이브리드 형태도 존재한다.
- 면접방법 (Modes used in administering the questionnaire)
자원이 제한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대면 인터뷰로 진행된다. 더 나은 환경에서는, 우편 설문 조사, 전화 인터뷰, 자기 관리 설문 조사, CATI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인터뷰), CAPI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면접), CASI (컴퓨터를 이용한 자체 인터뷰)등이 주로 이용된다.
- 설문지 설계 (Questionnaire design)
조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 설계방식은 매우 다양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서로 다른 조사에서의 자료 비교에 영향을 준다. 폭력을 경험한 여성을 식별하기 위한 문항의 수와 단어는 결과의 질에 영향을 주고 특히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수를 추정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
- 조사모집단 (Study population)
여성 폭력에 대한 인구 기반 조사는 조사 대상 모집단의 연령과 결혼상태에 의해 변한다. 건강 결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조사는 종종 가임 여성(15-49세)만 조사하는 반면에 다른 조사들은 기준 연령(15세 혹은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선진국의 일부 조사는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여성과 남성 모두를 인터뷰한다. 특히 미국과 유럽에서의 몇몇 연구들은 폭력을 당한 어린이와 청소년에 초점을 맞춘다.

- 적용범위

국가 연구가 있는 반면, 그 이외의 연구들은 하나 이상의 지역 혹은 지역사회를 대표한다.

- 연구 기관

비교적 적은 연구들이 국립 통계 사무소의 후원으로 실시되고 있다. 연구들은 대학, 독립연구기관 및 비정부조직에 의해 실시된다. 국립 통계 사무소가 직접 설문조사의 실시에 관여하지 않는 일부 국가에서는 표본추출 방법에 대한 도움을 제공한다.

이미 많이 달성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 개발에 있어 격차와 도전은 여전히 존재한다. 연구에서의 자료비교뿐만 아니라 수집된 자료의 유효성과 신뢰성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자료를 측정하고 수집하는 데 있어 표준화된 방법과 수단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여성 폭력에 관한 자료 수집과 보고 단계에서의 불변성과 비교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자료의 비교가능성과 자료의 품질 문제 이외에도, 연구지역 범위를 정의하고, 모집단을 정의하고, 여성 폭력의 유형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존재한다.

2.5.3 여성 폭력에 관한 표본 조사에서의 주요 문제들

(1) 윤리와 안전 문제

지난 10년간,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폭력에 관한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와 면접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안전 지침서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방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자료의 품질을 손상시킬 수 있고, 또한 신체적, 정서적인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안전과 윤리에 관한 지침서를 만들었다. 본 지침서는 주로 면접의 비밀유지 보장, 면접관들에게 성에 대한 이슈에 대한 특별 교육 제공, 현장 요원에게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감정적 지원도 제공할 것에 대해 다루고 있다.

(2) 폭력 연구와 자료수집의 다양한 방법

이전에 언급되었듯이, 지난 10년간,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등장했다. 한 가지 방법은 주로 여성 폭력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구에서 사용되었다. 다른 방법은 현재 진행 중인 대규모의 연구에 여성폭력에 관한 질문을 넣는 것이다. 이 연구는 서로 다른 주제에 관한 정보를 생성해내도록 설계되었다. 하이브리드 형태는 일반적인 조사에 특별한 모듈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히 유럽과 북미의 여러 나라들은 여성폭력에 대한 국가조사를 수행하였다. 호주, 프랑스, 핀란드, 독일, 스웨덴,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들이 여성에 관한 폭력의 국가 조사의 예이다.

표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를 시행하는 국제기구의 지속적인 노력이 존재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질문은 광범위하게 계획된 대규모 조사에 포함되었지만, 연구 특정 모듈을 사용함으로써 연구목표와 관련성을 지녔다. 캐나다와 영국에서 시행된 피해자 설문조사는 배우자 폭력, 성폭력 및 스토킹을 해결하기 위해 일반적인 범죄 피해에 대한 설문조사에 모듈을 추가했다. 이 모듈은 여성폭력에 대한 조사에 사용된 자세한 질문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단지 한 두 개의 일반적인 질문(예: “15세 이후 혹은 결혼한 이후에 그 누구로부터 구타당한 적이 있는가? 누구한테 당했는가?”)만 사용되었다. 그러나 과소 보고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단일 질문 방법은 권장하지 않는다.

인구건강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s; DHS) 가정폭력 모듈 또한 꽤 자세하고, 폭력의 세대 간 일치성을 깊게 연구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인구건강조사(DHS)는 또한 적어도 16개국에서 여성성기절단에 관한 정보를 모으기 위해 여성성기절단에 관한 질문의 모듈을 사용한다. 세계보건기구설문지는 인구건강조사 모듈에 포함된 모든 질문들을 포함하고, 여성이 사용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위험과 보호요소 또한 다루었다. 설문지를 기반으로, 세계보건기구는 배우자 혹은 비배우자에 의한 여성폭력의 발생률을 측정하는 간단한 도구를 개발했다.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는 폭력의 결과와 주변 정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폭력과

가해자의 여러 유형에 관한 많은 정보도 얻기를 원한다. 또한 면접관과 응답자의 상호작용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안전과 비밀보장에 대한 문제를 더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비용이 많이 들고, 반복 수행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특히 조사를 시행하기에 정보가 드문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해 고안된 조사는 여성폭력의 정도를 문서화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른 목적을 위해 고안된 연구에 여성폭력에 관한 연구를 끼워 넣는 것의 가장 큰 단점은 여성폭력에서 얻어진 정보의 폭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전용조사와 일반조사를 사용하는 데에서 모두 장단점이 존재한다. 비전용 연구에서는 다문항 모듈이 권장된다.

(3) 접근하기 힘든 집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에서 여성폭력의 영향과 발생률을 추정하는 대규모 조사의 개발이 상당히 진전되었다. 이러한 조사들은 주로 국가적, 지역적 단계에서 신뢰할 수 있고 유효한 추정을 제공한다. 아래에 나열된 경우처럼, 흔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 여성 성기 절단
- 지참금 관련 폭력
- 여성에게 좋지 않은 문화적 전통적 관습
- 경제적 폭력
- 교육기관 또는 양육기관에서의 여성폭력
- 밀입국 이주 노동자, 난민, 소수여성에 대한 폭력
- 전쟁 상황에서의 폭력
- 성적 착취를 위한 여성의 매매
- 명예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범죄
- 배우자 혹은 그 이외의 사람에 의한 여성 살해

소수여성 또는 난민들은 대규모 국가조사로부터 누락되기 쉽다. 가정 표본 조사는

특정 집단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여성폭력의 형태를 나타내는 데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지도 모른다.

2.5.4 여성 폭력에 대한 조사에서 자료 수집의 일반적인 원칙

지난 10년간,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수집 절차와 방법 개발에 있어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폭력의 결과와 특성, 폭력의 정도를 상당히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을 가지고 국가와 지역에 걸쳐 비교는 것은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한 도구는 현재 널리 이용가능하며, 여성폭력 반대 활동을 위한 지식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자료 수집은 여성에 대한 질 높은 연구 분석과 함께 예방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와 자료 수집은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얻어진 통찰은 폭력의 피해자에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정책개발의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전문가집단위원회는 다음의 일반적인 원칙이 자료수집 과정에서 제시되어야 한다고 권장했다

- 국립 통계 사무소 또는 보건 관련 부서들은 개념과 정의의 일관성과 자료수집의 규칙적인 빈도를 보장하는 표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자료수집 활동과 방법은 이해당사자와의 상담에서 개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자료 수집과 보급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 여성의 안전은 우선시되어야 하며, 자료수집의 어느 단계에서도 여성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 기밀유지와 사생활보호는 자료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절차 모두에서 가장 중요하다. 응답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료의 안전한 보관이 우선되어야 한다.
- 전문가집단은 여성폭력의 형태에 관한 포괄적인 자료수집은 베이징 회의(Beijing Platform for Action)의 지시내용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1) 전문가집단위원회의 권장사항

-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수집하고, 처리하고, 보급하는 국

가의 능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을 효과적인 정책 개발의 기반으로 사용 할 필요가 있다.

- 여성기관, 비 정부기관, 서비스지원자, 정책입안자 등 모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은 자료의 수집과 자료사용의 모든 절차와 설계 단계에 참여해야 한다.
- 통계적인 자료는 복잡한 부분을 찾아내는 양질의 방법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2.5.5 표본 조사의 품질 향상 방법

폭력을 측정하는 데 사용된 방법과 폭력의 정의는 발생률과 발생 정도를 추정하는데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수집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위원회는 다음을 제안한다.

- 국가정부는 여성폭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에 대한 연구가 국가통계사무소, 정부기관, 연구센터, 대학, 비 정부기관, 국제기관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 방법론적인 지침서는 여성폭력에 관한 국가조사를 고안하는 나라들을 도와주기 위해 개발, 편찬, 보급되어야 한다.
- 자료는 국가통계의 기본 원칙에 맞게 수집, 처리, 보급되어야 한다. 가능하다면, 연구가 종료된 이후에 정책 입안자들이 본 결과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야 한다.
- 조사는 폭력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야 하고, 다양한 유형의 폭력(육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을 포함해야 한다.
- 여러 가지 접근과 측정을 사용하여 폭력의 심각성을 조사해야 한다.
- 연구자와 국가통계사무소는 기본적인 윤리원칙에 따라 응답자와 면접관에게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폭력의 유형은 구별되는 방법으로 나타나야 하며, 자료는 정책입안자가 여성폭력 경험의 범위, 희생의 결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집되어야 한다.
-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수집이 다른 목적의 연구에 포함될 때에는, 폭력의 유효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문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특정 방법들은 최대한 면접관과 응답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 특정 조사와 정기적인 자료수집 모두를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자료수집을 위한 국가통계적 능력과 연구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 연구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6 세계보건기구 성폭력 조사에서의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서

세계보건기구는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라는 제목으로 성폭력 및 가정 폭력에 관련된 조사에서 윤리와 안전에 대한 지침을 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다음은 보고서에 나온 내용의 요약이다.

2.6.1 서론

여성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은 계층, 인종, 나이, 종교, 국적이란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역사회나 국가별로 고질적이다. UN의 선언문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폭력은 “공적이나 사적인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에게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이나 해를 끼쳤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어떤 행동적인 위협이나 강압, 임의적인 자유의 박탈을 포함하여, 성차별에 근거한 어떠한 행동들(UN, 1993)”이라고 말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식은 “가정 내 폭력” 또는 친분이 있는 파트너나 전에 알았던 사람으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 학대이다. 전통적이거나 관습에 관련되거나 특정 지역에 한정되는 형태의 폭력도 있다.

현재 가정 내 폭력을 포함한 여성 폭력에 반대하는 여성단체에 의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하여, 현재 국제적으로 이 문제가 상당한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가정 내 폭력이 계속적으로 인지되고 논의되면서, 다른 환경, 가정 폭력의 원인과 결과, 그리고 관련된 위험 요인에 대한 중요한 문제들이 고려되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개입변수의 효과성에 대해 더 나은 데이터를 얻고자 하는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지원으로부터 얻은 자료(Service-based data)에 대한 한계로 인하여, 가정 내 폭력이 만연한 정도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무작위로 추출된 여성의 대표 샘플에게 직접적으로 폭력의 경험에 물어보는 표본조사를 통해 얻어내야만 한다. 표본조사는 또한 동향을 파악하고 다양한 개입변수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폭력과 관계된 폭력의 결과와 위험 요소들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얻는데 사용될 수 있다.

반면에, 더 깊은 질적 연구는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과 환경, 학대의 역학, 그리고 어떻게 여성, 아동, 공동체가 이러한 폭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더 큰 시사점을 얻는 수단이다. 이와 같이, 남자에 대한 연구는 폭력의 원인, 다양한 형태의 개입변수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한다.

여성 폭력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윤리적이고 방법론적인 도전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유형의 주제는 안전, 비밀 유지, 면접관의 기술과 훈련 정도가 다른 분야의 연구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적절한 예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응답자와 연구팀 모두에게 신체적인 안전과 심리적인 안정에 위협이 가해질 수 있다는 사실은 과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분야의 미래 연구를 돕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는 지속적으로 가정 내 폭력 연구의 윤리적인 수행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 on Violence Against Women(이하 IRNVAW)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세계보건기구 Steering Committee, SERG, HRP 등 여러 연구가 승인을 받고 진행되었다. 가이드라인들은 또한 CIOMS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Ethical Review of Epidemiological Studies(1991)에 개요가 추가되었다.

이 권고사항들은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을 연구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런 연구를 시작하거나 검토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제작되었다. 그 가이드라인은 이 주제의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과 관련된 특정한 윤리적이고 안전에 관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은 가정 내 폭력 연구에 관한 연구 계획, 방법론, 연구에 관한 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일반적인 방향성이나 지시사항을 제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다. (일반적인 윤리 연구의 수행에 관한 이슈는 앞에 언급한 CIOMS에 제시되어 있다.)

이 권고사항들은 세계보건기구 다국적조사(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단체에서 준비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등장하였다. 권고사항들은 여성의 가정 내 폭력에 대한 표본조사의 수행과 관련된 윤리적이고 안전한 고려사항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규명된 많은 원리들은 또한 이 이슈에 대한 양적, 질적 연구의 다른 형태에도 적용

가능 하다.

권고사항들은 다투는 상황에서 폭력이나 여성의 인신매매와 같은 여성폭력의 연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아니다. 가이드라인은 몇몇 측면들은 그러한 상황들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지만, 아마도 다른 중요한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6.2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에 대한 연구

종종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은 표본조사로 조사하기에는 너무 민감한 주제라고 여겨지기도 한다. 그리고 수치심이나 자기비판이나 더 큰 폭력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주제에 대한 50개 이상의 사회기반조사(community-based studies)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라틴 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에서 성공적으로 수행 중이다. 그리고 많은 기구들이 대인 관계 사이의 폭력에 관한 정도, 본질, 심각성, 여러 형태의 빈번함에 대한 양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들은 여성의 가정 내 폭력에 대한 조사가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 연구들은 어떻게 적절한 환경에서 비심판적인 방식으로 인터뷰했을 때, 많은 여성들이 그들의 폭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가를 보여준다. 게다가, 많은 여성들이 폭력연구에 참여하는 것이 이롭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이런 긍정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에게 안전성과 비밀 보장을 충분히 인지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 존재한다. 여성에 대한 가정 내 폭력에 대한 모든 연구는 여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어떻게 모든 참가자를 보호하고 이 연구가 윤리적이고 적절히 민감한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다음은 연구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들을 서술하였다.

(1) 응답자와 연구팀의 안전은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모든 프로젝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안내되어야 한다.

가해자들로부터 잠재적인 보복성 폭력으로 응답자와 면접관의 신체적인 안전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만약 가정 내 폭력의 세대별 조사의 초점이 그 가정 내에서 또는 더 넓은 지역사회 사이에 알려지게 된다면, 가해자는 그 인터뷰의 주제에 대해 알게

될 것이다. 폭력을 당한 여성들에게 조사에 참여하는 단순한 행동이 나중의 폭력을 야기할 수 있고, 응답자나 인터뷰팀을 위협에 빠트릴 수 있다. 동시에, 그 연구의 피실험자이자 수혜자인 여성은 고지에 입각한 승낙을 완전히 해야만 한다. 따라서, 윤리적이고 안전상의 이유로 인해, 그 연구는 가정이나 더 넓은 지역사회에 폭력에 관한 조사라고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하다. 대신에, 이 단계에서 그 연구는 다른 방식으로 구조화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여성의 건강과 삶에 대한 연구). 그러나 그 여성 자신은 질문들의 본질에 대해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최초의 동의 과정에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한 민감도의 수준이 올라가야만 한다.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는 면접관은 질문의 본질에 대해 경고하고 응답자에게 인터뷰를 그만두거나 이러한 대답에 답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회를 주면서 신중하게 폭력에 관한 질문을 해야만 한다.

- 인터뷰는 비공개된 공간에서만 수행되어야 한다. 참가자는 자신이 더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느낄 때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장소를 옮기는 것에 자유로워야만 한다.
- 연구는 여성의 건강이나 삶의 경험, 또는 가족 관계에 대한 연구로써 표현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응답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안전하게 해줄 것이다. 이 설명은 또한 연구자나 면접관에게도 이 연구를 지역사회나 다른 가족들에게 똑같이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일단 응답자와 면접관이 혼자가 되면, 그 연구의 정확한 본질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제공되어야만 한다.
- 만약 표본 구성단위가 한 세대라면, 세대별 유일한 여자만이 가정 내 폭력 경험에 대하여 인터뷰되어야 한다. 만약 적절한 여성이 1명 이상인 세대의 경우, 인터뷰에는 무작위로 한명만 뽑아야 한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폭력에 관한 태도나 경험 여부를 탐색하는 식의 질문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중요한 응답자 역시 가정 내 폭력에 대해 질문을 받았는가에 대해 의심을 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세대별 조사의 전후 사정을 인터뷰할 때, 면접관들은 만약 인터뷰가 아이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 의해 방해되고 있다면 논의의 주제를 바꾸거나 멈출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한다. 월경주기, 가족계획 또는 아이 문제와 같은 여성의 건강과 관련된 덜 예민한 주제에 대한 간단한 질문지가 그런 문제를 발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면접관은 그리고 나서 응답자에게 인터뷰가 방해받고 있다면 그녀가 다른 주제에 대하여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알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주의를 돌

리기 위한 설문지로 돌아갈 수도 있다.

- 실행계획은 응답자의 안전에 대한 고려를 포함해야만 한다. 이것은 연구의 예산이 다른 인터뷰의 시간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가능성을 요구한다. 또한 여성이 간절히 원한다면 지역 건강센터와 같은 추가적인 장소를 구하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
- 실행계획과 예산안은 면접관의 안전 요구를 고려해야 한다.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면접관들은 짝을 이루어 다니거나,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운송수단이나 운전자를 필요로 하거나, 여성 혼자에게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알려준 동네에 가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남성의 에스코트를 원할 수도 있다. 이것은 면접관들이 저녁에 인터뷰를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

(2) 널리 알려진 연구들은 방법론적으로 온전해야 하고 어떻게 폭력의 과소보도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연구 경험을 공유해야만 한다.

여성에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은 폭력과 학대의 다양한 형태를 서류화 하는 표본조사의 빠른 수행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여러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연구에서 이러한 동향은 참가자에게 그들의 경험을 불충분하게 보도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의도였지만 충분히 개념화되지 않거나 수행되지 않은 연구는 폭력의 심각한 과소보도를 이끌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것은 윤리적이고 실질적인 염려를 일으킨다.

윤리적으로 연구의 주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불충분하게 계획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여성에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공개하도록 요청하거나 연구 주제의 본질이 여성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여성 폭력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현실적으로도 연구가 반대로 많은 증거가 있는 환경에서 발생한 가정 내 폭력을 낮은 수준으로 기록해야 할까 말까 고민이다. 질이 낮은 데이터는 데이터가 없는 것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낮은 출현률 측정은 잠재적으로 폭력의 중요성을 묻는 것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가정 내 폭력 조사는 방법론적으로 적절하고 어떻게 과소보도를 최소화 할 것인가에 대한 현재 연구 경험을 공유해야 한다.

현재의 연구는 노출의 비율이 질문이 만들어지고 질문하는 과정의 방식에 연결된다

는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질문들은 학대, 강간, 폭력과 같은 의미를 포함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대신에 응답자는 맞거나, 뺨을 맞거나 물린 것과 같은 특정 행동을 경험하였는지 여부를 대답한다. 학대의 여러 형태에 대해 다른 환경들(집, 일터, 학교 등)이나 잠재적인 가해자(현재 남편, 이전의 남편, 다른 관련 남성 등)에 대해 응답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특정한 단서에 따른 행동의 범위에 대해 묻는 것은 유용하다. 학대나 폭력에 대한 단순하고 폭넓은 질문들은 일반적으로 학대와 폭력의 진짜 발생률을 알아내는데 적절하지 않다. 노출의 정도 또한 인터뷰에서 응답자들이 받은 다른 질문들의 길이와 관련이 있다.

여성에게 폭력의 경험에 대해 말하는 정도 또한 면접관의 성별, 기술, 태도, 훈련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폭력은 남성에 의해 발생하므로 다른 여성과 함께 폭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것이 여성응답자가 가장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성인 여성은 그들의 경험에 대해 면접관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동정심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면 폭력에 관해 논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여러 상황에서 면접관으로 어리거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을 사용할 경우 또는 민감한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면접관을 사용할 경우 어려움이 많이 발생한다. 이것은 인터뷰가 신중하게 선택되고 적절한 훈련을 받은 여성 면접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연구 도구들을 미리 테스트 해보고 연구 수행의 질을 관리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폭력에 대한 연구가 잘 문서화되지 않거나 결과가 예측되지 않는 경우, 발견된 사항들은 이전에 널리 알려진 주요 정보원이나 다른 공동체 그룹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그룹들이 그 발견된 사항의 유효성을 질문하는 정보를 파악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의 염려는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3) 응답자 비밀이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방법과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응답자들에게 얻어진 대부분의 정보는 굉장히 사적일 것이다. 폭력적인 관계에서의 역동성은 너무나 강해서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폭력의 세부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폭력 사건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폭력을 당한 경험자들에게 행하였던 설문조사 또는 심층 면접의 정보들의 기밀성은 근본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얻어진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많은 종류의 방법이 있다.

- 면접관들은 기밀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엄격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는 그들의 교육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어야 한다.
- 설문지에는 어떤 이름도 쓰여 있어서는 안 된다. 대신 고유(식별)코드를 사용하며 설문조사를 구별한다. 응답자와 살고 있는 곳을 설문조사를 통해 연결시키고자 할 때에는 설문지와 반드시 따로 관리되어야 하며 조사 과정 후에는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심층 분석 단계에서 식별코드가 설문지를 구별하는데 쓰여야 한다. 참가자들은 과정에 있어서 기밀성이 유지되는 것이 인지되어야 한다.
- 폭력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심층 면접을 한 비디오 테이프들은 다른 사람의 접근을 막기 위해 잠금이 가능한 사물함에 보관되어야 하며 복사본은 모두 삭제되어야 한다. 비디오를 녹화하기 전에 응답자의 허락을 요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인터뷰를 녹화한 여성의 이름은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며, 해당 여성에게는 누가 테이프에 접근(권한)이 가능할 것이고 얼마의 기간 동안 소지할 것인지 알려야 한다.
- 프레젠테이션 동안에 수집된 연구 자료가 어떠한 공동체 또는 개인이 식별되지 못하도록 특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그리고 연구결과가 최종으로 발표되었을 때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의 신상을 절대로 밝혀지지 못하도록 변경하도록 한다.
- 집안의 폭력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폭력을 당한 여성들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이고 감정적인 방법이지만 이러한 형식의 자료를 사용하는 데에는 더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여성들께 명확히 사진을 찍어도 되고 보여줘도 되는지 물어봐야 하며 이러한 과정에 동의할 경우에 자료로 사용되는 것을 알려야 한다. 그들은 사진들이 어디서 어떻게 보여지거나 노출이 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4) 모든 면접관들은 신중히 선출되어야 하며, 특화된 교육과 꾸준한 후원을 받아야 한다.

IRNVAW 면접관들이 경험했던 여러 인내 교육 중에 하나는 모든 연구원들과 면접관들까지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는 연구를 했었고 특화된 교육과 다른 평범한 연구원들보다 더 향상된 후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교육은 가정 폭력에 대한 기초 입문 교육과 성차별에 대한 전체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은 연구자들에게 자신들의 편견, 두려움 그리고 폭력을 당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장치(방법)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많은 연구자들은 내부적

으로 “가해자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여성들을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믿고 정직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전체 사회에 이러한 문화를 스며들게 한다. 사실, 기록이 되어있는 폭력의 수치는 재판 공고에 매우 예민하거나 면접관들을 탓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 교육은 연구원 자신의 학대 경험을 인지할 수 있는 기회를 포함해야 한다. 세계적으로 여성에게 널리 행해지고 있는 폭력은 연구원이 직접적인 희생자 또는 비슷한 폭력에 대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면접관들의 기술 또는 공감을 향상 시킬 수 있지만 연구과정에 속해 있는 사람들 (면접관, 조연자, 자료 분석가 또는 통계분석가)의 이미지, 감정, 내부적인 혼란과 갈등을 깨울 수도 있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이나 가정에 긴장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연구원 스스로 폭력을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폭력과 학대 사례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연구와는 다르게 맥이 빠지거나 지나치게 이야기에 압도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이 직접적으로 직면되지 않는 한 연구원은 자기 자신에게 마찰을 경험할 확률이 크다는 결과를 많은 사례가 보여준다.

연구원들의 감정적인 요구사항을 표현하게끔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 교육 기간 동안 폭력에 대한 토의가 솔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연구원들이 특별한 손해 없이 프로젝트에서 빠질 수 있는 옵션이 주어져야 한다. 연구 동안에 정기적으로 단기 미팅이 이루어지면서 연구원들이 무엇을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미팅들은 연구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의 부정적인 결과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다. 면접관들은 또한 원한다면 연구 팀장과 사적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원들은 덜 감정적일 수 있는 업무만 부여해야 할 수도 있고 연구하며 휴식 기간이 필요하거나 연구 전체를 철회해야 할 수도 있다. 면접관들은 폭력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여성과의 관계에서의 자신들의 역할을 인지하는데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이 된다면 그녀에게 도움을 주는데 개방적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녀에게 어떤 행동을 하려 한다는 것을 얘기하거나 “그녀를 구하기” 위해 개인적인 짐을 지어서도 안된다. 면접관들은 상담사의 역할을 해

서는 안되며 상담이 요구되는 연구의 경우에는 정보 수집과는 분리되어 행해져야 한다.

(5) 연구 구조는 연구에 참여하며 생길 수 있는 모든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action)도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에 의해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정 폭력은 예민하고도 낙인이 찍힐 수 있는 문제이며, 여성들은 가끔 그들의 경험에 대하여 비난을 받는다. 폭력과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질문들은 항상 지지하고 편견을 가지지 않는 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설문조사에 나타난 언어는 평가 또는 비난의 어투로 해석될 수 있지 않도록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이 많은 여성들은 자신의 폭력 경험을 이야기 하며 그것이 도움이 되었다는 근거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는 두렵고 수치스럽거나 지나치게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심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면접관들은 질문들이 어떤 통보를 할 수 있고 여성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따른 최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어떤 여성들은 인터뷰 중에 매우 감정적일 수 있으나 진정된 후에는 계속 인터뷰에 응하기를 선택한다. 인터뷰 교육은 질문에 따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을 때 어떻게 중단할지에 대한 연습을 포함하여야 한다. 모든 인터뷰는 여성에게 협조해준 것을 강조하고 그녀가 공유한 정보는 매우 중요하고 다른 여성을 돕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재인식 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마쳐야 한다. 이와 같이 면접관들은 누구도 폭행을 당할 정당한 자격이 없고 응답자들에게 자신들의 법적인 권리를 알리는데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현장 종사자는 도움을 요청하는 여성들에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지원을 알려 줄 수 있도록 교육받아야 한다. 지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구를 위해 단기기간의 지원 방법을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

면접관이 인터뷰 진행 동안 혹은 그 후에 추가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해줄 적절한 대답을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연구가 시행되기 전, 연구자들은 건강, 법,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줄 수 있는 제공자를 만날 필요가 있다.

논의는 지원에 대한 동의를 얻고 지원의 형태를 규정하기 위해 진행되어야 한다. 그 후 지원목록은 작성되고 그들이 폭력을 당했는지를 밝힌 여부와는 상관없이 모든 응답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지원목록은 제공되는 정보의 특성이 가해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다른 서비스의 범위에 포함될 만큼 충분히 작아야 한다.

지원 서비스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숙련된 상담가나 여성옹호자가 함께 인터뷰팀에 동행하여 “필요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7) 연구자와 정보 제공자는 그들의 연구 결과가 적절하게 해석되었고 앞으로의 정책개발에 쓰일 것이라는 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

연구결과가 진행 중인 변호, 정책결정, 그리고 중재활동에 사용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종종 중요한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자의 관심사항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거대한 인적, 사회적, 건강관련 비용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가 실생활에 적용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만든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지역사회가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먼저 받는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연구프로젝트의 타당성을 개선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시민단체와 서비스단체를 연구의 주요 협력자로 혹은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런 위원회들은 연구설계를 안내하고, 설문지 문항의 단어사용을 조언하고, 면접관 교육을 보조하고 결과 해석과 분석에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연구결과를 적용하고 알리는 데 있어서 핵심역할을 수행한다.

연구자는 연구결과가 대중들과 미디어에 의해 적절히 해석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분석내용이 특정 폭력의 위험이 높은 하위집단을 강조했다 하더라도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를 나타낼 때 그 어떤 윤리적,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개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가지 전략은 여성폭력이 모든 지역사회와 사회경제적 집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하위그룹 간의 유사성을 강조하고 불균등의 특정 형태가 어떻게 차이가 기여하게 되었는지를 서술하는 것이다.

(8) 폭력에 관한 질문은 윤리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을 때 다른 목적의 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

점차, 연구자는 다른 목적을 위한 연구에 여성폭력에 관한 질문을 통합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 원칙적으로, 이 방법은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적합하지 않을 때 폭력

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폭력과 선상 문제와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 (예: 여성의 자살시도를 관찰한 연구에서 피해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나 경험은 전략과 같은 장단점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자료의 품질을 보장하고 응답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문제는 폭력에 초점을 맞춘 연구에 비해 더 자주 발생한다. 폭력을 밝히는 비율은 다양한 요소(인터뷰의 길이, 질문의 종류와 수, 면접관과 응답자 사이의 관계)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슈에 관련 없는 긴 질문들에 첨가된 몇 개의 폭력관련 질문들은 여성이 폭력을 밝히려는 의지를 감소시키고, 그 결과 발생률 추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다른 연구에 폭력에 관한 질문을 통합하는 것은 주된 연구팀이 기본적인 윤리적, 방법론적 지침을 제시할 수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여성에게 그들이 당한 성폭력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덜 개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성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폭력에 대해 광범위하게 물어볼수록, 지원과 사생활보호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여성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한다.

현재 가정폭력은 매우 주목 받음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폭력에 관한 조사가 증가하고 있다. 이 문서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연구 시 설명되어야 할 윤리적 안전의식에 대한 현재의 지식을 반영해야 한다고 권장한다. 이 연구주제의 특별한 사항은 안전에 대한 고려가 연구의 초기단계에서 형성 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즉, 폭력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이슈들이 충분히 설명되기 위해서는 기나긴 시간과 막대한 자본의 투자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제공자와 연구자는 이러한 지침서에 따라 여성안전에 대해 비슷하게 기여할 수 있고, 여성의 복지를 넘는 연구는 하지 않는다.

제 3 장 전국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 표본설계

3.1 조사개요

3.1.1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은 우리나라의 성폭력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전국 가구조사를 통하여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폭력 행위를 ‘강간 및 강간미수’, ‘심한 추행’, ‘가벼운 추행’, ‘비접촉성 성희롱’, ‘성기노출’, ‘음란전화’, ‘스토킹’, ‘부부강간’의 여덟 가지 유형별 성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조사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의 사후조치로 경찰신고, 상담소 및 의료기관 이용,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와 성폭력 관련법에 대한 태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성폭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의식과 태도를 조사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의 성의식 전반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0년에 실시되었던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설문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성폭력 피해·가해 경험여부 및 피해대응, 가해요인, 피해 후 유증, 성폭력 관련 법 인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표 9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내용

구분	조사내용
가구의 일반적 특성	·가구특성 : 가구원, 결혼상태, 가구 소득 ·가구원특성 :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여부, 취업여부 등
개인적 특성	·사회적 관계 정도 ·성통념 ·정신건강 ·범죄피해의 두려움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 ·음란물 이용 경험
성폭력 피해 관련 사항	·피해경험 : 평생경험, 지난 1년간 경험, 가해자유형, 음주여부 등 ·피해영향 : 신체·정신적 상해 여부 및 치료여부, 일상·성생활 변화 ·도움요청 및 지원체계이용경험 ·가족구성원의 성폭력 피해경험
성폭력 가해 관련 사항	·가해경험 : 평생경험, 지난 1년간 경험, 피해자유형, 음주여부 등
성폭력 관련 인식	·성폭력 인식 및 허용도 ·성폭력 관련법 인식 ·성폭력 예방방안 및 성폭력 관련법 홍보방법 ·성폭력 관련 지원체계 인식 및 욕구정도

3.1.2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우리나라의 가정폭력 실태의 파악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사의 조사대상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전체이다.

이 조사의 조사표는 가구 공통 조사표, 기혼자 조사표, 미혼자 조사표, 노인 조사표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가구 조사는 생애주기적 관점을 토대로 아동·청소년기-성인-노년기로 이어지는 다양한 대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사대상의 모든 가구에 대하여 수행되는 가구 공통조사의 주요 내용은 크게 일반적 사항, 개인적 특성, 가족(부부)관계, 가정폭력(부부폭력)실태 및 대응, 가정폭력관련법 인식, 서비스 욕구 등으로 분류된다. 가구 공통 조사표와 함께 가구조사에서 활용되는 조사표는 두 종류인데, 기혼자 조사표, 미혼자 조사표로 이루어져 있다. 두 조사표에는 공통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성장기 학대 경험을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기혼자 조사표에는 부부폭력과 자녀학대가 동시에 파악되도록 구조화하였다. 조사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기혼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기혼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현재의 결혼상태 및 결혼년도의 일반적 특성, 부모-자녀관계, 부부폭력 실태 등 3개 부분으로 분류된다. 또한 조사대상자 중 만 19세 이상 64세 미만 미혼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미혼자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가족관계와 가정폭력 실태 등 2개 부분으로 분류된다. 노인조사표는 조사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수행되는데, 이 조사표의 주요 내용은 노인의 경제 및 건강 상태, 노인학대 실태 부분으로 구분된다(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조사대상, 조사내용 및 방법, 표본설계 등의 측면에서 대단히 유사하다. 표본설계 측면에서 보면 두 조사의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등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대상 측면에서 보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이고 만 65세 미만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반면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두 조사는 모두 만 19

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표본가구 내 구성원 중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따라 적격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두 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를 1차추출단위로 하고, 표본 조사구 내에서 표본가구를 선정하여 가구 내 조사 적격자 중에서 한 명을 랜덤추출하여 조사하는 방식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두 조사는 동일한 표본추출틀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층화 및 표본배분, 가중치 작성, 추정방법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다.

본 연구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조사에 대해서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분석, 층화, 가중치 작성 및 추정법 등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설명하고,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표본가구내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등은 두 조사에 대해서 각각 제시한다.

3.2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3.2.1. 조사대상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개념상 규정된 목표모집단(target population)은 조사시점 현재 대한민국 내 모든 가구의 만 19세 이상(또는 만 19세-64세) 전체 국민이다. 조사모집단(survey population)은 조사의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상의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 및 일반조사구 내 가구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다.

표본설계에서 사용한 표본추출틀(sampling frame)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이다.

추출된 표본조사구에서 조사대상으로 삼은 '가구'는 통계청의 가구 정의(2010 인구센서스 지침서 참조)에 따라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로 규정하고,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의 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구이다.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에 제외되는 집단가구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다.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 집단시설 가구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 외국인가구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참고로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가구(다문화가정 등)는 '일반가구'에 해당되며,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하나의 주택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지만 독립가구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가구로 간주하였다.

3.2.2. 모집단 현황 :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분석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를 위해서는 표본조사구 추출을 위한 추출틀로 활용하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표 10>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조사모집단 현황이다. 전체 모집단 조사구는 303,178개이고, 일반가구는 17,339,422호이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 조사구의 22.0%와 20.1%를 차지하고, 가구 수의 22.2%와 20.3%를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행정 구역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의 구성비는 유사하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 인구 현황을 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의 22.7%와 20.8%를 차지하고 있다. 만 19세-64세의 성인 인구의 경우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전체의 23.4%와 21.4%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조사구 수, 가구 수, 만 19세 이상 인구, 만 19세-64세 인구 등의 지역별 구성비는 대체로 유사하다.

표 10 모집단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시도	조사구 수	열	가구 수	열	인구 분포			
					19세 이상	열	19-64세	열
전국	303,178	100.0%	17,339,422	100.0%	37,442,553	100.0%	32,017,886	100.0%
서울	60,925	20.1%	3,504,297	20.3%	7,774,621	20.8%	6,845,665	21.4%
부산	21,716	7.2%	1,243,880	7.2%	2,738,639	7.3%	2,341,509	7.3%
대구	15,211	5.0%	868,327	5.0%	1,894,195	5.1%	1,642,679	5.1%
인천	15,176	5.0%	918,850	5.3%	2,033,861	5.4%	1,801,662	5.6%
광주	9,010	3.0%	515,855	3.0%	1,100,121	2.9%	966,984	3.0%
대전	8,957	3.0%	532,643	3.1%	1,140,885	3.0%	1,009,870	3.2%
울산	6,519	2.2%	373,633	2.2%	807,571	2.2%	732,458	2.3%
경기	66,577	22.0%	3,831,134	22.2%	8,503,220	22.7%	7,504,653	23.4%
강원	10,179	3.4%	557,751	3.2%	1,154,218	3.1%	927,807	2.9%
충북	10,059	3.3%	558,796	3.2%	1,161,890	3.1%	953,931	3.0%
충남	13,560	4.5%	749,035	4.3%	1,559,710	4.2%	1,249,229	3.9%
전북	11,811	3.9%	659,946	3.8%	1,371,207	3.7%	1,081,623	3.4%
전남	11,618	3.8%	681,431	3.7%	1,355,835	3.6%	1,002,875	3.1%
경북	18,247	6.0%	1,005,349	5.8%	2,049,950	5.5%	1,619,467	5.1%
경남	20,336	6.7%	1,151,172	6.6%	2,401,738	6.4%	2,010,390	6.3%
제주	3,277	1.1%	187,323	1.1%	394,892	1.1%	327,084	1.0%

<표 11>와 <표 12>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인구와 가구 부문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동·읍·면별 가구당 평균 만 19세 이상 및 만 19-64세 인구 현황이다. 만 19세 이상 인구의 약 82%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약 18%는 면 또는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 동 지역에서는 가구당 2.17명, 읍 지역은 2.12명, 면 지역은 2.07명이다.

만 19세-64세 인구는 약 84%가 동 지역에 거주하고, 약 16%는 면 또는 읍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당 평균 만 19세-64세 이상 인구 현황을 보면 동 지역에서는 가구당 1.92명, 읍 지역은 1.74명, 면 지역은 1.39명이다.

표 11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만 19세 이상)

지역	19세 이상 인구		총 가구 수		가구당 평균 만 19세 성인 수
	인구	열%	가구	열%	
동 지역	30,516,234	81.5%	14,031,069	80.9%	2.17
읍 지역	3,152,490	8.4%	1,487,490	8.6%	2.12
면 지역	3,773,829	10.1%	1,820,863	10.5%	2.07
전체	37,442,553	100.0%	17,339,422	100.0%	2.16

표 12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만 19세-64세)

지역	만19-64세 인구		총 가구 수		가구당 평균 만19-64세 성인 수
	인구	열%	가구	열%	
동 지역	26,897,947	84.0%	14,031,069	80.9%	1.92
읍 지역	2,592,834	8.1%	1,487,490	8.6%	1.74
면 지역	2,527,105	7.9%	1,820,863	10.5%	1.39
전체	32,017,886	100.0%	17,339,422	100.0%	1.85

3.3 층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설계에서는 8개 특별·광역시와 9개 도 지역으로 1차로 층화하고, 9개 도 지역에 대해서는 동부와 읍·면부로 세부 층화한다. 이 조사의 1차추출단위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와 가구 내 만 19세 이상 또는 만 19-64세 가구원이다. 1차추출단위인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대개 60~70여 가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층화는 1차추출단위인 조사구의 특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우는 전체 인구 규모와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각각 4개 권역(북동, 남동, 남서, 북서)과 3개 권역(북부, 중부, 남부)으로 세부 층화하였다. <표 13>과 <표 14>은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의 권역별 구분 현황이다.

표 13 서울시 권역별 해당 구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서부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북동부	노원구, 성북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남서부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동작구
남동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표 14 경기도 권역별 해당 시군 현황

권역	해당 지역
북부	하남시, 광주시, 가평군, 여주군, 남양주시, 양평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양주시
중부	부천시, 고양시, 성남시, 광명시, 의왕시, 안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의정부시
남부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시흥시, 안산시, 평택시, 화성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대상으로 하는 층화는 행정구역에 따라 구성한 32개 1차 층을 구성하였다. <표 15>는 표본설계의 층화 방법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과 <표 17>은 각각 층별 조사구 수와 가구 수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동 지역에 대해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 조사구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은 조사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광역시 중 읍·면 지역이 있는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에 대해서는 읍·면부에 속한 가구 비율이 낮기 때문에 따로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하여 층화하지 않았다.

표 15 층화 방법

구분	지역	층화	층 수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서울, 6대 광역시	서울(4개 권역), 광역시(6)	10
	도 지역	11개 지역(동부)	11
		11개 도 지역(읍면부)	11

표 16 세부 층별 모집단 조사구 현황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		
전국	118,765	127,393	57,020	303,178
서울-북서	2,886	7,930	0	10,816
서울-북동	7,673	11,437	0	19,110
서울-남서	6,592	12,083	0	18,675
서울-남동	5,995	6,329	0	12,324
부산	9,953	11,763	0	21,716
대구	7,285	7,926	0	15,211
인천	7,663	7,513	0	15,176
광주	5,357	3,653	0	9,010
대전	4,656	4,301	0	8,957
울산	3,284	3,235	0	6,519
경기-북부	1,885	966	6,459	9,310
경기-중부	16,618	15,404	1,259	33,281
경기-남부	10,824	9,080	4,082	23,986
강원	3,301	2,816	4,062	10,179
충북	3,173	2,754	4,132	10,059
충남	2,904	2,082	8,574	13,560
전북	4,598	3,267	3,946	11,811
전남	2,929	2,006	6,683	11,618
경북	4,318	4,864	9,065	18,247
경남	6,281	6,193	7,862	20,336
제주	590	1,791	896	3,277

표 17 세부 층별 모집단 가구 현황(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		
전국	7,134,955	7,065,152	3,076,158	17,276,265
서울-북서	165,641	433,052	0	598,693
서울-북동	467,851	641,690	0	1,109,541
서울-남서	400,646	678,099	0	1,078,745
서울-남동	362,662	354,148	0	716,810
부산	593,814	648,947	0	1,242,761
대구	435,657	432,602	0	868,259
인천	459,545	450,659	0	910,204
광주	326,011	189,788	0	515,799
대전	280,756	251,839	0	532,595
울산	194,293	179,323	0	373,616
경기-북부	111,743	50,220	353,797	515,760
경기-중부	1,011,724	854,659	69,680	1,936,063
경기_남부	654,498	495,928	228,369	1,378,795
강원	193,491	152,777	211,367	557,635
충북	189,510	148,712	220,448	558,670
충남	170,706	116,735	460,135	747,576
전북	276,247	173,736	208,584	658,567
전남	175,719	109,392	353,206	638,317
경북	253,172	262,191	489,796	1,005,159
경남	375,768	338,864	432,453	1,147,085
제주	35,501	101,791	48,323	185,615

3.4 표본크기 결정 및 표본배분

3.4.1 표본크기 및 목표오차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약 3,500명이다. 이 조사의 표본크기는 가용 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고려하고, 작성되는 통계의 표본오차 수준을 검토하여 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350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만 19세-64세 가구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표본가구 내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는 랜덤추출이 아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추출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추출방법을 적용한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약 5,000명이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표본크기는 앞선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표본크기 결정과 마찬가지로 가용예산과 조사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고, 특히 기혼자, 미혼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독립적인 통계표가 작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표본크기에 비해서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에서 500개 표본 조사구를 추출하고, 각 표본 조사구로부터 10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하여 표본가구 내만 19세 이상 가구원 중 한 명을 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하였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를 1차추출단위로 하는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집락내상관계수 (intra-cluster correlation coefficient)는 대개 0.03-0.05 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에 대한 설계효과(design effect)¹⁾는 1.27-1.45 사이의 값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이 값을 기초로 계산된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약 2.0%p 이내이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모비율 추정에 대한 95% 신뢰수준의 최대 허용오차 한계는 약 1.7%p 이내로 예상된다.

3.4.2 표본배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표본설계의 중요한 목표

1) $deff = 1 + (\bar{m} - 1)\hat{\rho}$, $\bar{m} = 10$, $\hat{\rho} = 0.03, 0.04, 0.05$

는 통계공표 단위별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실태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도 (precision)를 갖는 통계를 생산하는 데 있다. 이 조사의 주요 통계공표 단위는 성별 및 연령대 구분, 지역별 구분 등이다. 표본배분 단계에서는 시도별 통계작성의 정확성을 검토하여 최종 표본배분법을 결정한다.

먼저 1차 층인 각 시도에 대한 표본배분은 층 내 가구 수를 기준으로 비례배분법, 제공근 비례배분법, 우선할당 비례배분법 등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N_h}{\sum_{k=1}^H N_k}$, 단, N_h 는 층 h 의 모집단 가구 수
- 제공근 비례배분법 : $n_h = n \times \frac{\sqrt{N_h}}{\sum_{k=1}^H \sqrt{N_k}}$
- 우선할당 비례배분법 : 각 층에 n' 개 표본을 우선 배분한 후, 남은 표본크기 $(n - n' \times H)$ 는 층별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먼저 비례배분법은 정해진 전체 표본크기를 해당 층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이다. 비례배분법은 전체 통계작성에는 유리하지만 가구 수가 적은 시도에서 표본이 적게 배분된다. 제공근 비례배분법은 각 지역의 가구 수의 제공근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이다. 우선할당 비례배분법은 먼저 각 1차 지역 층에 10개의 표본 조사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표본은 각 시도의 가구 수에 비례하여 배분한 것이다. 제공근 배분법은 규모가 작은 시도 층에 비례배분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표본이 배정된다. 우선할당 비례배분법도 제공근 배분법과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표본배분

<표 18>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각 시도별 모집단 가구 수와 표본배분 방안별 표본 조사구 수 현황이다. 제공근 배분법이나 우선할당 비례배분법은 상대적으로 도 지역에 더 많은 표본이 배분되게 되어 지역별 추정에 유리하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1차 층인 각 시도별 조사구의 표본배분은 각 시도의 가구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성폭력의 발생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통계조사와 달

리 지역별 추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각 시도에서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가구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표 19> 참고).

표 18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행정구역	모집단 가구 수	비례배분	제공된 비례배분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전국	17,276,265	350	350	350
서울	3,503,789	71	43	48
부산	1,242,761	25	25	24
대구	868,259	18	21	20
인천	910,204	18	22	20
광주	515,799	11	16	16
대전	532,595	11	17	16
울산	373,616	8	14	14
경기	3,830,618	76	45	52
강원	557,635	11	17	16
충북	558,670	11	17	16
충남	747,576	15	20	18
전북	658,567	13	18	17
전남	638,317	13	18	17
경북	1,005,159	20	23	21
경남	1,147,085	23	24	23
제주	185,615	6	10	12

표 19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 국	145	143	62	350
서울-북서	3	9	0	12
서울-북동	9	13	0	22
서울-남서	8	14	0	22
서울-남동	8	7	0	15
부산	12	13	0	25
대구	9	9	0	18
인천	9	9	0	18
광주	7	4	0	11
대전	6	5	0	11
울산	4	4	0	8
경기-북부	2	2	7	11
경기-중부	20	16	2	38
경기-남부	13	10	4	27
강원	4	3	4	11
충북	4	3	4	11
충남	3	2	9	14
전북	5	3	4	12
전남	4	3	7	14
경북	5	5	10	20
경남	8	7	9	24
제주	2	2	2	6

(2)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표본배분

<표 20>는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위한 각 표본배분 방안별 표본 조사구 수 현황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표본설계에서는 1차 층인 각 시도별 조사구의 표본배분은 각 시도의 가구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제곱근에 비례하는 제곱근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 각 시도에서 세부 층별 표본배분은 가구 수(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비례하는 비례배분법을 적용하였다(<표 20> 참고).

표 20 각 시도별 표본배분 현황: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행정구역	모집단 가구 수	비례배분	제공근 비례배분	우선 할당 후 비례배분
전국	17,276,265	500	500	500
서울	3,503,789	101	61	79
부산	1,242,761	36	36	34
대구	868,259	25	30	27
인천	910,204	26	31	28
광주	515,799	15	23	20
대전	532,595	15	24	20
울산	373,616	11	20	17
경기	3,830,618	111	64	85
강원	557,635	16	24	21
충북	558,670	16	24	21
충남	747,576	22	28	25
전북	658,567	19	27	23
전남	638,317	19	26	23
경북	1,005,159	29	33	30
경남	1,147,085	33	35	33
제주	185,615	6	14	14

표 21 세부 층별 표본 조사구 현황: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행정구역	동 지역		읍면 지역	합계
	아파트 조사구	일반 조사구		
전국	208	202	90	500
서울-북서	5	12	0	17
서울-북동	13	19	0	32
서울-남서	12	19	0	31
서울-남동	11	10	0	21
부산	17	19	0	36
대구	13	12	0	25
인천	13	13	0	26
광주	9	6	0	15
대전	8	7	0	15
울산	6	5	0	11
경기-북부	4	2	9	15
경기-중부	29	24	3	56
경기-남부	19	14	7	40
강원	6	4	6	16
충북	5	4	6	15
충남	5	3	14	22
전북	8	5	6	19
전남	5	4	11	20
경북	7	8	14	29
경남	11	10	12	33
제주	2	2	2	6

3.5 표본추출 및 표본대체

이 조사를 위한 표본설계에서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이다. 1차 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는 조사구 내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 (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ystematic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32개의 각 층에서 조사구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과 행정구역 번호를 각각 1, 2차 정렬변수로 하여 정렬한 후 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 이를 통해 추출된 표본이 해당 층의 조사구 특성(아파트 조사구, 일반조사구)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지리적으로도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계통추출법을 적용할 때 추출단위를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한 후 추출하면 모집

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표본으로 추출된 조사구에서는 10가구를 계통추출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표본조사 대상가구 선정 방법은 표본조사구의 요도와 가구명부에서 10가구를 계통추출법으로 선정하고 순서대로 방문하여 적격 조사대상 가구를 조사한다.

추출된 표본조사구가 조사시점 차이로 인하여 표본조사구 전체가 유고(재건축, 재개발, 기타사유 등)로 인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거나 특성이 변경(예: 주택에서 상가지역으로 개발된 경우)되었을 경우에는 표본추출 당시 분류지표가 동일한 지역의 조사구로 대체하도록 한다.

표본 가구와의 접촉을 위한 방문 횟수는 최대 4회로 하며, 요일/시간대를 달리하여 방문하도록 한다. 또한 면접원은 매회 방문할 때 <가구방문기록표> 양식에 준해 해당 가구와의 접촉 상황을 기록하였다. 4회 방문시에도 조사대상가구/조사대상자와의 면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를 기록하고, 가구명부를 기준으로 정해진 접촉 순서에 따라 인접한 대체조사 가구를 선정하여 다시 접촉/방문을 시도한다.

3.6 표본가구 내 대상자 선정

조사대상 측면에서 보면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고, 반면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조사대상은 만 19세 이상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두 조사는 표본가구 내 구성원 중 응답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사에 따라 적격자 선정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만 19세-64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되, 성폭력 피해의 가능성이 높은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 여성 응답자의 추출확률을 높이기 위해 표본가구 내 응답자 선정과정에서 (여성, 여성, 남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였다. 여성의 추출확률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여성, 여성, 남성) 등의 순서로 응답자를 선정할 수도 있다.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응답자 선정 과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과표집(oversampling)을 고려하지 않았다. 필요하다면 표본가구 내 응답자 선정과정에서

(여성, 여성, 남성)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여성의 추출확률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최종 조사대상자 선정을 위해서 가구 방문 후 '가구원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가구에 적격자가 있는 지 확인하고, 적격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최근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조사시점과 가장 근접한 생일자로 최종 조사대상자로 선정한다. 최종 조사대상 가구원이 부재 중일 때는 해당 가구원과 면접 가능한 요일/시간대를 확인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한다.

3.7 가중치 산정

3.7.1 가중치 산정 개요

통계조사에서 가중치 부여는 표본추출에 따른 추출률의 차이와 응답률 및 모집단에 대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맞추므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정단계에서 가중치를 이용하면 모집단에 대한 특성치인 모수에 대한 비편향 추정량(unbiased estimator)을 얻을 수 있다. 만약 통계 분석 과정에서 가중치를 무시하고 분석한 추정치는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다. 표본의 크기가 큰 대규모 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추정량의 편향이기 때문에 추정과정에서 반드시 가중치를 이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표본조사의 가중치는 ㉠ 설계가중치 산정, ㉡ 무응답에 대한 조정, ㉢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산정된다. 가중치 조정단계에서 이용하는 모집단 정보는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표본설계에서는 각 시·도 구분과 도 지역 내의 동 및 읍·면 구분을 이용한 세부 층화를 통해서 전체 32개 층을 구성하였다. 표본추출은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하였는데, 1차추출단위는 조사구이고, 2차추출단위는 가구 및 만 15세 이상 가구원이다. 각 층에서 배정된 표본 조사구 수만큼을 조사구 내의 가구 수에 비례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일법에 의해서 한 명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계가중치는 표본추출 과정에서 층화2단확률비례계통추출법을 적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조사구 내의 가구별 추출확률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한다.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사용될 기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L : 층의 수
- N_h : 층 h 의 모집단 조사구 수
- n_h : 층 h 의 표본 조사구 수
- S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에 대한 크기의 측도(해당 조사구의 총 가구 수)
- $S_h = \sum_{i=1}^{N_h} S_{hi}$: 층 h 에서 크기의 측도에 대한 총합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가구 수(조사완료+조사미완+조사미착수)
- m_{hi} : 층 h 의 i 번째 조사구 내 조사착수 가구 수(응답+거절)
- r_{hi} : 층 h 의 i 번째 표본조사구 내 조사완료 가구 수(응답)

3.7.2 조사구 조사에 대한 가중치 작성

(1) 설계가중치

이 조사의 설계가중치는 각 표본조사구에 대한 표본추출률의 역수와 표본조사구에서 가구조사 착수율의 역수를 곱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bullet \text{ 설계가중치} = \frac{S_h}{n_h S_{hi}} \times \frac{M_{hi}}{m_{hi}}$$

원칙적으로 각 표본 조사구에서는 10가구씩을 표본으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m_{hi} = 10$ 이다. $S_{hi} \approx M_{hi}$ 를 가정할 수 있는 경우(표본추출률 상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작은 경우) 각 층에서 설계가중치는 해당 층 내에서 일정한 값이 되어 설계가중치 = $\frac{S_h}{n_h \times 10}$ 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역 내 층에서 표본 가구들은 모두 동일한 설계가중치를 갖게 된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는 표본추출률의 조사구 내 가구 수와 실제 가구 수에 차이가 있

어 각 층 내에서 설계가중치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값을 갖게 된다.

(2) 무응답 조정

해당 지역 내 세부 층에서 조사 가구에 대한 설계가중치는 원칙적으로 같다. 본 조사에서 무응답 조정은 표본 조사구 단위로 진행되었다. 무응답 조정계수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 무응답 조정계수 = $\frac{m_{hi}}{r_{hi}}$

(3) 표본 가구 내 추출률 반영

이 조사의 표본가구로 선정된 경우에 적격 가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근 생일자법'에 의거하여 조사시점과 가장 근접하게 생일인 사람을 최종 적격자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표본 가구 내의 조사 적격자가 몇 명인가에 따라 추출률에 차이가 발생한다. 표본 가구의 적격자 추출률은 다음과 같다.

- 가구 내 추출률 = $\frac{1}{\text{표본 가구의 적격 가구원 수}}$

앞서 구한 가구 내 추출률의 역수를 설계가중치에 곱하여 가구 내 추출률 차이를 가중치 작성 과정에 반영한다.

(4)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한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가중치 조정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구조와 표본 구조를 유사하게 맞추므로써 추정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가중치 작성 단계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대해서 레이킹 비 접근법(Raking Ratio Method)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집단에 대한 정보는 2010년 11월 기준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시·도별(16)×성별(2) 구분과 지역(동부, 읍·면부)×연령대(7)×성별(2) 구분에 대한 만 19세 이상 인구(또는 만 19-64세

인구) 현황이다.

<표 22>과 <표 23>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각각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단계에 사용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도별(16)×성별(2) 구분과 지역(동부, 읍·면부)×연령대(7)×성별(2) 구분에 대한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이다. 다만, 연령대를 세분할 것인가는 최종 조사데이터의 성 및 연령별 분포를 살펴서 최종 결정된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표 24>와 <표 25>는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의 각각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단계에 사용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도별(16)×성별(2) 구분과 지역(동부, 읍·면부)×연령대(7)×성별(2) 구분에 대한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이다. 다만, 연령대를 세분할 것인가는 최종 조사데이터의 성 및 연령별 분포를 살펴서 최종 결정된다. 최종 가중치는 다음 식에 따라 산정되었다.

- 최종 가중치=설계가중치×무응답 조정계수×(1/가구내추출률)×모집단 정보 조정계수

표 22 시도 및 성별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

행정구역	남자	여자	합계
전국	18,334,387	19,108,166	37,442,553
서울	3,761,879	4,012,742	7,774,621
부산	1,319,183	1,419,456	2,738,639
대구	917,847	976,348	1,894,195
인천	1,005,536	1,028,325	2,033,861
광주	533,544	566,577	1,100,121
대전	562,536	578,349	1,140,885
울산	409,872	397,699	807,571
경기	4,205,557	4,297,663	8,503,220
강원	573,352	580,866	1,154,218
충북	573,772	588,118	1,161,890
충남	778,467	781,243	1,559,710
전북	662,301	708,906	1,371,207
전남	652,331	703,504	1,355,835
경북	1,002,748	1,047,202	2,049,950
경남	1,183,755	1,217,983	2,401,738
제주	191,707	203,185	394,892

표 23 동·읍면 구분, 성 및 연령별 만 19세 이상 인구 현황

행정구역		남자	여자	합계
동부	19-29세	3,236,133	3,060,092	6,296,225
	30-39세	3,321,902	3,328,884	6,650,786
	40-49세	3,439,730	3,495,193	6,934,923
	50-59세	2,636,236	2,704,158	5,340,394
	60-69세	1,425,857	1,557,203	2,983,060
	70세 이상	880,264	1,430,582	2,310,846
읍면부	19-29세	552,191	423,132	975,323
	30-39세	604,728	538,981	1,143,709
	40-49세	676,342	593,516	1,269,858
	50-59세	612,484	611,948	1,224,432
	60-69세	464,420	546,924	1,011,344
	70세 이상	484,100	817,553	1,301,653

표 24 시도 및 성별 만 19-64세 인구 현황

행정구역	남자	여자	합계
전국	16,136,781	15,881,105	32,017,886
서울	3,359,061	3,486,604	6,845,665
부산	1,154,562	1,186,947	2,341,509
대구	816,373	826,306	1,642,679
인천	912,211	889,451	1,801,662
광주	479,300	487,684	966,984
대전	508,844	501,026	1,009,870
울산	379,819	352,639	732,458
경기	3,796,847	3,707,806	7,504,653
강원	481,109	446,698	927,807
충북	490,676	463,255	953,931
충남	653,369	595,860	1,249,229
전북	549,343	532,280	1,081,623
전남	517,879	484,996	1,002,875
경북	835,108	784,359	1,619,467
경남	1,036,084	974,306	2,010,390
제주	166,196	160,888	327,084

표 25 동·읍면 구분, 성 및 연령별 만 19-64세 인구 현황

행정구역		남자	여자	합계
동부	19-29세	3,236,133	3,060,092	6,296,225
	30-39세	3,321,902	3,328,884	6,650,786
	40-49세	3,439,730	3,495,193	6,934,923
	50-59세	2,636,236	2,704,158	5,340,394
	60-64세	813,834	861,785	1,675,619
읍면부	19-29세	552,191	423,132	975,323
	30-39세	604,728	538,981	1,143,709
	40-49세	676,342	593,516	1,269,858
	50-59세	612,484	611,948	1,224,432
	60-64세	243,201	263,416	506,617

(5) 극단 가중치 조정

일반적으로 가중치의 과도한 변동은 추정량의 분산을 크게 만들어 추정의 정확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몇 개의 과도하게 큰 가중치를 갖는 조사값이 잘 설계되고 수행된 통계조사에서 얻어지는 조사의 정확성을 낮추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는 지나치게 큰 가중치를 표본설계가 끝난 후 사후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하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가중치 작성 과정에서 무응답 조정,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등과 같은 가중치 작성 단계별로 지나치게 큰 조정값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나치게 큰 가중치의 경우에는 절단(trimming)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이다.

둘째, 가중치 작성의 전체 과정을 마친 후에 과도하게 큰 가중치를 찾아서 절단(trimming)하고, 절단으로 인하여 부족해진 가중치를 보충하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이다.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특이 가중치 조정은 두

번째 방안을 사용되었는데, 전체 응답자의 가중치 분포를 고려하여 상·하위 1%씩을 특이 가중치로 간주하여 조정한다.

3.8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

3.8.1 추정량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와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주요 추정대상은 모평균이나 모비율이다. 모비율 추정 및 추정량의 분산은 모평균 추정방법과 동일하다. 다만, 모비율 추정의 경우 조사변수 값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1 또는 0의 값을 갖는다는 점이 차이이다. 본 조사에서 각종 모평균 추정을 위해서 사용된 가중치를 이용한 추정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ullet \quad \bar{y}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 \frac{\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y_{hij}}{w_{\dots}}$$

여기서, w_{hij} 는 각 응답자에 부여된 가중치이고, y_{hij} 는 각 응답결과로 모비율 추정의 경우는 특정 속성을 갖고 있는 경우는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다.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 표본추출단위인 표본 조사구의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 조사구의 응답자 수이다. $w_{\dots} = \sum_{h=1}^L \sum_{i=1}^{n_h} \sum_{j=1}^{m_{hi}} w_{hij}$ 은 전체 응답자에 대한 가중치의 합계이다.

3.8.2 추정량의 분산

앞서 제시한 모평균 추정량에 대해서 층화와 2단 집락추출 등의 표본설계를 반영한 추정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bullet \quad \text{var}(\bar{y}) = \sum_{h=1}^L \frac{n_h(1-f_h)}{n_h-1} \sum_{i=1}^{n_h} (e_{hi} - \bar{e}_{h..})^2$$

여기서, L 은 층의 수, n_h 는 층 h 에서의 1차추출단위(PSU)인 조사구 수, m_{hi} 는 층 h 내 i 번째 표본조사구의 응답자 수, $f_h = n_h/N_h$, $e_{hi} = \left(\sum_{j=1}^{m_{hi}} w_{hij} (y_{hij} - \bar{y}) \right) / w_{\dots}$,

$$\bar{e}_{h..} = \left(\sum_{i=1}^{n_h} e_{hi.} \right) / n_h \text{ 이다.}$$

모평균 및 모비율 추정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상대표준오차(relative standard error), 95% 신뢰수준 오차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 $s.e(\bar{y}) = \sqrt{var(\bar{y})}$,
- $rse(\bar{y}) = \frac{s.e(\bar{y})}{\bar{y}} \times 100(\%)$,
- 오차의 한계 = $1.96 \times \sqrt{var(\bar{y})}$

3.9 조사방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한 분석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에 대하여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과 중요한 사안(issue)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사안 1: 발생빈도가 낮은 행위를 조사하는데 대규모의 유효표본이 필요하므로 가정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실태조사를 통합하여 하나의 조사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사실상 발생빈도가 낮은 흔하지 않은 사건(rare event)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의 개선 의견으로 성폭력실태조사를 가정폭력실태조사로 통합하여 표본수를 늘리고 성폭력에 대한 설문을 부가적으로 첨사하는 형태로 실시하는 방법이 제안되었다.

외국의 관련 표본 조사들(표31-34)을 살펴보면 성폭력에 대한 조사와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가 통합되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외국 조사의 경우 대부분의 조사가 가정폭력(domestic violence)에 대한 조사이며 외국의 가정폭력 조사는 이성의 배우자 또는 동거자에 의한 성적인 폭력에 대한 전형적인 조사이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조사하는 가정폭력의 행위가 이성의 배우자 또는 동거자에 의한 성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간의 폭력(예를 들어 부모-자식, 형제 간)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기혼자와 미혼자에 대한 설문을 따로 구성하

여 조사를 실시하며 노인에 대한 폭력의 조사도 포함된다. 이러한 이유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인구 구성비에 비례하여 추출한다.

반면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실태조사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 의한 성범죄, 성추행, 성희롱 등에 대한 조사이므로 여성을 더 많이 과표집(over-sampling)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성폭력에 대한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며(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부터 가벼운 성희롱까지 포함) 부가적인 설문 의 형태로서는 전번적인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다. 또한 설문 항목에서 폭력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므로 면접 시간이 짧지 않은 조사이다.

결론적으로 두 조사를 통합하면 유효 표본수를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두 가지 폭력에 대하여 동시에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의 설계가 어렵고 설문지가 길어져서 면접 시간을 늘리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실태조사를 통합하는 것이 두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다.

사안 2: 폭력의 범위 및 조사항목의 용어를 구체화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와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는 폭력의 범위와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2010년에 사용한 정의는 모두 외국에서 이미 사용된 유효하고 일반적인 폭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것이므로 2013년 조사에서는 예비조사를 통한 약간의 수정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성폭력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2010년에 미국에서 시행된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의 정의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각 성폭력 유형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란전화, 문자, 메일 등'은 성적 자극을 유발하거나, 외설적인 내용 및 성적 인 내용을 담은 글이나 사진, 영상 등을 음란전화, 문자, 메일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받은 것을 의미한다.

둘째, '스토킹'은 본인이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상대방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셋째, '성기노출'은 공공장소나 사람(들) 앞에서 성기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돌아다니는 행위를 의미한다.

넷째, '성희롱'은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은 없었으나 말이나 몸짓으로 상대방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모욕을 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다섯째, '가벼운 성추행'은 고의로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일부러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섯째, '심한 성추행'이란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키스, 성기 접촉, 애무 등 강제로 추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일곱째, '강간미수'란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덟째, '강간'이란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강제로 성관계(성기삽입)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조사에서는 '강간'에 '유사성교' 즉 성기 이외의 신체에 성기를 삽입한 행위를 포함하여 남성의 피해율을 검토하였다.

-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사용된 각 부부폭력 유형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경한 폭력과 중한 폭력으로 구분되는데, 경한 폭력은 배우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 배우자의 어깨나 목을 짝 움켜잡는 행위, 손바닥으로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행위 3가지이다 중한 폭력은 배우자의 목을 조르는 행위, 칼이나 흉기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는 행위, 혁대, 몽둥이로 때리는 행위,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행위 4가지이다.

둘째, 정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서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위,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위, 배우자의 물건을 파손하는 행위 3가지이다.

셋째, 경제적 폭력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행위,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 수입과 지출을 독점하는 행위 3가지이다.

넷째, 성학대는 배우자가 원치 않음에도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배우자가 원치 않

는 형태의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 2가지이다.

다섯째, 방임은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는 행위, 배우자가 병원에 가야할 때에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 2가지이다.

여섯째, 통제는 배우자가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가족(친정식구, 본가)과 접촉을 못하도록 하는 행위, 배우자가 어디에 있는지 항상 알려고 하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는 행위,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난다고 의심하는 행위 5가지이다.

위의 행위의 시간상에 있어서 지난 1년간과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을 포함한 평생 결혼기간으로 구분하였고 폭력 주체에 있어서 남편의 아내폭력, 아내의 남편폭력, 상호폭력으로 구분하였다.

사안 3: 조사 결과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면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조사는 상당히 민감한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까다롭고 어려운 조사이다. 따라서 면접원에 대한 교육과 면접에 대한 지침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고 성실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보건기구가 발간한 여성폭력에 대한 연구 방법, 조사통계에 대한 지침서, 성폭력 조사시 윤리 및 안전에 대한 지침서(본 보고서 2.5-2.7절)의 중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번역하였다. 세계보건기구가 제시한 면접원의 교육과 면접 절차에 대한 내용이 2013년 조사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3.10 조사계획에 대한 최종 제안

조사 계획에 대한 본 연구와 회의를 거치는 동안 조사의 형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사의 방법 중 전화조사와 면접조사 또는 패널조사와 횡단면 조사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본 연구진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는 방문면접조사를 이용한 횡단면 조사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6)

최종적으로 성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한 모집단, 추출틀, 표본의 수 및 추출 방법, 대상자 선정, 조사 방법 등에 대한 최종 제안은 표 28, 표 29에 있다.

표 26 여러 가지 조사 형태의 비교와 제안

조사의 종류	전화조사	방문조사
장점	조사비용이 저렴하다. 따라서 표본의 수를 늘릴 수 있다.	면접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무응답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면접원이 미감한 질문을 유도하기 상대적으로 쉬움 긴 시간 면접이 가능함
단점	무응답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 민감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유도하기 어려움 긴 시간을 면접하기 어려움	조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 따라서 표본의 수에 늘리기 힘들다.
조사의 종류	패널조사 (panel study)	횡단면조사 (cross-sectional study)
장점	시간에 따른 현상이나 행위의 변화 파악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원인도 파악 가능	조사의 설계가 비교적 쉽다 비용이 적게 든다.
단점	조사의 설계가 어렵다 비용이 많이 든다.	시간에 따른 현상이나 행위의 변화 파악을 할 수 있으나 패널조사보다는 제한적임
성폭력과 가정폭력 실태 조사 형태에 대한 제안 의견	<p>한국의 현실 상 전화조사로 민감한 내용을 질문하면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 또는 호주 등 서양의 선진국 2-3국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최근 여성 폭력 조사는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이루어짐</p> <p>성폭력과 가정폭력처럼 민감한 사항을 반복해서 물어야 하는 패널조사는 패널이 관리가 현실 상 매우 어렵고 더 나아가 응답자의 안전보호에 문제가 있다.</p> <p>또한 3년 마다 시행하는 조사에서 가구 내에서의 폭력, 개인의 성폭력 피해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문제보다는 그 당시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이 중요하므로 횡단면 조사가 패널 조사보다 적절하다.</p> <p>따라서 성폭력과 가정폭력 조사 형태는 방문면접을 이용한 횡단면 조사가 적절하다.</p>	

표 27 성폭력 실태 조사의 설계 (2010년과 개선안 비교)

	2010년 조사	개선안	비고
목표모집단	19세 이상 성인 남녀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성폭력 (강간, 성추행, 성희롱 등) 에 대한 조사는 노인을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 (외국 사례 도 일치)
목표모집단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남녀	개선안 목표모집단 에서는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
표본추출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 리스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	
목표 표본수	2,200가구	3,500가구	
표본 조사구 및 가구	2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11가구	350개 조사구/조사구 당 10 가구	
층화	1차 층화 : 8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 2차 층화 : 4개 광역시와 8개 도 지역의 동부 및 읍면부	7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을 32개 1차 층으로 구성 (서울, 6대 광역시는 10층, 도지역은 동부와 읍면부 각각 11개 층)	
표본의 배분	비례층화표본추출	비례층화표본추출	성폭력의 발생이 인구밀집 지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다른 통계조사와 달리 지역별 추정의 필요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
추출단위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조사구 추출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 추출방법	계통추출	계통추출	
가구내 대상자 선정	가구원 중 '최근생일법'으로 1인 선정	4가구 중 3가구는 '최근생일법'으로 여성 1인 선정, 나머지 1가구는 '최근생일법'으로 남성 1인 선정	성폭력에 대한 특성상 여자를 과표집 (over sampling)

표 28 가정 폭력 실태 조사의 설계 (2010년과 개선안 비교)

	2010년 조사	개선안	비고
목표집단	19세 이상 성인 남녀	19세 이상 성인 남녀	2010년과 같이 노인(65세 이상) 포함
목표모집단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가구, 집단시설 가구 (기숙사,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시설), 외국인가구(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거주자를 제외한 19세 이상 성인 남녀	개선안 목표모집단 에서는 다문화 가구는 일반 가구
표본 추출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명부 중 섬조사구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를 제외한 일반 및 아파트조사구 리스트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체 조사구 중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조사구를 제외한 아파트 조사구와 일반조사구 리스트	
목표 표본수	3,800 가구	5,000 가구	
표본 조사구 및 가구	2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19가구	500개 조사구. 조사구 당 10 가구	
층화	1차 층화 : 7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 2차 층화 : 4개 광역시와 8개 도 지역의 동부 및 읍면부	7개 특별시·광역시, 9개 도 지역을 32개 1차 층으로 구성 (서울, 6대 광역시는 10층, 도지역은 동부와 읍면부 각각 11개 층)	
표본의 배분	비례층화표본추출	제공근 비례층화표본추출	가정 폭력의 특성상 인구가 적은 곳에도 적절한 표본을 배분하기 위하여 제공근 비례 배분 제안
추출단위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1차 조사구, 2차 가구, 3차 가구 구성원 1인	
조사구 추출방법		확률비례계통추출	
가구 추출방법	계통추출	계통추출	
가구내 대상자 선정	가구원 중 '최근생일법'으로 1인 선정	가구원 중 '최근생일법'으로 1인 선정	가정폭력에 대한 특성상 여자를 과표집하지 않음

표 29 성폭력 실태 조사와 가정폭력 실태 조사의 적용 가중치 비교

	2010년 조사	개선안	비고
적용가중치	설계 가중치 무응답 가중치 사후층화 가중치	설계 가중치 무응답 가중치 표본가구내 추출율 반영 가중치 모집단 정보를 이용한 조정 가중치 (raking ratio method) 극단가중치 조정	통계청의 가중치 보완 의견 반영

제 4 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조사 설문지 개선 방안

본 조사에서는 2010년에 시행된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연구진이 설문지 검토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전문가 2명에게 설문지 개선에 대한 의견을 자문 하였다. 4.1 절에서는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통계청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4.2, 4.3, 4.4 정에서는 각각 연구진, 외부전문가 1, 외부전문가 2의 설문지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리하였다.

4.1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개선 방안

4.1.1 주요 개선 방향

연구진과 외부전문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주요 개선 방향을 공통적으로 제시되었다.

(1) 성폭력, 가정폭력 공통 사항

- 설문지의 길이가 너무 길다. 면접시간이 최대 25분이 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이나 설문을 축소하여 조사자의 피로도가 증가하지 않도록 조사표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설문을 면접원이 면담을 통해 기입하는지 또는 응답자가 원하면 응답자 스스로가 기입할 수 있는지 등 대한 면접 절차에 대한 규칙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 조사의 목적(실태조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어난 사건의 실태와 행동을 파악하는 조사 항목들에 집중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조사와 성폭력조사는 국민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성폭력이나 가정 내의 폭력 행위의 여부, 종류, 피해 사항(육체적, 정신적), 대응 등 일어난 일련의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조사 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위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법령 및 제도, 정책, 예방 및 근절 방안, 서비스, 홍보 방법에 대한 인식이나 의견을 묻는 설문은 중요도를 고려하여 1-2개의 항목으로 축소하거나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 (폭력이나 성 자체에 대한 인식은 조사할 필요가 있다)

- 조사 초반에 모두 개인적인 특성 부분에서 사회적 활동, 우울에 대하여 너무 많은 질문을 하여 조사의 집중도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한 개인적인 특성 부분에 나오는 설문항목의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조사 항목이 폭력 행위의 원인이나 결과 요인으로서 판단하기 어려운 항목은 과감하게 제외하여 조사의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 폭력에 대한 대응부분에서 경찰, 여성긴급전화, 상담소, 법률구조공단 등에 이용에 대한 설문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고 세부 선택항목이 많음. 신고 또는 이용의 유무 정도만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경찰에 신고 후 상황에 대한 설문 항목이 너무 길다. 신고 유무와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간단한 정보만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성폭력 실태조사

- 성폭력 가해 경험에 대한 항목은 조사 가능성과 응답의 신뢰성이 매우 낮으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 응답자 가구원에 성폭력 피해 경험과 대응은 자신에 대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의 정확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대한 고려를 하여 개선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다.
- 성폭력이 일어난 장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가정 폭력 실태조사

- 기혼자 조사에서 부부관계를 파악할 때 “고맙다” 또는 “사랑한다”는 말의 횟수로 관계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국 문화를 고려할 때 의미있는 도구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4.2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견 - 연구진

성폭력 실태조사에 사용된 가해 행위에 대한 모든 설문은 제외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성폭력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에게 가해 행위를 질문하는 조사는 찾아보기 힘든 사례이며 조사의 정확성 측면에서도 매우 유용성이 떨어지는 항목이다. 실제로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도 응답자의 가해부분에 대한 분석은 실행되지 않았다.

4.3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견-외부 자문 위원 1

각 실태조사 보고서 전체를 읽지 않고, 목차, 표목자, 요약 부분만을 검토한 상태에서의 의견입니다.

1. 각 실태조사보고서에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특수한 집단을 별도로 다룬 것, 경찰이나 검찰 등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 것은 중요하고, 앞으로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2. 그러나 설문지가 전반적으로 분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됨. 원하는 목적에 맞도록 질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

3.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줄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 보고서의 작성에서 빠지는 부분(성폭력 가해경험, 응답자 가구원의 성폭력 피해경험 및 대응)

- 성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하지 않은 조사 문항(모든 가구원의 일반적 사항, 사회활동, 우울, 음란물 이용경험 등)

성폭력 실태조사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부부폭력 실태)

가정폭력 피해경험과 관련하여 분석하지 않는 조사 문항(지난 일년간 경험, 음주 등)

가정폭력 실태조사와 무관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성폭력 실태, 노인들의 일상생활 동작 등)

4. 질문에 따라서 통합하는 것도 방법임

- 예를 들어, 긴급전화 1366, 상담소나 쉼터 이용, 무료법률구조공단 이용 등은 국가의 서비스 제공 이용여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법도 있을 듯. (실제 무료법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담소 등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5. 질문을 일반인이 답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만들어야 할 필요
예를 들면, 성폭력실태조사 17쪽의 4-2번 같은 경우, 성희롱을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그 의미 등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 질문의 의도에 따라 보다 쉬운 언어로 바꾸거나,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
가정폭력실태조사 10쪽의 6-6-1번의 경우, 상담조건부기소유에

6. 일반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적합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문항
- 위 질문의 경우, 일반인의 의견을 묻는 것이 필요한지 의심. 사안에 따라서 일반인의 의견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해당전문가들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

7. 설문조사가 자기기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사원이 기록하는 것인지 등이 분명하면 좋을 듯. 연령이 높은 경우, 학력이 낮은 경우 질문에 응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임(위 3번과 같은 경우).

8. 조사원들이 설명하고 기록하는 경우에도 지나치게 보기가 많아 제대로 읽어주거나 설명하고 답을 얻기 어려워보임. 조사자나 응답자 모두 집중이 어려울듯
- 예를 들어, 성폭력실태조사 12쪽 성폭력 경험에 어떻게 대응했나, 8쪽 가해자는 누구인가, 가정폭력실태조사 17쪽 노인학대 실태 등. 지나치게 많은 보기들이 주어짐. 유형을 분류해서 간소화시킬 필요

4.4 가정폭력, 성폭력 실태조사 설문지 검토의견-외부 자문 위원 2

4.4.1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표' 검토 의견

(1) 조사표 검토

조사목적과 조사내용의 관계 문제

- 가정폭력실태조사는 가정폭력의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범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색적인 성격의 조사임(표30 참조). 그러나 <표31>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목적에 비해 응답자들에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

음.

표 30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목적

	조사목적
1	아동·청소년기, 성인기, 장년기, 노년기의 <u>인간생애주기</u> 에 따른 가정폭력실태와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일반가구조사에서 소외될 수 있는 대상을 포괄하여 가정폭력 발생실태 파악함
2	인간의 생애주기별, 소외집단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 및 대책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통합적 지원방안을 제시함

※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인용

표 31 가정폭력실태조사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가구공 통조사 표	일반적 사항	◦가구원, 각 가구원별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상태(장애여부, 자애등록여부 및 등급, 장애유형), 취업여부, 종사상 지위, 직업, 월평균 총 가구 소득
	개인적 특성	◦성역할태도, 사회스트레스, 폭력에 대한 태도, 우울, 성장기 학대경험, 음주형태(음주빈도 및 양)
	가족(부부) 관계	◦긍정적 가족관계(TSL)
	가정폭력 (부부폭력) 실태 및 대응	◦가정폭력(부부폭력)실태(지난1년간 경험, 평생경험) ◦가정폭력(부부폭력) 후 가족생활 변화양상, 신체상해 및 신체상해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 정신적 고통 및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의료처치 경험 ◦경찰신고경험(신고횟수, 경찰의 조치대응, 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 내용, 신고 후 행위자의 폭력변화 양상, 미신고 이유) ◦1366이용경험(인지경로, 도움받은 정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이용경험(인지경로, 도움받은 내용, 도움받은 정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가정폭력 관련 법인식	◦가정폭력(부부폭력)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방지법과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한 인지 및 인지경로, 가정폭력관련법 규정에 대한 인식 ◦응답자 가정의 폭력발생 시 경찰 신고의향 및 신고 안하는 이유 ◦이웃가정의 폭력발생 시 신고 의향 및 신고안하는 이유
	성폭력실태	◦음란전화, 음란문자, 음란메일, 스토킹, 성기노출, 비접촉성 성희롱, 가벼운 성추행, 심한 성추행, 강간미수, 강간 ※ 보고서에서는 조사내용으로 넣고 있지 않음. 그러나 조사표에는 질문하고 있어 추가함.
	서비스 욕구	◦우리나라 가정폭력방지 정책에 대한 실효성 ◦가정폭력감소를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 가정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 내용,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홍보수단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가정폭력 관련 서비스 경험 및 접근성 제고를 제공기관
기혼자	일반적사항	◦응답자의 현재 결혼 상태, 결혼 년도
	부모-자녀 관계	◦만 18세 미만 자녀유무 ◦자녀에 대한 학대경험, 자주 학대 받는 자녀의 성별 및 연령
	부부폭력 실태	◦신체적폭력, 정서적폭력, 경제적폭력, 성학대, 방임, 통제(응답자가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응답자에게) ◦지난 1년간 부부폭력 가해경험 및 지난 1년 이전의 부부폭력 가해경험, 첫 가해행동 발생시기, 가해행동을 한 주된 이유, 가해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여부 ◦지난 1년간 부부폭력 피해경험 및 지난 1년 이전의 부부폭력 피해경험, 첫 피해 발생시기, 응답자가 인식한 행위자 폭력의 주된 이유, 피해 당시 본인 및 배우자의 음주여부, 행위자의 폭력행동 시 공포경험 ◦부부폭력을 처음 시작한 사람
미혼자	가족관계	◦부모님 생존 여부, 형제·자매 유무
	가정폭력 실태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 응답자의 가족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가족원 중 주된 피해자의 특성(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응답자의 가족원에 대한 폭력행사의 주된 이유, 가해행동 당시 응답자 및 가족원의 음주여부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 가족원의 응답자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가족원 중 주된 행위자의 특성(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가족원의 응답자에 대한 폭력행사의 주된 이유, 피해발생 당시 응답자 및 가족원의 음주여부
노인	노인의 경제 및 건강상태	◦주택명, 응답자의 월평균 소득, 주된 소득원, 응답자의 월평균 소비액 ◦동년배와 비교한 건강상태, 일상적 및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능력 ◦일상생활에서의 도움제공자 유무, 도움제공자 내용
	노인학대 실태	◦지난 1년간 및 1년 이전 노인학대 경험(정서적/경제적/신체적/방임) ◦학대행위자의 특성(노인과의 관계, 노인과의 동거유무, 성별, 교육수준, 결혼상태, 취업여부) ◦평소 학대행위자와의 관계, 학대행위자가 폭력을 행사한 이유, 학대 행위자의 학대 당시 음주여부
조사표 분량	기혼자용	◦ 노인이 아닐 경우, 조사표 14p
		◦ 노인일 경우, 조사표 18p
	미혼자용	◦ 조사표 13p

- 응답자들에게 다양하고 세분화된 정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응답자의 피로감이 높음.

조사내용의 문제

- ‘일반적 사항’의 경우, 가구원 정보를 자세히 질문하고 있음. 가구원 정보를 자세히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경우 ‘가구원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적 특성’에서 ‘우울’의 경우, 20개 문항을 통해 ‘우울’을 판단하고 있음. 과연 20개 문항을 사용하여 판단해야 하는 변수인지 검토가 필요하고, 우울이 필요한 변수라면 우울을 판단하는 여러 종류의 지표들을 검토하여, 과연 어떤 지표로 우울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확인 필요함. 또한 응답자가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문항 수를 조절하는 방식도 고민해야 함.
- 2010년 조사에서는 ‘고맙다’ 등과 같은 말로 긍정적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측정하고 있음. 한국사회의 정서, 개인적 성향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 부부관계 혹은 가족관계를 ‘말’의 횟수로 측정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 또한 이중질문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미혼자용 5페이지 3번 문항을 살펴보면, 고맙다는 말은 안 하는 데, [각 문항마다 귀하의 상황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o”표 해 주십시오.]라는 부분에서는 거의 매일 고맙다라고 느끼거나 그런 상황일 수 있음. 그럼 어디에 체크해야 할까요? 이중질문임.
- ‘가정폭력 대응’과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문항을 너무 세분화하였음. 특히, 경찰신고경험, 1366이용경험, 가정폭력상담소 및 쉼터이용경험의 경우(14문항)는 2-3문항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음.
- ‘가정폭력법인식’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규정에 대한 인식 관련된 질문이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조사목적 등에 필요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함. 만약 다른 조사내용들과의 관계를 구성할 때 필요한 것이라면, 세부적인 질문과 관련해서 검토 필요함.
-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성폭력 실태’ 범주가 필요한 지 검토해야 함.
- ‘서비스 욕구’와 관련된 문항들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지식을 활성화시켜, 응답시점에서 판단이나 태도를 결정해야 함. 이런 경우 응답의 안정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큼. 또한 이 조사내용이 ‘가정폭력실태조사의 조사목적’에 맞는 범주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조사표의 편집 및 질문순서 문제

- 가정폭력실태조사는 면접조사 혹은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설문지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음. 2010년 조사의 경우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자기기입방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조사방식의 원칙을 분명히 한 후, 조사표 편집 등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임.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응답한다는 점은 조사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소임].
- 일반적 사항의 경우, 처음부터 가구원들에 대해 너무 자세히 질문하고 있어 응답자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보고서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변인임). 또한 가구원 정보와 관련하여 자세히 질문하고 싶다면 질문순서를 고려해야 함. 장애 상태 문항은 중간이 아니라, 직업 뒤에 가장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응답자의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음.
- 현재 문항의 순서를 보면,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지표들 때문에 응답자들이 미리 피로감을 느끼고, 다음 문항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혹은 성의 없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음.
- ‘성폭력 실태’ 범주와 관련하여 삭제여부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질문순서의 문제도 검토해야 함.

(2) 조사표 수정 방향

조사내용 축소

- 질문문항의 중요도 확인
- 2007년과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활용도가 높은 변수들이 무엇인지 확인 후, 조사내용 축소 시 활용해야 함.
- 잠재적 조사자료 이용자들의 자료 활용 방안에 대해 고려하면서 조사내용의 축소를 결정해야 함.
- 조사내용의 축소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실태조사의 경우 2007년, 2010년 연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임을 고려해야 함(중단적으로 필요한 문항이 무엇인지 확인).
- 행동이나 실태중심의 문항

- 실태조사라는 조사목적에 맞게, 응답자가 기억을 되살리기만하면 응답이 나올 수 있는 과거의 행동이나 실태를 중심으로 조사내용을 축소해야 함

조사내용 추가

- 월평균 총 가구소득이 있지만, 가구소득의 경우 성실한 응답을 받기가 어려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소유형태, 주택형태에 대한 질문 추가에 대해 검토·필요함. 응답자의 주택소유형태와 주택형태 등 거주환경은 향후 가정폭력실태와의 관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음.

4.4.2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 ‘조사표’ 검토 의견

(1) 조사표 검토

조사목적의 문제

- 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의 실태가 어떤지를 알아보고 범용적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탐색적인 성격의 조사임(표32 참조). 특히, 전국 성폭력 발생률과 성폭력 유형별 발생상태를 파악하고, 전 생애에 걸친 성폭력 경험 파악을 위해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성인·노년기의 성폭력 발생률을 파악함.

표 32 성폭력실태조사 조사목적

조사목적	
1	성폭력실태조사는 성폭력근절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성폭력발생실태와 가해요인 및 피해영향을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 여성의 지원체계이용경험과 성폭력 지원 지원기관 및 사법체계에 대한 조사를 통해 성폭력 지원체계의 현황을 분석한다.
2	이를 통해 성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개발·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2010년 가정폭력실태조사 인용

-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성폭력 가해실태와 가해요인’파악을, 조사목적으로 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가해실태’라는 단어는 없으나, 조사내용 구성 등을 참고하면 가해실태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에서는 가해 관련 사항에 대한 분석결과가 없음. 분석결과를 수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확인한 후, 과연 조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해야 함.
- 2010년 성매매 실태조사의 경우, 조사원(주요 대학의 사회복지학 전공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의한 직접면접조사 혹은 조사대상자들이 원할 경우 자기기입식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성폭력 가해 실태’ 범주의 경우 직접면접조사를 실시할 경우, 성실한 응답을 얻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조사내용의 범주

- <표 32>의 조사목적을 살펴보기 위해 <표 33>와 같은 조사내용과 범주를 구성하고 있음.

표 33 성폭력실태조사 조사내용

구분	조사내용
가구의 일반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 특성: 가구원, 결혼상태, 가구소득 ◦ 가구원 특성: 성별, 연령, 교육수준, 장애 여부, 취업 여부 등
개인적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관계 정도 ◦ 성중립건강 ◦ 정신건강 ◦ 범죄피해의 두려움 ◦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 ◦ 음란물 이용 경험
성폭력 피해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경험: 평생경험, 지난 1년간 경험, 가해자 유형, 음주 여부 등 ◦ 피해영향: 신체·정신적 상해 여부 및 치료 여부, 일상·성생활 변화 ◦ 도움요청 및 지원체계 이용경험 ◦ 가족구성원의 성폭력 피해경험
성폭력 가해 관련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경험 : 평생경험, 지난 1년간 경험, 피해자유형, 음주 여부 등
성폭력 관련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인식 및 허용도 ◦ 성폭력 관련 법 인식 ◦ 성폭력 예방방안 및 성폭력 관련법 홍보방법 ◦ 성폭력 관련 지원체계 인식 및 욕구정도
조사표 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표 총 19p로 구성됨.

- 조사표 분량이 총 19페이지로 응답자에게 많은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응답자의 피로감이 매우 높은 조사표임. 주제 또한 민감함. 때문에 조사내용 및 조사내용 범주를 축소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음.

조사내용의 문제

- 일반적 사항의 경우, 가구원 정보를 자세히 질문하고 있음. 가구원 정보를 자세히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의 경우 '가구원정보와 관련한 자료를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않음.'
- 개인적 특성의 부분에서 정신건강부분은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성과 관련된 통념은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정신건강'과 '성과 관련된 통념'을 52문항이나 되는 많은 문항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 '정신건강'과 '성과 관련된 통념' 이 성폭력실태조사에 필요한 문항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성폭력 실태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변수들이라면, 변수들을 구체화시켜 접근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정신건강에서 우울, 공격성, 자기통제력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접근해야 할 것임.
- 음란물 경험 등과 같은 성폭력 가해 실태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변수들의 경우에는 조사목적 검토 후, 가해실태를 삭제할 경우 함께 고려하여 조사표에서 삭제해야 함.
- '성폭력 피해 관련 피해 대응'의 경우, 경찰(11문항), 여성긴급전화 1366(5문항), 성폭력상담소 또는 쉼터(5문항), 무료법률구조공단(4문항²⁾)의 이용경험과 관련하여 자세히 질문할 이유가 있는지 조사목적과 관련해서 검토해야 함. 특히 '경찰의 수사단계에 대한 만족도', '경찰조치 만족도',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도움 받은 정도', '쉼터 또는 상담소에서 도움 받은 정도', '무료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 받은 정도' 등은 성폭력실태조사에서 필요한 문항인지 의심스러움.
-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3년마다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 가정폭력실태조사가 있는데, '부부폭력 실태'에 대해 자세히 질문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한 후, 현재 17문항 가운데 부부폭력을 유형화하여 유형별로 대표할 수 있는 문항 5-6개정도로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성폭력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성폭력실태조사에서 자세히 질문할 이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함.

2)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의 결과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515명 중 5명이 무료법률구조공간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음.

조사표의 편집 및 질문순서 문제

-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는 면접조사 혹은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설문지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음. 2010년 조사의 경우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자기기입방식을 추가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더 많이 조사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조사방식의 원칙을 분명히 한 후, 조사표 편집 등과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임. [모든 응답자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응답한다는 점은 조사연구에서 핵심적인 요소임].
- 일반적 사항의 경우, 처음부터 가구원들에 대해 너무 자세히 질문하고 있어 응답자가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음(보고서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변인임). 또한 장애상태 문항은 중간이 아니라, 직업 뒤에 가장 최종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응답자의 민감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 같음.
- 현재 문항의 순서를 보면, 개인적 특성과 관련된 지표들 때문에 응답자들이 미리 피로감을 느끼고, 다음 문항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혹은 성의 없게 응답할 가능성이 높음.

조사방식

- 2010년 성폭력실태조사는 면접조사 혹은 조사대상자가 원하는 경우 설문지에 조사대상자가 직접 기입하도록 하는 자기기입방식으로 실시하였음. 성폭력실태와 같은 민감한 문항을 젊은 조사원(사회복지학과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들이 1:1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 적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아야 함.

조사문항별 문제

1. 귀하는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예	<table border="1"> <tr> <td>1-1.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을 처음 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td> <td>만 () 세</td> </tr> <tr> <td>1-2.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td> <td>() 회</td> </tr> <tr> <td>1-3. 이 일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까?</td> <td><input type="checkbox"/> ①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예</td> </tr> </table>	1-1.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을 처음 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만 () 세	1-2.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 회	1-3. 이 일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예
1-1. 음란전화나 문자, 메일을 처음 받으신 것은 언제입니까?	만 () 세						
1-2. 몇 번이나 받으셨습니까?	() 회						
1-3. 이 일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났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① 예						

[1번 문항] 음란문자 및 음란메일의 경우, 불특정다수에게 보내지는 ‘스팸문자와 스팸메일’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단, 스팸문자와 스팸메일은 제외)를 추가해야 함.

1. 귀하는 성폭력으로 신체적인 상처를 입은 적이 있습니까? (가장 심한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응답하십시오.)

① 아니오

① 예

1-1. 당시 신체적 증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성기에 상처를 입었다
- ② 성기 이외 다른 신체부위에 상처를 입었다
- ③ 성병에 걸렸다
- ④ 기타 ()

1-2. 신체적 상처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까?

- ① 아니오
- ① 예
(진료과목 : 총치료기간 : 일)

2. 귀하는 성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까?

① 아니오

① 예

2-1. 당시 정신적 고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자신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 ② 매사에 불안, 우울
- ③ 성폭력을 다시 당할 것 같은 두려움
- ④ 폭력행위자에 대한 적대감이나 분노
- ⑤ 계속 그 생각이 남
- ⑥ 죽고 싶다는 생각
- ⑦ 사람만나는 것을 기피
- ⑧ 기타 ()

2-2. 정신적 증상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았습니까?

- ① 아니오
- ① 예
(총치료기간 : 일)

3. 귀하는 성폭력 피해 경험 당시에 어떻게 대응하셨습니다?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① 그냥 당하고 있었다

- ② 자리를 옮기거나 뛰어서 도망쳤다
- ③ 소리를 질렀다.
- ④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다
- ⑤ (신고하겠다고) 상대방을 협박하였다
- ⑥ 속여서 도망칠 기회를 도모하였다
- ⑦ 무조건 빌고 애원했다
- ⑧ 힘으로 저항하고 싸웠다
- ⑨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 ⑩ 기타()

3-1. 그냥 당하고 있었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모두 표시해

- ①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 ② 소리내면 남이 알아봐 창피해서
- ③ 술이나 잠에 취해 정신이 없어서
- ④ 공포로 몸이 굳어서, 혹은 기절해서
- ⑤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서
- ⑥ 저항하면 큰 상해를 입을 것 같아서
- ⑦ 그 사람의 행동이 성폭력인지 몰라서
- ⑧ 말을 안 들으면 큰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
- ⑨ 기타()

(1-3번 문항은 경우에는, 가장 심한 성폭력 경험에 대해서 응답하십시오)라는 문장을 추가해야 함.

1. 다음은 성과 관련된 행동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각 문항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표 해 주십시오.

문항	성폭력인가?		허용할 수 있는가?			
	성폭력이 아니다	성폭력이다	절대 안된다	대체로 안된다	경우에 따라 허용	전적으로 허용
1)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	0	1	1	2	3	4
2) 눈짓이나 몸짓으로 하는 성희롱	0	1	1	2	3	4
3)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 음란전화나 문자를 보내거나, 포르노나 야한사진을 보여주는 행동	0	1	1	2	3	4
4) 상대가 싫다는데도, 일방적으로 전화, 편지(이메일), 선물 등을 계속해서 보내어 상대에게 부담을 주는 행동	0	1	1	2	3	4
5) 원하지 않는 상대 혹은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는 행동	0	1	1	2	3	4
6) 원치않는 사람의 가슴, 엉덩이, 음부 등을 건드리거나 만지는 행위, 또는 몸을 밀착시키는 행동	0	1	1	2	3	4
7) 상대방의 뜻을 무시하고 성적키스, 성기접촉, 포옹 등을 하는 행동	0	1	1	2	3	4
8) 원치않는 사람에게 구타 또는 협박으로 성교를 강요하는 행동	0	1	1	2	3	4
9) 원치않는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성교하는 행동	0	1	1	2	3	4

1-1) ‘상대를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음담패설로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일방적으로 성적 대화를 요구하는 행동’은 두 가지를 묻고 있음. 문항 수정 필요함.

(2) 조사표 수정 방향

조사목적 확인

- 성폭력 가해 실태조사를 직접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가 가능한 지 검토해 본 후, 조사목적에 수정·검토할 필요가 있음.

조사내용 축소

- 질문문항의 중요도 확인
- 활용도 높은 변수들을 검토하고, 자료활용 방안을 고려하면서 조사내용 축소를 결정해야 함.
- 조사내용의 축소와 관련하여, 성폭력실태조사의 지속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조사임을 고려하여, 종단적으로 필요한 문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 행동이나 실태중심의 문항

조사내용 추가

- 성폭력실태와 관련해서 성폭력 유형마다 장소에 대한 추가 질문을 제안함
- 성폭력의 실태뿐만 아니라 이와 관계가 있는 원인이나 배경이 될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발굴해야 함. 현재 문항구성을 살펴보면,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제외하고 성폭력의 실태와 관련하여 관계를 고려할 수 있는 변인들은 개인의 특성으로 편중되어 있음. 그러므로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의 변수를 검토하고 고려하여 추가해야 함.

제 5 장 성폭력 및 가정폭력 조사 품질 진단 방안

5.1 통계 품질 진단 개요

통계품질도 마찬가지로 통계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 하고 있는가 하는 사용적합성(Fitness for use)에 달려있으며,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념(Multi-dimensional concept)이다.

통계품질의 차원(Dimension)은 학자들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통계청에서는 다음의 6가지 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품질진단은 궁극적으로 이 6가지 차원의 품질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고 각 차원의 품질수준을 높이기 위해 통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 관련성(relevance)

관련성은 이용자 관점에 초점을 둔 측면으로 통계자료가 포괄범위와 개념, 내용 등에 있어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통계이용자에게 얼마나 의미 있고 유용한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개념이다.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통계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자 파악, 전문가 자문회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이용자의 요구를 파악 하고 반영하는 것이 통계의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 정확성(accuracy)

정확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특성이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말한다. 대부분의 통계는 알 수 없는 참값을 추정하게 되는데, 정확성은 미지의 참값과 추정된 값과의 근접성에 관한 개념이다. 따라서 참값과 추정된 값의 차이인 오차가 작을수록 정확성이 높은 통계가 된다.

조사통계의 경우, 포괄범위, 표본추출, 응답 및 무응답, 작성 과정 등에 의해서 오차가 발생한다. 국민계정과 같은 가공통계는 투입자료인 다른 표본조사나 총조사 자료의 오류나 포괄범위, 조사 시기, 평가방법 등의 불일치 등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정확성은 표본오차의 크기, 비표본오차의 정도 및 잠정치/확정치 간의 차이를 검토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시의성/정시성(timeliness/punctuality)

통계의 시의성은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통계의 현실 반영도와 관련된 개념이고, 정시성은 예고된 공표시기를 정확히 준수하는가에 대한 개념이다.

작성기준시점과 결과발표시점이 근접할수록 시의성이 높은 통계이다. 통계이용자들이 통계의 공표일정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일부 주요통계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하는데 이러한 사전공표일정을 정확히 준수할수록 정시성이 높은 통계이다.

- 비교성(comparability)

비교성은 시간 또는 공간이 달라도 통계 자료가 동일한 개념, 분류, 측정도구, 측정과정 및 기초자료 등을 기준으로 집계되어 서로 비교가 가능한지를 나타낸다. 비교성은 특정 통계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다른 도시 또는 다른 연도의 자료와 비교가 가능한 지를 보는 것으로, 국제 비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기준 및 분류, 평가방법 등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주기가 부정기 또는 장기인 경우는 담당자 변동, 환경변화 등으로 과거조사와 개념, 조사항목, 조사방법 등이 달라져 시간적 비교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일관성(coherence)

동일한 경제·사회현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초자료나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된 통계자료 들이 얼마나 유사한가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잠정자료와 확정자료, 연간 자료와 분기(월)자료, 각 통계조사와 국민계정은 서로 다른 자료원과 작성방법에 의해 작성될 수 있으나 서로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면 일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 비교성과 일관성 모두 Dataset을 서로 비교한다는 점은 같으나, 두 Dataset 간의 일관성의 판단기준은 실제 자료간의 일치성이고, 비교성은 보통 메타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는 비교성은 보통 관련이 없는 모집단에 근거한 통계 간의 비교이고, 일관성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집단에 대한 통계 간의 비교이기 때문이다.

- 접근성/명확성(accessibility/clarity)

접근성은 이용자가 통계자료에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말

하며, 명확성은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수준을 말한다.

통계자료의 DB화, 간행물 및 보도자료 홈페이지 게시, SMS로 속보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기능을 추가하는 것 등이 통계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이 된다. 또한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통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 자료이용방법, 마이크로데이터 이용방법, 통계 이용 상의 조언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자료(메타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통계의 명확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음 두 그림은 통계청에서 제시한 품질진단에 대한 과정 및 부문과 각 부문의 방법과 배경을 설명해 놓은 그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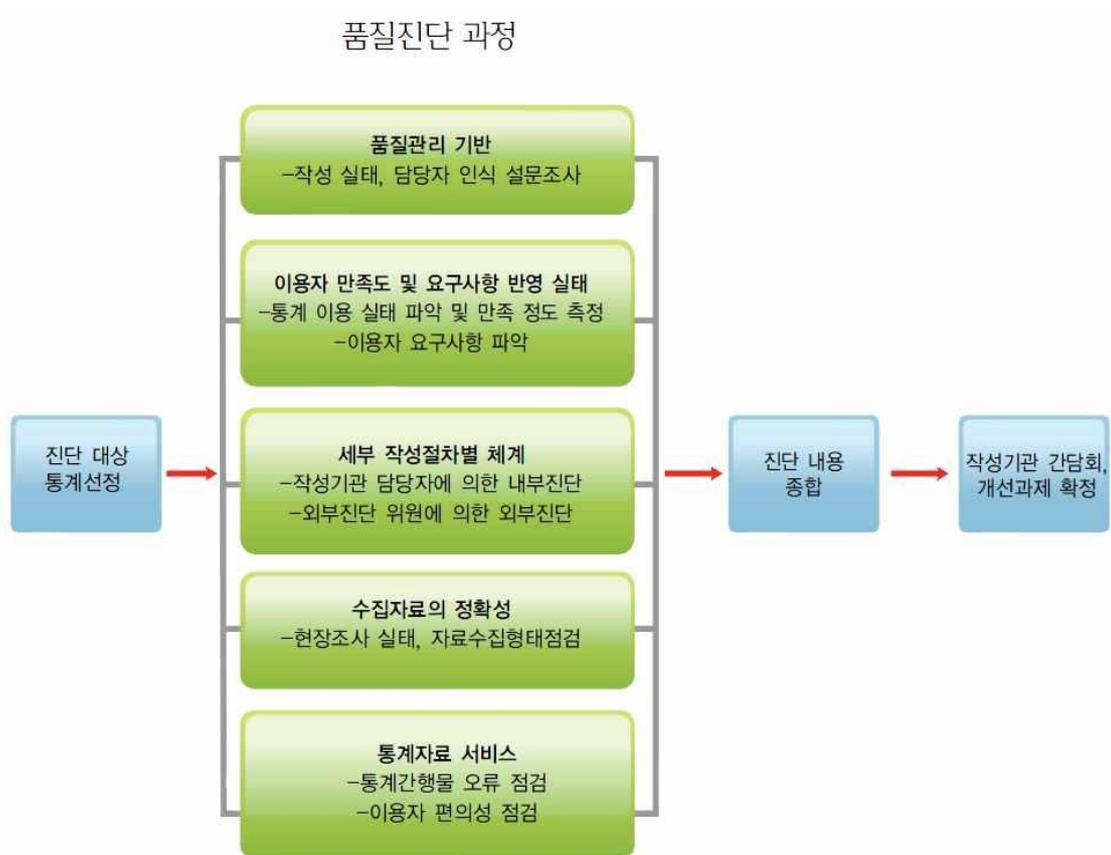


그림 5 품질진단에 대한 과정 및 부문

부문별 진단방법 및 진단배경

	진단 방법	진단 배경
1.품질관리기반	- 품질관리기반 현황표를 이용하여 해당통계의 작성 여건 및 통계담당자 인식 진단	- 고품질 통계 생산을 위한 품질 관리기반 파악
2.이용자만족도 및 요구사항 반영실태	- 통계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실시	-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에 근거하여 이용자가 직접 평가
3.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 통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품질지표를 품질진단서라는 질문형식의 체크리스트로 설계하여 내부 및 외부 진단 실시	- '생산과정의 품질이 제품의 품질을 결정한다.'는 과정중심(Process-Oriented)의 품질 정의에 근거
4.수집자료의 정확성	- 현장조사원 또는 응답자/보고자를 대상으로 응답/보고내용과 응답/보고 환경 점검	- 자료수집(현장조사)의 품질을 개선하기위한 현지실태 파악
5.통계자료 서비스	- 보도자료, 보고서, DB 등 공표자료에 수록한 내용의 오류와 이용자 편의사항 점검	- 이용자 적합성(Fitness for Use)에 근거하여 통계자료 서비스의 충실성 및 편의성 파악

그림 6 품질진단 부문의 방법과 배경

5.2 성폭력 및 가정 폭력 실태조사의 통계 품질 향상 방안

이 절에서는 통계청의 품질 진단의 과정과 부문을 중심으로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은 다음과 같다.

- 조사원의 엄정한 선정(여성 조사원으로만 구성)과 충분한 교육
- 조사와 관련된 상세한 지침서 작성
- 면접자의 사생활 보호 장치 개발과 면접원과 응답자의 안전 보장
- 효과적인 면접 도구 및 방법의 개발
- 조사 수행 시 적격자에 대한 명확한 판단 및 선택
- 응답에 대한 적절한 보상

- 조사 면접에 대한 철저한 사후 검증

2013년에 시행될 성폭력 및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아래 제시된 품질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조사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품질 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품질의 진단 부문에 대한 주 질문과 보조질문에 대하여 품질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5.2.1 통계작성 기획

(1) 통계작성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 통계작성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명확성 여부
- 주된 활용분야에 대한 명시 여부
- 유사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여부

[품질향상방안] 현재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관련법에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이 뚜렷이 나와 있다. 주된 활용 분야(예를 들어 문헌에 인용된 경우, 이용자가 요구한 경우, 보도 자료)에 대하여 조사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유사통계는 2010년 보고서에 사전 검토가 적절하게 되어 있다. 2013년 보고서도 같은 형식으로 유사 통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추가적으로 외국의 주요한 조사도 검토 하여 반영한다.

(2) 주된 이용자를 파악하고 있는가?

- 주된 이용자를 파악하여 이용자 목록을 작성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현재까지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의 결과를 요청한 이용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3) 이용자의 요구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는가?

- 정기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지 여부

- 이용자 의견을 통계작성에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이용자의 의견은 보통 자료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애로 사항과 전문가가 요구하는 조사의 개선 방향을 정리한다. 보통 인터넷 자료실의 의견이나 전문가 회의의 회의록으로 개선의견을 파악한다.

(4)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가?

- 현재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개념, 용어, 분류체계 등이 통계작성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 등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매우 중요하다. 2010년 보고서에서는 이미 폭력에 관련된 여러 행위들이 이미 정의되어 있다.

(5) 국내·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 및 기준을 따르고 있는가?

- 현재 통계작성에 사용하고 있는 정의 및 기준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기준(국제기준 등)에 기초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성폭력 실태조사와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폭력 등에 대한 행위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이를 2013년 조사 수행 시에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여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한다. 세계보건기구 또는 미국의 CDC에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외국의 사례를 반영한다.

참고로 여러 가지 폭력 등에 대한 행위들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나라의 문화, 법률, 생활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세계에 통용되는 국제 기준은 없다.

(6) 통계작성 개편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통계작성 개편(표본·기준년·지수 등의 개편 및 분류체계·조사항목·조사표 변경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지 여부

- 개편에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검토 여부
- 개편작업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내부회의 등 개최 여부
- 개편작업과정 및 개편결과를 분석하여 문서화 여부

[품질향상방안] 본 연구가 통계 개편 작업의 일부이며 이러한 여러 가지 개편 작업에 대한 회의 자료 및 보고서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5.2.2 조사통계 설계

[품질향상방안] 성폭력 조사 및 가정 폭력 조사의 조사 방법은 가구조사이며 자료의 수집은 조사원과의 면대면 면접으로 진행된다. 조사 설계는 보통의 조사와 유사하기 때문에 조사 대상 모집단, 설문지의 구성, 표본 수의 산출 및 근거, 조사 설계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에 명확하게 명시하면 된다.

5.2.3 자료수집

(1) 현장 조사 직원을 위하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상세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가?

- 조사목적, 기준시점, 조사대상, 조사방법, 추진일정 등 조사개요와 조사항목 해설 및 항목별 기입 요령 등을 포함하는 조사지침서(요령서) 제공 여부
- 조사준비, 현장 방문시 유의사항, 불응·장기부재 처리방안 등 조사직원의 현장 수행 지침 제공 여부
- 조사 시 자주 나타나는 오류사례, Q&A 등 제공 여부

[품질향상방안] 조사원이 조사 시에 사용하여 효과적인 면접을 수행할 수 있는 상세한 지침서 제작이 매우 중요하다. 성폭력 조사 및 가정 폭력 조사의 문항들은 매우 민감한 사항이 많고 응답자의 진실한 응답의 유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사 시작 단계의 절차 및 신뢰 구축, 질문 요령, 돌발 상황 발생 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자세한 지침서가 필요하다. 세계보건기구의 여러 가지 지침서를 참고하여 활용 가능하고 상세한 지침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이용하게 한다.

(2) 조사기획자는 조사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 충분한 사전교육 이수 후 조사에 투입하는지 여부
- 조사표 또는 조사방법 변경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지 여부
- 업무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교육 교재를 활용하는지 여부
(예: 현장조사 사례집, 팸플릿, 동영상 등)

[품질향상방안] 조사원에 대한 교육도 성폭력 조사 및 가정 폭력 조사의 품질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이다. 조사원이 조사의 목적을 충분하게 숙지하고 여러 가지 폭력의 조작적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원이 응답자와 대화를 나누고 응답을 유도하는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각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식과 훈련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사전 면접 체험과 상황극을 통한 사전 경험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3) 현장조사 실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조사에서 발생한 질의사항은 시기적절하게 처리되며, 모든 조사 직원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가?

- 현장조사 관리를 위한 적절한 체계가 있는지 여부
- 현장지도 후 조사오류 및 시정조치 사례가 수집되고 기록되는지 여부
- 조사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가구 또는 사업체에 이메일, 전화, SMS 등으로 공지 조사표 기입자(조사직원 및 응답자)는 질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 접수 → 해결방안 마련 → 결과통보의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질의사항 및 해결방안을 모든 조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조사 관리는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를 즉시 인지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다시 피드백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조사원과 응답자의 안전이 우려되는 조사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질의 사항 및 문제의 해결 방식이 문서화 되고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지는 문서 체계를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5.2.4 자료입력 및 처리

(1) 자료 입력을 위한 표준화된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전반적인 자료 입력 과정에 대한 흐름도 및 입력 지침서 마련 여부
- 자동화된 자료입력 프로그램 구축 여부
- 입력 오류 점검 시스템 구축 여부

[품질향상방안] 면접에서 수집된 자료의 입력에 대한 표준 절차를 문서화 한다.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작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규칙의 마련 여부
- 연관관계 분석에 의한 논리적 오류 점검 및 조치 여부
- 자동화된 자료 내용검토(에디팅) 시스템 구축 여부
- 이상치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여부

[품질향상방안] 자료의 검토 및 수정 시에 자료를 원래 자료를 꼭 보관하고, 어떻게 자료를 수정했는지에 대한 과정과 결과를 문서화하여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2) 무응답 실태를 파악하여 분석하고 있는가?

- 무응답 사례를 유형별로 집계하고 분석하는지 여부
- 무응답에 대한 적절한 처리지침이 있는지 여부
- 무응답 처리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 무응답 집단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분석하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가구를 방문하였을 때 응답 거부에 대한 여부를 반드시 기록하고 재조사 및 표본 대체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응답거부, 재조사 및 표본 대체에 대한 모든 기록은 자료로 정리되어 문서화 되어야 한다. 항목 무응답이 발생하였을 때 대체(imputation)을 하는 경우 원자료와 대체자료를 구별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야 한다.

(3) 현장조사부터 집계분석 단계까지 적절한 내용검토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 자료처리 단계별 업무흐름도가 있는지 여부
- 내용 검토할 사항·방법 등의 내용검토 지침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자료처리시의 오류유형과 처리 지침이 작성되어 있는지 여부
- 발생한 오류 유형을 분석하여 개선에 활용하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수집된 자료는 자료 관리인이나 검증인이 내용 검토와 논리 검토를 반드시 실시하여 오류를 수정해야 하며 표준 지침서를 만들어 시행한다.

5.2.5 자료분석 및 품질평가

(1) 모수를 추정하는 경우, 추정절차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모수 추정식, 추정과정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지 여부
- 이상치(outlier), 무응답 처리방법은 적합한지 여부
- 가중치 작성방법은 적합한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조사 보고서에 조사의 설계, 추정 방법, 가중치, 에디팅 과정, 무응답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5.2.6 문서화 및 자료제공

(1) 통계작성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문서화되어 있는가?

- 통계개발 및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여부
- 통계작성 변동사항에 대한 기록 여부
- 통계작성 절차별 업무매뉴얼 작성 여부
- 업무내용 변경 시 매뉴얼 보완 여부

[품질향상방안] 조사의 계획부터 연구보고서의 발간 때까지 작성된 모든 문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관해 놓아야 한다.

(2)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자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설

명하고 있는가?

- 동일 주제의 다른 통계와 작성방법이 다르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지를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
-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요인을 분석,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품질향상방안] 조사보고서에 국내에 관련된 통계나 유사 자료를 자세히 수록하고 관련 통계를 설계와 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 고 문 헌

- 김지선., 홍영호. (2010). 전국범죄피해조사 201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안재진. (2011). 아동학대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김재엽 외. (2010). 2010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김재엽 외. (2010). 2010년 성폭력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Altınay, A. G., Arat, Y. (2009). Violence against women in Turkey a nationwide survey, Punto Istanbul.
- Broderick, E. (2008). Sexual harassment: Serious business, Australian Human Rights Commission.
- Cheong, C. W., Bong, B. (2010).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The Singapore report,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 Duvvury, N. (2000). Domestic violence in India: Summary report of a multi-site household survey, International Center for Research on Women.
- Eisikovits, Z., Winstok, Z., Fishman, G. (2004). The first Israeli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 Ellsberg, M., Heise, L. (2005). Researching violence against women,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Program for Appropriate Technology in Health.
- Garcia-Moreno, C. (2001). Ethical and safety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World Health Organization.
- García-Moreno, C. (2005). WHO multi-country study on women's health and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 initial results on prevalence, health outcomes and women's responses, World Health Organization.
- McFerran, L. (2011).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the workplace survey, Australian Government.
- Meil, G. (2005). Social surveys on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in Spain, Statistical Journal of the United Nations.
- National study on violence against women prepared,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2012/09/26, <http://59.77.27.55/Article/ShowArticle.asp?ArticleID=3880>.

Phavi, K. I. (2005). Violence against women : A baseline survey, Cambodia.

Saltzman, L. E. (2010).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ational Center for Injury Prevention and Control Division of Violence Prevention.

Tjaden, P., Thoennes, N. (2000). Full report of the prevalence, incidence and consequences of violence against women,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Tjaden, P. (2005), Violence against women: a statistical overview, challenges and gaps in data collection and methodology and approaches for overcoming them, 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in collaboration with: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2010), World Health Organization and London School of Hygiene and Tropical Medicine.

부록 1: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표 34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국가	조사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조사년 도	표본수	조사방 법	면접방법	비고
미국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NVAW) Survey	국립사법연구소(NIJ); 질병통제예방센터(CDC)	1995	16,995명 (여자 8000명, 남자 8005명)	다단계 층화추 출	전화조사(RDD; 집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성인 남녀, 추출들은 미국 인구총조사 결과
미국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10	18,094 명 (7,421 남자, 9,086 여자)	다단계 층화추 출	전화조사(RDD; 집전화+휴대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성인 남녀, 추출들은 미국 인구총조사 결과
호주	Sexual Harassment National Telephone Survey (SHNTS)	인권위원회 (성평등법률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2008	2005명	다단계 층화추 출	전화조사(RDD; 집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64세이하인 성인남녀, 조사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호주	Women's Safety Australia study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and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	1996	6,300 명 (모두 여자)	다단계 층화추 출		모집단은 18세이상 64세이하인 성인여자,
호주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the Workplace Survey	호주 정부	2011	3,611명	비표본 조사	온라인 조사	7개의 노조 및 국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표본 조사

표 35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국가	조사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조사 년도	표본수	조사방법	면접방법	비고
스페인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정부(주관), Instituto de la Mujer(시행)	2002	여자 20,000명	다단계층 화추출	전화조사(RDD; 집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성인 여자
이스라엘	The First Israeli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Research Group of the Minerva Center	2001	2,992 명 (여자 2544명, 남자 452명)	다단계층 화추출	대면 면접조사	추출틀은 이스라엘 인구총조사 결과 사용, 여자 남자 비율을 5:1로 설정
터키	VIOLENCE AGAINST WOMEN IN TURKEY: A Nationwide Survey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of Turkey'	2006	1520명 여자	다단계층 화추출	대면 면접조사	모집단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거나 결혼 상태인 여성
인도	Multi-Site Household Survey	USAID와 India (지원) International Clinical Epidemiologists Network (조사)	1997-1999	9,938 가구	지역 할당 비표본 조사	자기기입 설문조사	여자와 그 남자 배우자가 있는 가구만을 조사
캄보디아	Cambodia Baseline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캄보디아 여성부(주관) 독일 캐나다 정부, USAID (지원)	2005	3,030 명	다단계층 화추출	대면 면접조사	15세 이상의 남여가 모집단
국제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약 15개국의 통계작성기관 작성 UN, 유럽 범죄 연구소, 캐나다 통계청 지원	2002-2011	나라별로 표본 수가 다름	표본 조사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	

표 36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국가	조사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조사 년도	표본수	조사방법	면접방법	비고
미국	The 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NVAW) Survey	국립사법연구소(NIJ); 질병통제예방센터(CDC)	1995	16,995명 (여자 8000명, 남자 8005명)	다단계층 화추출	전화조사(RDD; 집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성인 남녀, 추출틀은 미국 인구총조사 결과
미국	The National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Survey (NISVS)	질병통제예방센터(CDC)	2010	18,094 명 (7,421 남자, 9,086 여자)	다단계층 화추출	전화조사(RDD; 집전화+휴대전 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성인 남녀, 추출틀은 미국 인구총조사 결과
호주	Sexual Harassment National Telephone Survey (SHNTS)	인권위원회 (성평등법률 (Sex Discrimination Act 1984 (Cth),)	2008	2005명	다단계층 화추출	전화조사(RDD; 집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64세이하인 성인남녀, 조사내용은 직장내 성희롱
호주	Women's Safety Australia study	Office of the Status of Women and the Commonwealth Department of Health and Family Services	1996	6,300 명 (모두 여자)	다단계층 화추출	가구방문 면접조사	모집단은 18세이상 64세이하인 성인여자,
호주	National Domestic Violence and the Workplace Survey	호주 정부	2011	3,611명	비표본 조사	온라인 조사	7개의 노조 및 국가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표본 조사

표 37 최근 외국의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조사 현황

국가	조사명	시행기관 (근거 법령)	조사 년도	표본수	조사방법	면접방법	비고
스 페 인	Survey of Domestic Violence against Women	정부(주관), Instituto de la Mujer(시행)	2002	여자 20,000명	다단계층 화추출	전화조사(RDD; 집전화), 전화면접(CATI)	모집단은 18세이상 성인 여자
이 스 라엘	The First Israeli National Survey on Domestic Violence	Domestic Violence Research Group of the Minerva Center	2001	2,992 명 (여자 2544명, 남자 452명)	다단계층 화추출	대면 면접조사	추출틀은 이스라엘 인구총조사 결과 사용, 여자 남자 비율을 5:1로 설정
터키	VIOLENCE AGAINST WOMEN IN TURKEY: A Nationwide Survey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earch Institute of Turkey'	2006	1520명 여자	다단계층 화추출	대면 면접조사	모집단은 결혼을 한 경험이 있거나 결혼 상태인 여성
인도	Multi-Site Household Survey	USAID와 India (지원) International Clinical Epidemiologists Network (조사)	1997- 1999	9,938 가구	지역 할당 비표본 조사	자기기입 설문조사	여자와 그 남자 배우자가 있는 가구만을 조사
캄보 디아	Cambodia Baseline Survey: Violence against women	캄보디아 여성부(주관) 독일 캐나다 정부, USAID (지원)	2005	3,030 명	다단계층 화추출	대면 면접조사	15세 이상의 남녀가 모집단
국제	International Violence Against Women Survey	약 15개국의 통계작성기관 작성 UN, 유럽 범죄 연구소, 캐나다 통계청 지원	2002- 2011	나라별로 표본 수가 다름	표본 조사	전화조사 또는 면접조사	

연구보고 2012-34

간행물제목

2012년 12월 11일 인쇄

2012년 12월 14일 발행

발행인 : 김 금 래

발행처 :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전화 / 02-2075-4500(대)

인쇄처 : 동선문화사

전화 / 02-2249-7648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330-01